

법제교류 연구 10-15-□-6

가 ODA

- -

이 정

가 ODA

- -

A study on ODA Legislation of major countries
: Japan

연구자 : 이 정(한국외국어대학교)
Park, Kwang-Dong

2010. 10. 29.



국문 요약

첫째, 일본의 경우, 종전의 ODA 관련 업무는 「무상자금 협력업무」는 「외무성」이 담당하고, 「기술 협력」은 「JICA」가 담당하는 대신 「유상자금 협력(엔화 차관) 업무」 「JBIC(국제협력은행)」가 담당하는 「2원화 체제」로 운영해 왔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무상자금 협력업무」는 「재정부」소관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기술 협력」 및 「유상자금 협력(차관)업무」는 「KOICA」의 소관으로 되어 「2원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ODA 업무가 2원화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 소관 부처 간에 상호유기적인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결점을 보완하고자 ODA업무 소관기관을 일원화하였다. 다시 말해서 JBIC의 해외 경제협력업무와 외무성의 무상 자금협력업무(외교정책상 외무성이 직접 실시하는 것은 제외)가 JICA에 흡수되어 2008. 10. 1.에 「신 JICA」가 탄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2원화 체제가 소관부처 간의 원만한 의사소통과 업무협조에 혹시 허들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면밀히 검토한 다음, 만일 그러한 요소가 있다면 일본과 같이 ODA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을 일원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우리나라는 ODA 후발주자인 탓에 일본의 ODA지원 대상국이 상당수 중첩된다. 다시 말해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선발주자인 일본과 경쟁을 해야 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ODA수혜국에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ODA지원활동과는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일본은 동남아시아에서 ODA지원활동의 일환으로서 법정비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나, 우리나라에서는 ODA의 사정거리가 아직 법정비지원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의 경우 아직도 현대적인 법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거나, 법은 정비되어 있더라도 원만하게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국가에 대한 법정비지원은 유형의 물질적인 지원이상으로 효과적인 때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넷째, 일본의 ODA지원활동의 특징을 보면, 수혜국에 대해 일본적 시스템이나 법제도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권장하는 것을 지양하고, 가능한 한 수혜국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수혜국에 대해 자기 나라의 법제도 등을 일방적으로 이식하려 하거나 권장하는 유럽의 국가들과는 매우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관습 및 법제도가 다른 나라에 대해 ODA지원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일본과 같은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 , UN , , , ,

Abstract

This paper is aimed at overviewing the Japanese policies and laws related to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t also discusses their implications for Korea's ODA policies and laws, after examining the Japanese legal and judicial system (stipulated as one of ODA policies).

The objectives of Japan's ODA involve contributing to the peace and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reby, to help ensure Japan's own security and prosperity. Enlis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ntributing to the economic and social advancement of developing countries, are both part of Japan's obligations as a member of international society. The philosophy and objectives to implement ODA are based on Japan's ODA chapter and their Medium Term Policy on ODA.

Japan was also the recipient of ODA until the late 1940s, when Japan was defeated in World War II. However, Japanese economy developed rapidly, and then they instituted grant aid for a number of countries (e.g., the Philippines, Indonesia, Vietnam, Cambodia, Laos, Singapore, Korea, Mongolia and Micronesia), as reparations for the war. In 1989, Japan became the world's largest country to conduct ODA ahead of the United States. European countries try to enlarge ODA to intensify their efforts to address global issues (e.g., global warming) and humanitarian problems (e.g., extreme poverty, famine). However, Japan has lessened ODA because of strict financial constraints.

As stated above, we are aware that the environment surrounding ODA has significantly changed, both internationally and domestically. Therefore, Japan is currently attempting to implement more strategic and effective aid efforts. As part of Japan's endeavors, the implementation institutions

of ODA, such as JBIC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were unified as “New JICA” on the first of October 2008. To this effect, Japan can conduct the effective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of aid. In the specific case of ODA, Japan has been developing the legal and judicial systems (which is a type of technical cooperation under JICA), by organizing fundamental law and judicial system and training judicial officers in Southeast Asia.

Korea graduated from being a recipient of ODA, and is now contributing to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Because of the historical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Korea’s main donor was Japan. Thus, both the system and the outline of ODA in Korea are analogous to those of Japan. Accordingly, this research on Japan’s ODA will be able to offer perspective on the future outlook of polices and laws related to Korea’s ODA and effective execution of aid.

※ Key Words : Japan's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ODA loan, Bilateral and Mutilateral Aid, Legal and Judicial System Development

목 차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 1 장 서 론	11
제 1 절 연구의 배경	11
제 2 절 연구의 범위	13
제 3 절 연구의 방법	14
제 2 장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	15
제 1 절 일본 공적개발원조의 개관	15
1. ODA란 무엇인가?	15
2. ODA의 의의	15
3. 일본 ODA의 형태	17
제 2 절 일본의 공적개발원조의 제도적인 구조	19
1. 일본의 원조실시체제	20
제 3 절 ODA 개혁과 질의 향상	25
1. ODA 개혁의 흐름	25
2. ODA 대강의 주요 내용	28
3. ODA 중기정책의 주요 내용	30
제 4 절 ODA 예산	32
1. ODA의 예산 현황	32
2. ODA 증액의 필요성	37

제 3 장 일본의 공적개발원조의 특징	41
제 1 절 지역적 특징	41
제 2 절 분야적 특징	43
제 3 절 원조 조건의 특징	44
제 4 절 원조 형태의 특징	45
제 4 장 일본의 공적개발원조의 역사적인 전개	47
제 1 절 제1기 : 제2차 대전 후 배상기(1954-1963년)	
- 일본의 ODA 맹아기 -	47
제 2 절 제2기 : 경제협력신장기(1964-1976년)	
- 일본 ODA의 본격적 시동기 -	48
제 3 절 제3기 : 계획적 확대기(1977-1988년)	
- 일본 ODA의 주체적 확대기 -	50
제 4 절 제4기 : 원조내용 충실기(1988-2000년)	
- 일본 ODA의 충실기 -	51
제 5 절 제5기 : 원조정책의 재검토기(2000-현재)	54
제 5 장 일본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최근 동향	57
1. 정부개발원조(ODA)를 둘러싼 현황의 분석	57
2. ODA를 재검토한 결과의 개요	60
3. 「개발협력」의 개념과 그 핵심으로서의 ODA	61
4. 개발협력의 이념	62
5. 개발협력의 세 가지 주요 사항	63
6. 전략적·효과적인 원조의 실시	64
7.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의 발휘	80
8. 개발인재의 육성	83

9. 국민의 이해와 지지의 촉진	86
10. 기획입안기능과 실시체제(JICA)의 강화	89
11. 개발자금의 동원	92
12. 정부개발원조 대강(ODA 대강)의 개정	94
제 6 장 일본의 법정비지원제도	95
제 1 절 일본 법정비지원제도의 현황	95
1. 법정비지원의 정의	96
2. 정부의 정책에서의 법정비지원의 위치	97
제 2 절 JICA가 실시하는 기술협력으로서의 법정비지원	98
1. JICA의 법정비지원의 시작과 확대	98
2. 일본의 기술협력의 특징과 법정비지원	102
3. 향후의 법정비지원의 전망	105
제 3 절 법무성에 의한 법정비지원	106
1. 법무종합연구소의 국제협력	106
2. 법무종합연구소에 의한 법정비지원의 과제	107
제 4 절 각국에 대한 법정비지원의 현황	117
1. 대상국·대상지역	117
2. 베트남	117
3. 캄보디아	119
4. 라오스	122
5. 인도네시아	123
6. 우즈베키스탄	124
7. 중 국	125

제 5 절 법정비지원을 둘러싼 상황과 과제	126
제 7 장 결론 -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129
제 1 절 총 괄	129
제 2 절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131
참 고 문 헌	135
(별표 1) 2009년도 법제도정비지원 실시계획	141
(별표 2) 2009년도 법제도정비지원 실시계획	152

제 1 장 서 론

1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인해, 당시 세계 속에서도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일본은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 10여년에 걸쳐 전쟁 전의 경제규모를 넘어 서기에 이른다.

1960년대에는 이케다(池田) 내각의 「소득배증계획」이 많은 학자들의 부정적인 예측에도 불구하고 목표이상의 성과를 거두어, 1970년대 이후는 세계를 대표하는 경제대국의 지위를 착실히 쌓아, 경제발전에 뒤쳐진 여러 국가에 개발원조를 실시하기에 이르는 성장을 거두게 되었다. 1991년부터 2000년까지는 정부개발원조(ODA)의 금액에서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된 거품경제가 붕괴된 후의 경제정체가 서서히 일본의 ODA에도 그 영향이 미쳐, 계속 늘어나고 있던 일본의 ODA의 예산은 1997년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어, 2001년에는 ODA 대국의 지위를 미국에게 내주게 되었다. 그 후, 2006년에는 영국에도 뒤처지게 되고, 그 이후 계속하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의 다른 선진 국가에도 밀리고 있다.

한편, 일본 이외의 선진 국가의 대부분은 UN의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에 대한 협력이나 자원의외교의 일환으로서, 정부개발원조 금액을 증대시키는 방침을 공표하여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밀레니엄 도전회계(MCA)」를 장래적으로 연간 50억 달러에 증액할 것을 발표했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각각 2013년, 2012년, 2015년, 2015년까지는 ODA 금액을 MDGs의 제언에 따라 국민총소득(GNI) 대비 0.7%까지 인상할 것이라는 것을 공약했다.

또, 분쟁예방의 관점에서 무력예방의 근본원인이 되는 빈곤이나 사회적 부정의를 제거하고, 평화구축과 사회개발의 진전에 기여하는 ODA의 바람직한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경제발전에 뒤처지고 지역 민족분쟁이 다발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박멸이나, HIV/에이즈 등의 감염증의 극복하는 것이 과제가 되었다.

이렇게, ODA에 관한 세계의 정세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 일본의 ODA 정책 및 관련 법제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경제적 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경제와, 이에 연동하는 정부의 긴축재정의 제약 속에서, 일본은 ODA 정책과 관련 법제를 연구함으로써, 앞으로의 한국 ODA 정책 및 법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해방이후, 경제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제사회로부터의 많은 원조와, 일본으로부터 전후 배상이라는 형태로 무상원조를 받으며 경제성장을 이루기 시작하여, 1960년대 초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한 세대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루어낸 고소득 국가로 성장하여, 1995년에는 세계은행의 차관 졸업국이 됨으로써, 사실상 ODA 원조를 받는 대상국에서 졸업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ODA의 원조의 힘이 컸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리하여 우리정부의 연간 대외원조 총액은 1987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에는 752백만 달러(GNI 대비 0.1%)라는 우리나라 역대 최대 지원 규모를 달성하게 되었다. 또 우리 정부는 2007년부터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010년까지 가입할 것임을 결정하여, 2010년부터 회원국으로 활동을 개시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의 개발 경험을 다른 개발도상국 및 선진 도너국가들과 공유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국력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우리나라의 원조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고, ODA의 정책 및 법제가 우리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ODA 관련 상황을 살펴보며 우리나라 ODA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일본의 경험을 고찰하는 것은, 앞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질서유지를 위해, 경제발달을 이룬 우리나라의 경험을 제공하고,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국의 ODA 지원이 유기적으로 발달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본 연구의 연구 내용은 크게 첫째, 일본 ODA에 관한 개관 및 현황, 둘째, 일본 ODA 관련 정책 및 법제 소개, 셋째, 일본 ODA의 정책과 관련된 최근의 동향, 넷째, ODA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으로서의 법정비지원제도의 연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ODA에 주는 시사점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의 구성과 각 장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는 제1장은 서론이며, 제2장에서는 일본 ODA를 개관한다. 주로 ODA의 의의, 형태, 원조실시체계, ODA 정책의 흐름과 ODA 대강 및 중기정책의 주요내용, 예산의 현황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일본 ODA의 지역적, 분야적, 원조조건 특징 그리고 원조형태의 특징을 중심으로 일본 ODA의 특이사항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일본 ODA의 역사와 발달과정을 살펴본 후, 제5장에서는 올해 2010년 6월에 발표된 「ODA의 바람직한 방법에 관한 검토 최종보고서(のあり方に関する検討 最終とりまとめ)」를 중심으로, ODA와 관련된 최근의 동향을 살펴본다.

계속하여 제6장에서는 ODA의 한 원조방법으로서 실시하고 있는 「법제도정비지원」을 현황 및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총괄 및 우리나라 ODA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3

본 연구에 문헌연구를 주요한 연구방법으로 삼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한 정보원이 된 것은 권말에 수록한 참고문헌 및 일본 ODA 관련 정책과 법제이다.

첫째로, 일본 ODA 관련 정책(정부개발원조대강, 정부개발원조에 관한 중기정책) 및 법제(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법 및 시행령)를 완역하여, 본 보고서의 주요한 내용의 분석 및 고찰자료로 삼고 있다.

둘째로, 위의 정책 및 법제 외에,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및 ODA 관련 보고서와 정부발행 페이퍼 등을 참고로 하여, 일본 ODA를 분석하며, 그 중 ODA 정책 중 법정비지원체도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일본 ODA의 시행 및 운영사례 등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한다.

제 2 장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

1

1. ODA란 무엇인가?

ODA란,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정부개발원조)의 첫머리를 딴 것으로, 정부 또는 정부의 실시기관에 의해 개발도상국 또는 국제기관에 공여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사회의 발전, 복지의 향상에 도움이 되기 위한 자금·기술제공에 의한 협력을 말한다.

일본이 지금까지(2003년 실적까지) ODA를 제공했던 국가는, 유럽의 30개 국가 및 지역, 아프리카의 55개 국가 및 지역, 중동의 16개 국가 및 지역, 대양주의 19개 국가 및 지역, 중남미의 41개 국가 및 지역, 그리고 아시아의 24개 국가 및 지역으로, 총 이 모든 지역의 합계는 185개 국가 및 지역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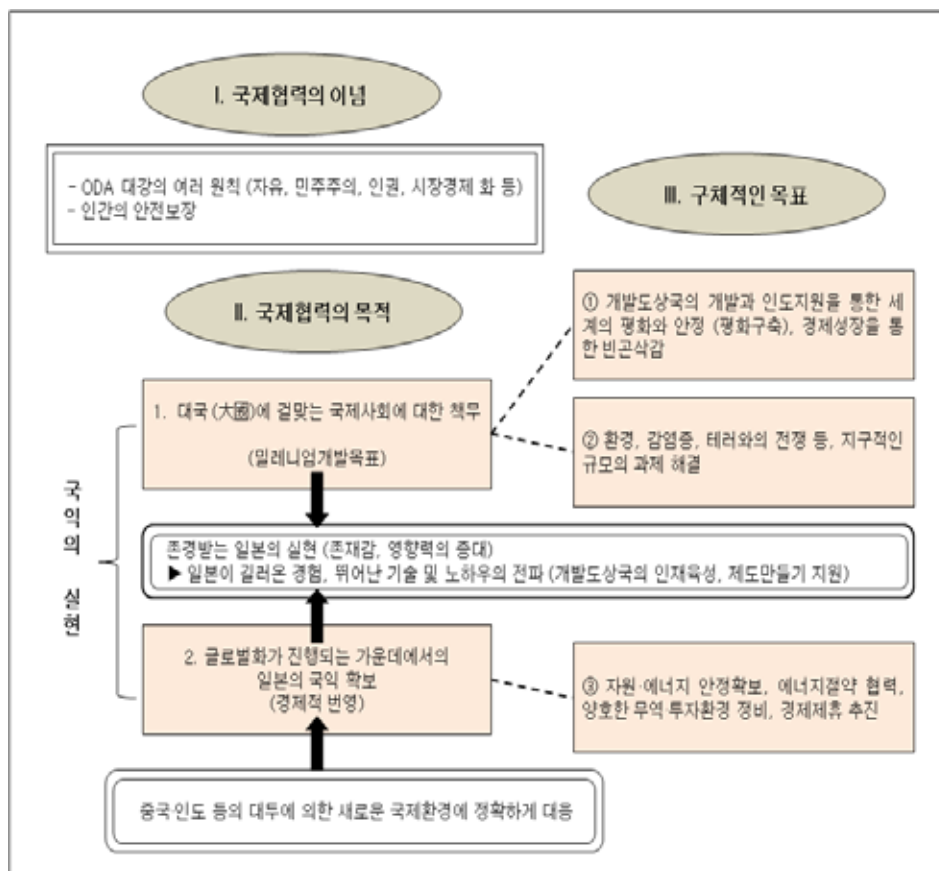
1954년 10월 6일, 일본은 콜롬보 플랜(Colombo Plan: 개발도상국 원조를 위한 국기기관의 하나)에 대한 가입을 각의결정하고, 이를 계기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협력에 힘쓰게 되었다. 오늘날, 일본의 협력처는 15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되어, NGO(비정부단체)와의 제휴에 의한 원조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4년에 50주년을 맞이했었다.

2. ODA의 의의

일본은 ODA 대강과 ODA 중기정책에 규정된 이념, 원칙 아래에서 원조를 실시해왔다.

ODA의 목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공헌하고, 이를 통하여 일본의 안전과 번영의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환경, 감염증대책,

아프리카 개발 등 국제사회의 공동된 과제에 있어서의 리더십의 발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부흥지원이나 국가정비 지원 등, 상대국이 가장 필요한 때에 손을 뻗어 약속을 확실히 지키는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와 신뢰의 기반을 구축해왔던 일본이다. 오늘날에는 새로운 국제경제환경 아래에서 자원이나 에너지의 확보, 무역·투자환경의 정비 등의 과제에도 정확하게 대응해나간다는 사명도 띄고 있다. 또, 일본의 원조철학에 뿌리내린 일본 브랜드의 원조의 전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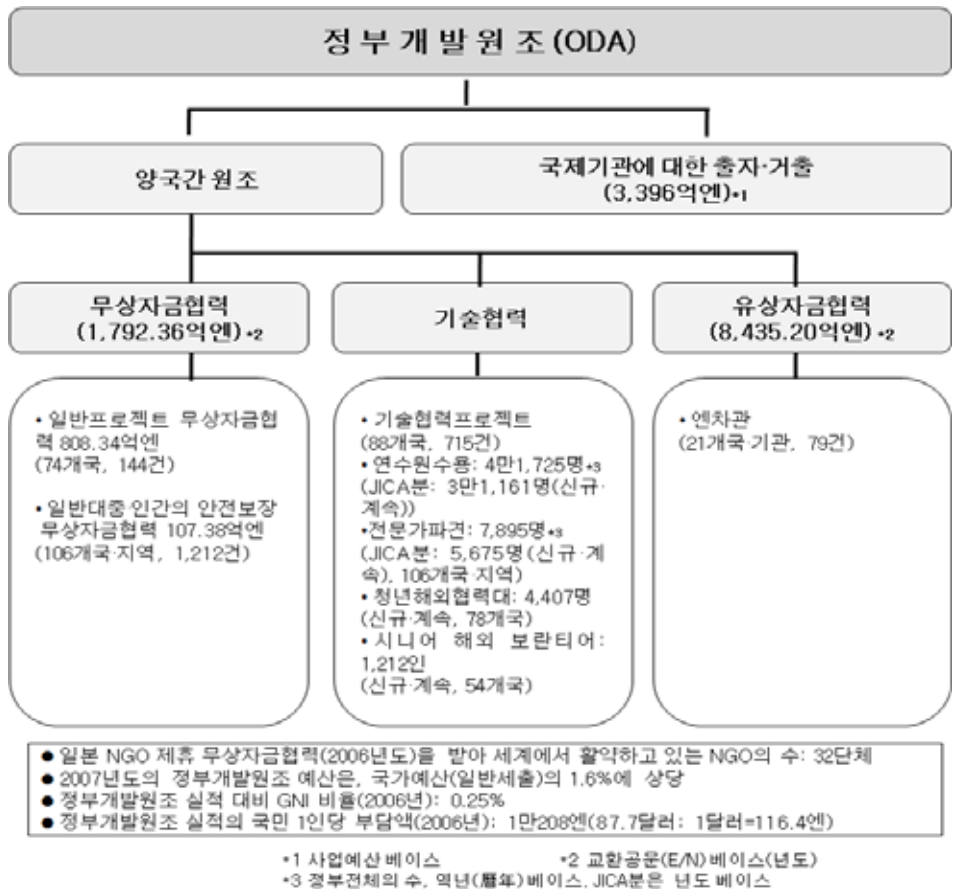
출처: 日本外務省

<http://www.mofa.go.jp/mofaj/gaiko/oda/nyumon/hayawakari/pdfs/01.pdf>

3. 일본 ODA의 형태

일본의 ODA에는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직접 지원을 실시하는 양국간 원조와, 국제기관을 통한 원조(다국간원조: 국제기관에 대한 출자와 거출)가 있다. 또, 양국간 원조에는 증여의 「무상 자금협력」과 「기술협력」, 양국간 대부의 「유상 자금협력(엔차관)」이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출처: 日本外務省 http://www.mofa.go.jp/mofaj/gaiko/oda/shiryo/hakusyo/07_hakusho_pdf/pdfs/07_hakusho_001.pdf

「무상 자금협력」은 변제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합의된 특정의 목적을 위해 자금을 공여하는 원조의 형태로, 2006년도의 일본의 무상자금협력 실적은 총액 1,792.36억엔에 달하고 있다. 주요한 원조대상국은 후발개발도상국(LLDC: Least among Less Developed Countries)과 재정사정의 나쁜 개발도상국이 중심으로, 대상분야는 보건·의료 등의 기초생활분야(BHN: Basic Human Needs), 기초교육 등의 분야가 큰 기둥을 이루고 있다. 무상 자금협력에는 일반 프로젝트 무상 자금협력과, 일반대중·인간의 안전보장 무상 자금협력 등이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또 「기술협력」은 개발도상국의 국가기반 형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래를 깊어질 인재양성(인재교육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 원조이다. 현재 기술협력은 빈곤대책, 보건·의료, 교육 등의 기초적인 기술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IT)나 법률제도의 정비 등의 고도한 분야, 또 지진·홍수 등의 재해에 대한 국제긴급원조 등까지 다기에 걸쳐있다. 대표적인 사업에는 연수원수용, 전문가파견, 청소년초청(21세기를 위한 우정계획) 그리고 폭넓은 기술과 풍부한 경험으로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공헌하고자 하는 중장년층(40세~59세)을 파견하는 시니어 해외보ランティア 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다.

「유상 자금협력」은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낮은 이자·장기변제라는 완화된 조건으로 개발자금을 빌려주는 것으로, 엔화로 대부하기 때문에 통칭적으로 「엔차관」이라고도 한다. 2006년도의 엔차관 실적은 21개국 및 기관, 총 79건에 대하여 8,435.20억엔에 달했다.

이 외, 「국제기관을 통한 원조」도 실시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목적으로 한 국제기관은, UN아동기금(UNICEF), UN개발계획(UNDP) 등의 UN기관, 세계은행 등의 국제개발금융기관,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지역개발기관 등이 있다. 일본은 이러한 기관에 대한 주요한 거출국, 출자국이기도 하다.

2

1)

세계의 개발 원조를 둘러싼 환경은 현재 크게 변화하고 있다. 또, 일본의 공적개발원조가 놓여진 상황도 과거와는 크게 다르다. 이러한 국내외의 변화에 대응하여, 일본의 ODA의 제도적인 구조도 변용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ODA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크게 「엔화 차관」, 「기술협력」, 「무상」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엔화 차관은 국제협력은행(JBIC), 기술협력은 국제협력기구(JICA), 무상은 외무성 경제협력국과 국제사회협력부(국제기관에 대한 거출분)가 실시기관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가, 2006년 8월의 외무성 개혁에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즉, 경제협력국에 대신하여 새롭게 국제협력국이 신설되어, 거기서 경제협력국이 실시해 오던 무상원조와, 국제사회협력부가 주도하고 있었던 국제기관에 대한 개발자금거출부분이 통합되어, 「멀티(multi)」와 「바이(bi)」의 유기적인 제휴를 도모함과 동시에, 상호보완적인 상승효과를 가지는 효율적인 원조의 실시를 목표로 하게 되었다.

또, 2008년에는 「신 JICA법」이 시행되어, JBIC의 엔화 차관부문이 신JICA의 아래로 편성되어, 신 JICA 아래에서 엔화 차관, 기술협력, 무상(ODA 실시부분)이 일원적으로 관리·운영되게 된다.

또, 일본의 ODA 정책의 기본적인 기획·입안·조정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각료 차원의 「해외경제협력회의」(내각총리대신 아래에 내각관방장관, 외무대신, 재무대신, 경제산업대신이 참가한다)가 있다. 또, 외무대신의 자문위원회로서는 국제협력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협력에 관한 유식자회의」가 설치되어 있다.

1) 横田洋三「本調査の概要」『主要先進国における海外援助の制度と動向に関する調査』, ODA研究会、2008年3月、12-13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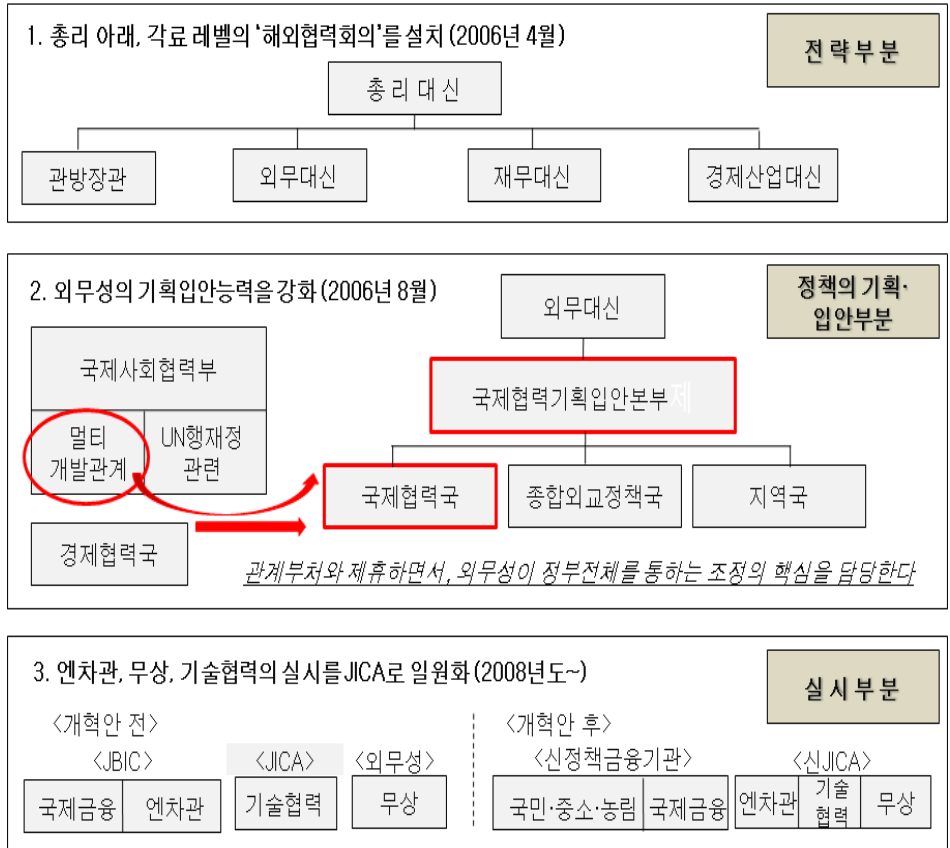
1. 일본의 원조실시체제

(1) 실시체제의 개혁

원조의 실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기술협력은 국제협력기구(JICA), 유상자금협력은 국제협력은행(JBIC) (1999년 9월까지의 해외협력기금(OECF), 무상 자금협력은 외무성 등의 체제로 실시되어 왔다. 2005년 코이즈미(小泉) 내각에서의 정책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국제협력은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의가 되어, 내각 관방장관 아래에 설치되었던 ‘해외경제협력에 관한 검토회(海外經濟協力に関する検討会)’의 최종보고를 바탕으로, 원조의 실시체제 전반을 개편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06년 4월에 내각에 「해외경제협력회의」가 설치되고, 계속하여 같은 해 8월에 외무성의 기구개혁이 이루어져, 양국간의 원조와 국제기관을 통한 원조를 포괄적으로 소관하는 국제협력국이 발족되었다. 또 같은 해 11월에 JICA법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성립되어, JICA가 기술협력, 유상 자금협력, 무상 자금협력의 세 가지 원조방법을 일원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는 것도 결정되었다. 신 JICA의 발족은 2008년 10월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새로운 ODA의 실시체계>



출처: 日本外務省의 <http://www.mofa.go.jp/mofaj/gaiko/oda/nyumon/hayawakari/pdfs/06.pdf>

(2) JICA법 개정의 주요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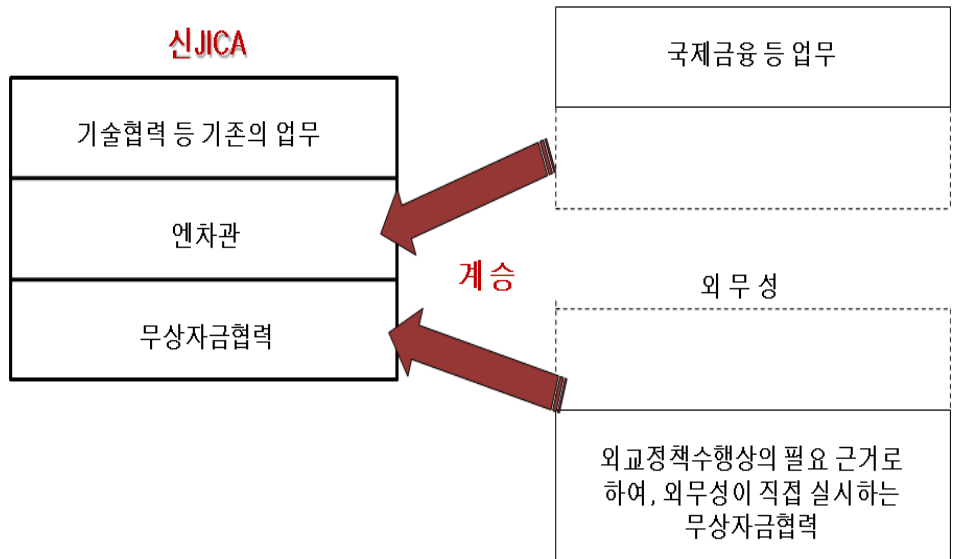
신 JICA는 ODA의 세 가지 방법(기술협력, 엔차관, 무상자금협력)을 일원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원조의 방법에 얽매이지 않는 넓은 시야에서 안전을 효율적으로 형성 및 실시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하여 조사, 가이드라인, 실시주체의 창구가 일원화 된 것에 큰 특징이 있다.

이렇게 개정된 JICA법²⁾의 주요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해외경제협력 업무(엔차관 업무 등)의 계승이다. 엔차관 업무와 기타 업무(기술협력, 무상 등)와의 계정은 구분하고, 엔차관 계정에 대해서는 국회의결 예산제도 등, 현행 JBIC의 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유지한다. 또, 실제로 계승이 이루어진 날은 신정채금융기관의 발족일(2008년 10월)로 상정한다.

둘째, 무상 자금협력의 계승이다. 신 JICA가 무상 자금협력의 실시를 계승한다. 이는 기동적인 실시 등 외교정책의 수행상의 필요에 근거로 하여 외무성이 계속하여 실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셋째, 신 JICA 전체의 주무대신은 외무대신이다. 다만, 엔차관의 재무·회계사항에 대해서는 외무대신 및 재무대신으로 한다. 그리고 임원은 현행 10명(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6명, 감사 2명)에 3명(이사 2명, 감사 1명)을 더하여 13명으로 한다.



출처: 日本外務省 <http://www.mofa.go.jp/mofaj/gaiko/oda/nyumon/hayawakari/pdfs/07.pdf>

2) 부록(5)의 「독립행정법인국제협력기구법」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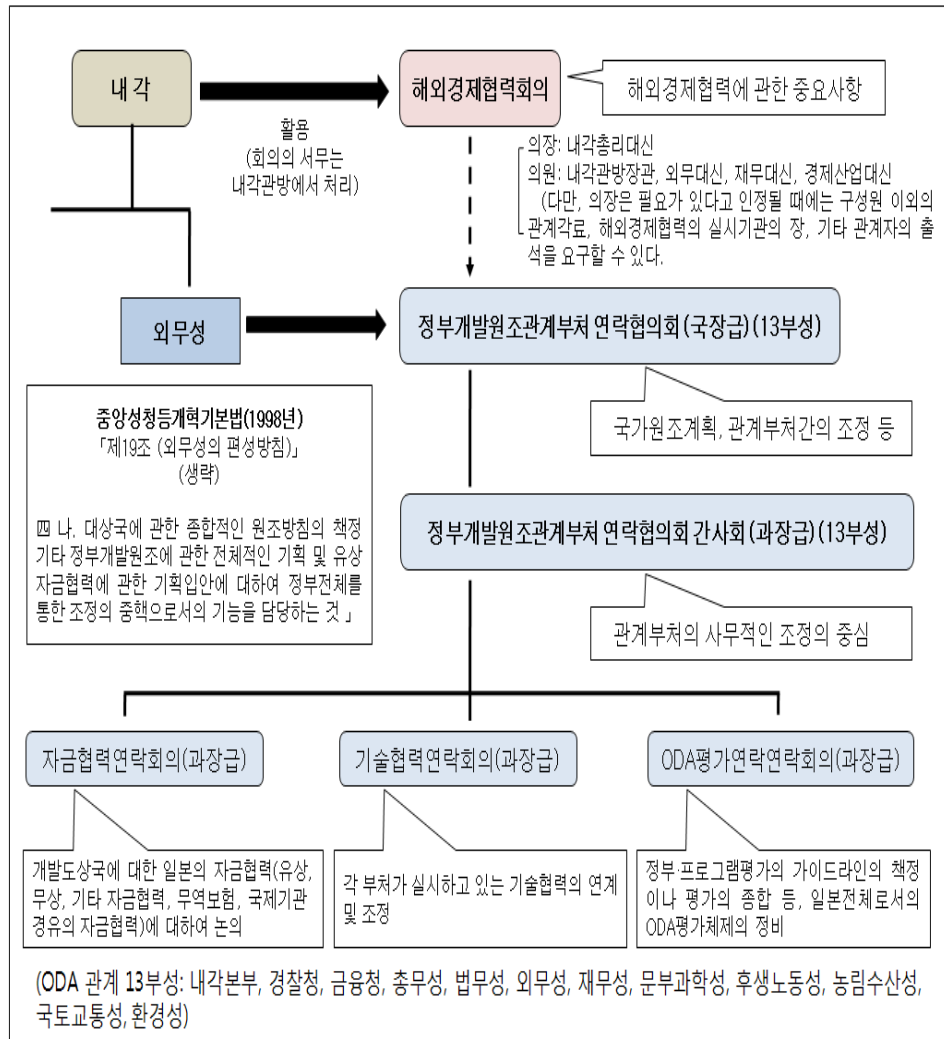
(3) 무엇이 변했는가?

일본정부는 신 JICA의 발족을 위해, 다양한 준비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 개혁은 단순히 조직개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무성과 실시기관 사이의 역할분담을 포함하여, 지금까지의 원조업무의 방법을 대담하게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의 원조는 프로젝트의 축적에 의한 원조라고 말해져 왔지만, 이번에 실시된 개혁으로, 각료가 심의하는 기본전략에 따르는 형태로 원조정책의 기획입안이 이루어져, 외무성의 조정 아래에서 실시기간이 그 방침에 따른 안건을 실시한다는 어프로치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4) 개혁항목

이 개혁 작업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이러한 항목 가운데에는 개혁이 정착되기 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만, 착실히 노력중이다. 또 ODA에는 1부 12성청(1府12省庁)이 제휴하고 있지만, 정부전체의 입장에서 정합성, 일체성, 일관성이 있는 ODA 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외무성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이상으로 관계부처들 간의 연계·조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일본 ODA 정책의 종합조정>



출처: 日本外務省 <http://www.mofa.go.jp/mofaj/gaiko/oda/nyumon/hayawakari.html>

- 1) 포괄적인 원조전략에 근거로 하는 ODA 배분방침의 책정
- 2) 원조방법간의 연계와 「프로젝트화」³⁾의 추진

3) 프로그램이란, 공통의 목적 및 대상 아래에서 상호밀접하게 관련지어 계획 실시된 안건군(案件群)을 말한다.

- 3) 3~5년 앞을 내다보기 보다는 효율적인 안건형성과 원조의 예견
가능성의 향상
- 4) 통합·간소화된 업무흐름의 확립
- 5) 국제기관 등의 다국간 원조와 양국간 원조의 효과적인 연계
- 6) 새로운 무상자금협력제도의 설계
- 7) 현지원조실시체제의 강화
- 8) ODA에 관한 지적거점의 확립

3 ODA

일본의 ODA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에 놓였었다. 이른바, 사용되고 있지 않는 기재나 시설을 공여했다, 니즈를 무시한 생색이다 등등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사실오인이나 의도적인 비판도 그 중에는 있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불충분했던 것도 있다는 것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일본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ODA 개혁을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개혁은 서서히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이다.

2000년대 초반에는 조달정보를 포함한 ODA의 투명성의 향상, 감사·평가의 내실화, 국민참가 촉진 등의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다. 2004년정부부터는 ODA의 전략성 향상, 코스트삭감에 따른 효율성 향상 등의 부분에서 노력이 진전되고 있다.

1. ODA 개혁의 흐름

일본은 2002년도 이후 ODA 개혁노력을 가속화 하여, 첫째로, ODA 「전략의 강화」를 도모하여 ODA 대강의 개정, ODA 중기정책의 책정 등을 실시했다. 그리고 둘째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 감사 및 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했다. 셋째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 ODA 관계부처간의 제휴강화를 도모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참가」 축진을 위한 여러 조치를 마련하여 NGO 등과의 제휴를 강화하고 있다.

ODA 개혁의 흐름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년 도	ODA 개혁에 의해 달성된 성과		전략성의 강화	투명성의 확보	효율성의 향상	국민참가
1997년4월	‘21세기를 위한 ODA 개혁 간담회’ 발족	국내외의 상황변화에 따라 ODA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도모함				
2001년5월	ODA개혁 간담회 최종보고 발표	국가별 원조계획의 도입 등을 제언	○		○	
2001년5월	‘제2차 ODA개혁 간담회’ 발족	효과적·효율적인 원조의 실시를 논의			○	
2002년3월	‘제2차 ODA개혁 간담회’ 최종보고 제출	‘국민참가’, ‘투명성의 확보’, ‘효율성의 향상’을 주요 줄기로 하여 ‘ODA종합 전략회의’의 실시를 제언	○	○	○	○
2002년6월	‘ODA종합전략회의’ 발족	ODA대강의 재검토와 국가별 원조계획 등 ODA의 기본정책과 주요과제를 논의	○	○	○	○
2002년7월	‘ODA개혁: 15년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를 발표	‘감사’, ‘평가’, ‘NGO와의 제휴’, ‘인재의 발굴·육성·활용’, ‘정보공개·홍보’의 5분야가 주요 줄기	○	○	○	○
2002년8월	외무성 개혁 ‘행동계획’ 공표	ODA의 ‘투명성’, ‘평가’, ‘효율화’ 등의 제시		○	○	
2002년12월	‘ODA개혁: 3항목의 실시에 대하여’를 발표	ODA대강의 재검토 등을 제언	○	○	○	

년 도	ODA 개혁에 의해 달성된 성과		전략성의 강화	투명성의 확보	효율성의 향상	국민참가
2003년8월	‘신 ODA대강’ 각의결정	일본의 안전과 번영의 확보를 명기	○	○	○	○
2004년8월	외무성, 구조개혁을 실시	전략적·효과적인 ODA의 실시와 국가별 원조계획의 강화가 포인트	○		○	
2005년2월	신 ODA 중기정책을 책정	ODA 대강의 개정에 따라, 보다 전략적인 실시를 국내외에 제시, ‘현지 ODA task force’의 역할도 명기	○	○	○	○
2005년12월	외무성 ‘ODA의 점검과 개선’을 발표	보다 질 높은 성과중시의 ODA를 내세움	○	○	○	○
2006년2월	‘해외경제협력에 관한 검토회’보고 등	내각의 사령탑적 기능강화와 실시권능의 일원화를 제언	○		○	
2006년4월	내각에 총리대신을 의장으로 하는 ‘해외경제협력회의’를 설치	ODA의 전략성을 보다 강화하는 체제를 확립	○		○	
2006년4월	외무성에 ‘국제협력기획입안본부’를 설치	ODA의 전략적 활용을 추진	○		○	
2006년8월	외무성기구 개혁	국제협력국의 발족	○		○	
2008년10월	JICA, JBIC 통합	계획안간의 제휴강화로 상승효과	○		○	

출처: 日本外務省 <http://www.mofa.go.jp/mofaj/gaiko/oda/nyumon/hayawakari/pdfs/10.pdf> 에서 필자가 재구성

2. ODA 대강의 주요 내용

일본 ODA의 개시 이후, 양적인 확대에 노력한 결과, 1990년대에는 세계 제일의 규모가 되었다. 그래서 일본의 ODA의 기본적인 견해를 명확히 하고 국내외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 1992년에 「정부개발원조(ODA) 대강」을 책정했다. 그 내용은, 기본이념, 원칙 외, 중점사항, ODA의 효과적 실시를 위한 정책, 국내외의 해외와 지지를 얻는 방법 및 실시체제의 6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기본이념」에는 ① 인도적 견지, ② 상호의존관계의 인식, ③ 자조노력, ④ 환경보전의 네 가지 사항을 들고 있다. 또 「원칙」에서는 「상대국의 요청, 경제사회 상황, 양국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① 환경과 개발의 양립, ② 군사적 용도 및 국제분쟁조장으로의 사용회피, ③ 군사지출, 대량파괴 무기·미사일 개발·제조, 무기의 수출입 등에 충분히 주의를 할 것, ④ 민주화의 촉진, 시장지향형 경제도입의 노력 및 기본적 인권 및 자유의 보장상황에 충분히 주의한다는 네 가지 항목에 대한 배려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렇게 외무성은 ODA 대강의 책정 후, 10년간에 걸친 ODA를 둘러싼 국내외의 상황 변화를 바탕으로, 그동안, 국제정세는 격변하여 지금은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있어 평화구축을 비롯한 새로운 개발 과제에 대한 대응이 급선무가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많은 선진 국가는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ODA를 통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었으며, 또 정부, 국제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여 상호 관계를 심화하고 있었다.

일본으로서, 일본국 헌법의 정신에 준하여 국력에 적합한 책임을 완수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새로운 과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ODA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얻는 것

이 중요하며, 국내의 경제 재정상황이나 국민의 의견도 충분히 바탕으로 하면서, ODA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불가결하게 되었었다.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ODA의 전략성, 기동성, 투명성, 효율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폭넓은 국민 참가를 촉진하여 일본의 ODA에 대한 국내외의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2003년 ODA 대강을 개정한다.

2003년에 개정된 ODA 대강(「신 ODA 대강」이라고도 한다)⁴⁾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대한 공헌을 통하여 일본의 안전과 번영의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주요국으로서의 책임으로, 빈곤, 감염증 등의 인도적인 문제나 환경 등의 지구적 규모의 문제, 평화구축, 민주화,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며, 또 일본의 안전과 번영의 확보, 국민의 이익 증진을 위해 특히 아시아 여러 국가와의 연계 및 교류를 활발히 한다. 또 평화를 회구하는 일본에게 있어 ODA는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정책으로, ODA는 앞으로도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특히, ① 개발도상국의 자조노력지원구축, ② 「인권의 안전보장」의 시점, ③ 공평성의 확보, ④ 일본의 경험과 지견의 활용, ⑤ 국제사회에서의 협조와 연계라는 기본방침 아래에, ① 빈곤삭감, ② 지속적인 성장, ③ 지구적 규모의 문제에 대한 노력, ④ 평화의 구축 등 네 가지 사항을 중점과제로 ODA를 실시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를 중점지역으로 삼아 경제제휴의 강화를 충분히 고려하기로 한다. 다만, 경제사회 상황의 다양성, 원조수요의 변화에 유의하면서 전략적으로 중점화하시 위해 노력한다.

다음으로, 원조실시의 원칙으로서는, ① 환경과 개발의 양립, ② 군사적 용도의 회피, ③ 군사지출·대량파괴무기 등에 충분히 주의, ④ 민주화·인권 등에 충분히 주의하는 사항을 바탕으로 하여, 개발도상국의 원조수요, 양국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4) 상세한 내용은, 부록(3)의 「정부개발원조대강」을 참조.

원조정책의 입안 및 실시로서는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바탕으로 노력한다.

첫째, 원조정책의 입안 및 실시체제를 들 수 있다.

- ① 정부 전체로서 일체성과 일관성이 있는 원조정책의 입안(중기정책, 국가별 원조계획),
- ② 관계부처간의 연계(대외 경제협력관계 각료회의 등),
- ③ 정부와 실시기관의 연계,
- ④ 정부협회의 강화,
- ⑤ 현지기능의 강화,
- ⑥ NGO 등의 원조관계자와의 연계

둘째, 국민참가의 확대를 들 수 있다.

- ① 국민각층의 광범위한 참가
- ② 원조인재의 육성과 개발연구
- ③ 개발교육
- ④ 정보공개와 홍보

셋째, 효과적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

- ① 평가의 내실화
- ② 적정한 절차의 확보
- ③ 부정과 부패의 방지, 감사
- ④ 원조관계자의 안전확보

3. ODA 중기정책의 주요 내용

2003년 8월에 각의결정으로 개정되었던 ODA 대강은, 「이 대강을 바탕으로, ODA 중기정책이나 국가별 원조계획을 작성하여, 이에 준한 ODA 정책의 입안 및 실시를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구(旧) ODA 중기정책은, 구 ODA 대강 아래에서 1999년 8월에 책정되었던 것

으로, 책정 후 5년이 경과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2005년 2월에, 이번 ODA 중기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여기에 새로운 중기정책(이하, 신(新) ODA 중기정책)⁵⁾을 책정하게 되었다. 향후 3~5년을 염두에 두고, ODA 대강 가운데, 일본의 견해나 어프로치, 구체적인 대응을 국내외에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ODA를 한층 더 전략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 지구적 규모의 문제를 비롯한 개발과제에 대한 노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다발하는 분쟁이나 테러를 예방하고 평화를 구축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즉시 협조하여 대응을 강화해야 하는 문제이다. 또,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개발도상국과의 경제제휴의 추진 등을 통하여, 이러한 여러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국제사회가 직면하는 긴요한 과제에 대한 노력에서, 일본으로서 ODA 대강이 ODA의 목적을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공헌하고, 이를 통하여 일본의 안전과 번영의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바탕으로,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ODA의 활용을 통하여 일본의 지위에 걸맞은 역할을 완수하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에 기초로 하여, 신 ODA 중기정책에서는, ODA 대강 가운데, 견해나 노력 등을 국내외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했던 것으로, ODA 대강의 기본방침의 하나인 「인간의 안전보장의 시점」에 대하여, ① 인간의 안전보장의 견해, ② 인간의 안전보장의 실현을 위한 원조의 어프로치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또, 이번 ODA 중기정책의 중점과제에 대해서는 ① 빈곤사감, ② 지속적 성장, ③ 지구적 규모의 문제에 대한 노력, ④ 평화의 구축 등을 내세우고 있다.

5) 상세한 내용은, 부록(4) 「정부개발원조에 관한 중기정책」을 참조.

또, 이 신 ODA 중기정책에서는 효율적·효과적인 원조의 실시를 위한 방책으로서, 원조정책의 입안 및 실시 체제에 초점을 맞추어, 「주요한 원조국에 대하여, 피원조국의 개발계획이나 국제적인 개발목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면서, 국가별 원조계획 및 중점과제별·분야별의 방침을 책정하고 있다. 향후, 일본은 국제기관이나 다른 도너와도 연계를 하면서, 이러한 정책입안능력을 한층 더 강화함과 동시에, 정책을 구체적인 안건의 형성·선정·실시로 이어지기 위한 체제를 강화한다」고 기술되어, 피원조국의 개발니즈나 원조의 실태를 더욱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현지의 기능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대응 및 체제정비를 내세우고 있다.

<구체적인 대응>

- ① 개발니즈 등의 조사·분석
- ② 원조정책의 입안·검토
- ③ 원조대상후보안건의 형성·선정
- ④ 현지 원조커뮤니티와의 제휴강화
- ⑤ 피원조국에서의 일본 관계자와의 제휴강화
- ⑥ 일본 ODA레뷰
- ⑦ 정보공개와 홍보

<체제정비>

- ① 적절한 인원배치와 인재육성(외부인재의 적극적인 활용을 포함한다)
- ② IT 등을 활용한 정보·지건의 공유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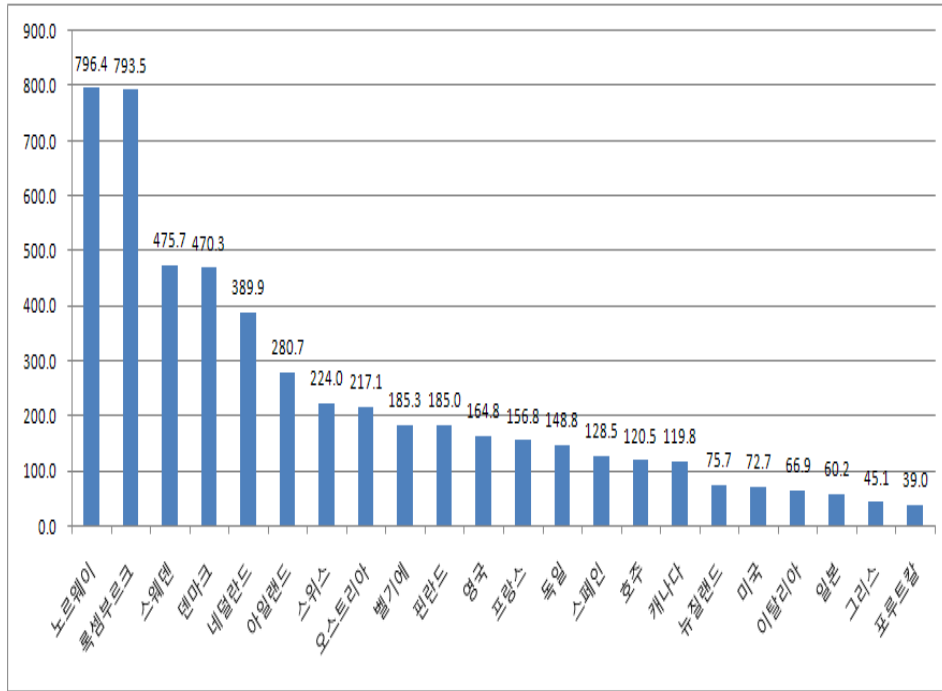
4 ODA

1. ODA의 예산 현황

개발원조위원회(DAC) 국가 중 ODA 실적의 국민 1인당 부담액을 살펴보면, 일본은 국민 1인당 60.2달러로, 노르웨이 796.4 달러, 룩셈부

르크 793.5%, 스웨덴 475.7 달러 등의 북유럽 국가에 비하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개발원조위원회(DAC) 여러 국가의 ODA 실적의 국민 1인당 부담액 (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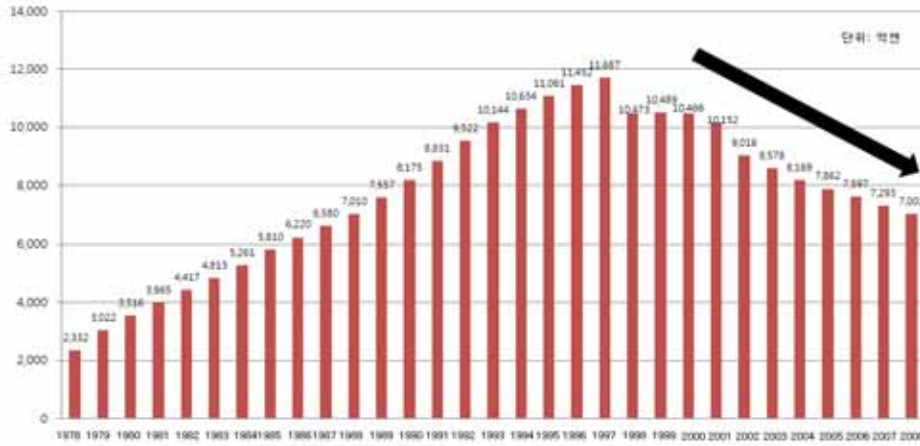
출처: 실적은 2008년 개발원조위원회(DAC) press release (2007년 잠정치 실적), 인구는 2007년 DAC의장보고(2006년 수치)

주 : 동유럽 및 졸업국을 위한 원조를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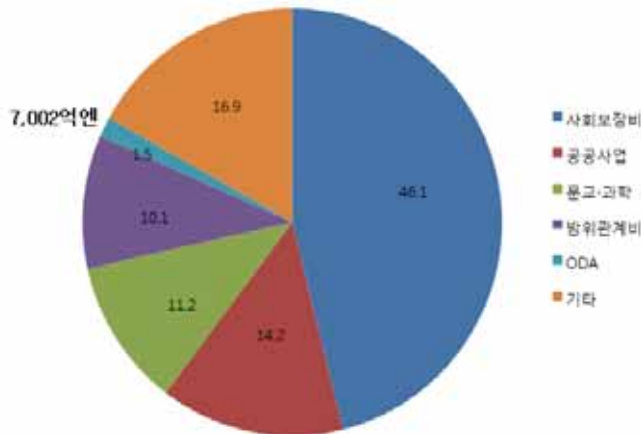
단위: 달 러

일본의 ODA 예산은 1997년도를 피크로 하여 11년간 40%가 삭감되고 있다. 현재ODA 예산은 1980년대의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일반회계 ODA 예산의 추이 (1978-2008)>



<2008년도 예산 일반세출 (약 47.3조엔)에서의 주요경비 비율>



출처: 日本外務省 <http://www.mofa.go.jp/mofaj/gaiko/oda/nyumon/hayawakari/pdfs/12.pdf>

또, 2008년도 예산 일반세출 (약 47.3조엔)에서의 주요경비 비율을 살펴보면, 사회보장비는 46.1%, 공공사업은 14.2%, 문교·과학의 비율

은 11.2%, 방위관계비는 10.1%, 기타는 16.9%를 차지하고 있으나, ODA는 불과 1.5%로 약 7,002억엔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2010년도 외무성 ODA 예산(안)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2010년도 당초 예산(안)>

	2009년도		2010년도	
	예산액	증가율	정부안	증가율
정부전체	6,722	▲4.0%	6,187	▲7.9%
중 외무성	4,363	▲1.0%	4,134	▲5.3%
무상 자금협력	1,608	1.3%	1,542	▲4.2%
JICA 운영비교부금	1,558	1.3%	1,480	▲5.0%
JICA 유상부문교부금	70	▲48.1%	0	▲100.0%
분담금·거출금	502	▲1.8%	514	2.4%
원조활동지원 등	624	▲1.7%	598	▲4.1%

출처: 日本外務省 <http://www.mofa.go.jp/mofaj/gaiko/oda/shiryoyosan/yosan10/pdfs/yosan10.pdf>

단위: 억 엔

<2009년도 제2차 보정예산(안) 추가액>

정부전체(전액: 외무성)	1,458 억엔
【내역】	
아프가니스탄 지원경비	487억엔 (총액: 499억엔)
아시아·아프리카 등 기후변동긴급지원	711억엔
세계 에이즈·결핵·말라리아 대책기금에 대한 거출	189억엔
기타: UN 분담금	0.5억엔 (총액: 4억엔)
기타: UN 평화유지활동 (PKO) 분담금	71억엔 (총액: 1,013억엔)

출처: 日本外務省 <http://www.mofa.go.jp/mofaj/gaiko/oda/shiryoyosan/yosan10/pdfs/yosan10.pdf>

더욱 구체적으로 형태별 예산안을 살펴보면, 먼저, 「무상 자금협력」의 경우 1,542억엔으로 전년에 비해 67억엔, 4.2% 증가했다. 코스트삭감 등을 실시한 뒤, 사업 분류의 결과 등으로, 시설형(하드)에 대한 지원에서 「소프트」, 「사람」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중이다. 코스트 삭감에 의해 14억엔 증가했으며, 사업 분류의 결과를 바탕으로 삭감액이 30억엔 정도 증가했다. 또, 「선택과 집중」에 의해, 아프가니스탄지원, 환경·기후변동 관련 지원, NGO와의 연계강화 등 주요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필요액을 확보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지원은 187억엔, NGO와의 연계는 34억엔, 환경·기후변동 문제에 대한 대응에는 210억엔을 예상하고 있다.

다음으로, 「JICA 운영교부금」은 1,480억엔으로 전년도에 비해 79억엔, 5.0%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코스트삭감 등을 실시한 뒤, 사업 분류의 결과 등으로, 조사연구경비 등을 삭감했다. 업무 코스트 및 관리 코스트의 삭감으로 21억엔 증가했으며, 사업 분류의 결과를 바탕으로 삭감액이 29억엔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선택과 집중」에 의해, 아프가니스탄 지원, NGO와의 연계강화 등 주요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필요액을 확보했다. 아프가니스탄 지원은 109억엔, NGO와의 연계는 74억엔 등을 예상하고 있다.

또, 「분담금·거출금」은 514억엔으로 전년도에 비해 12억엔이 늘어났으며, 2.4% 증가했다. 분담금 및 의무적 거출금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특히 세계의 에이즈·결핵·말라리아 대책 기금에 대한 거출금은 신규로 60억엔을 마련했으며, 이는 일본의 국제공약을 조기에 실현하는 관점에서 2010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고 있다. 기타, 임의 거출금(총액 247억엔(▲47억엔, ▲16%))에 대해서는 엄격한 재정사정 아래에서 개발·인도지원관계기관에 배려하는 등, 국제기관 간에 강약을 준다. 참고로, UN개발계획(UNDP) 거출금 코어펀드는 69억엔(전년도에 비해 ▲7.4억엔, ▲9.7%), UN난민고등판

무관사무소 (UNHCR) 거출금은 53억엔(전년도에 비해 ▲4.0억엔, ▲7.0%), UN아동기금(UNICEF)의 거출금은 15억엔(전년도에 비해 ▲1.6억엔, ▲9.7%), UN세계식량계획(WFP)의 거출금은 6억엔(전년도에 비해 ▲0.7억엔, ▲9.7%) 등이다.

기타, 원조활동 지원 등은 재외공관에서의 경비 등으로, 598억엔으로 전년에 비해 4.1%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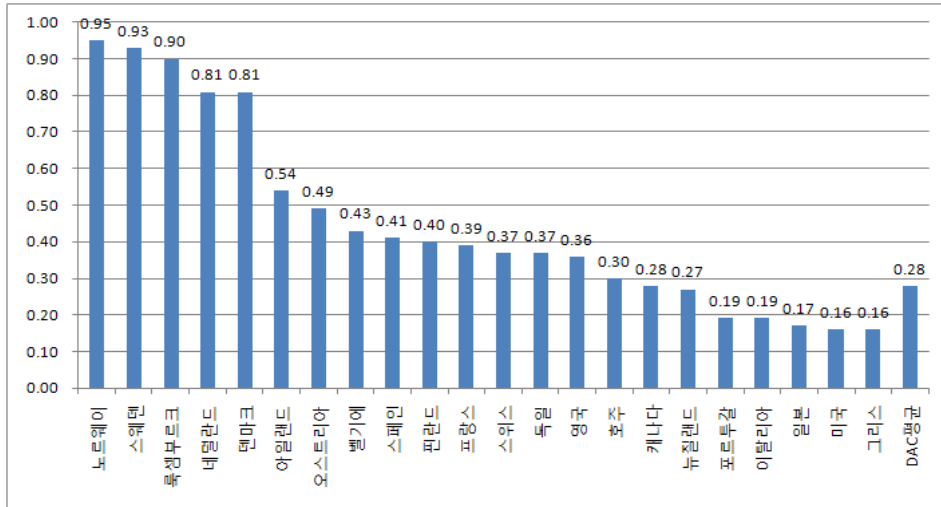
2. ODA 증액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살펴 볼 사항은, ODA 증액에 관련된 사항이다. 세계 각국은 ODA 증액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과거 세계 제1위의 원조국이었고 오늘날에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이지만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원조액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미국은, 「밀레니엄도전 회계(MCA)」를 장래적으로 연액 50억 달러까지 증액할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프랑스는 2007년까지 ODA 대비 GNI(국민총소득)의 비율을 0.5%, 2012년까지는 0.7%를 실현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영국은 2005년까지 ODA 대비 GNP 0.4%, 2013년까지 0.7%를 실현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독일도 2006년까지 ODA 대비 GNP의 비율을 0.33%, 2010년까지 0.51%, 2015년까지 0.7%를 실현할 목표이다. 캐나다는 년 8% 증액하여, 2010년까지는 두 배로 증가할 목표이다(2001년도 기준). 이탈리아는 EU의 공통목표에 따라, 2010년까지 ODA 대비 GNP 비율 0.51%, 2015년까지 0.7%를 실현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일본 역시, 향후 5년간의 ODA 사업량에 대하여 2004년 실적과 비교하여, 100억 달러의 추가하여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달성기간은 유보하고 있지만, ODA 대비 GNP 비율 0.7% 목표를 세우고 있다.

제 2 장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



출처: OECD/DAC online 日本外務省 <http://www.mofa.go.jp/mofaj/gaiko/oda/nyumon/hayawakari/pdfs/14.pdf>

주 : 2007년도 확정치

단위: ODA/GNI %

밀레니엄개발목표(MDGs) 실현을 위하여 각 선진국에 요구되고 있는 2015년까지의 GNI의 0.7%를 ODA에 할당한다는 목표를 위해 여러 국가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06년도의 ODA 대비 GNI의 비율은 0.16%로 OECD의 개발위원회(DAC)의 가입국 22개국 중 20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을 한꺼번에 0.7%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어렵다고 해도, 독일(2007년도의 ODA 대비 GNI 비율 0.37%), 영국(0.36%), 프랑스(0.47%), 이탈리아(0.19%) 등이 공약하고 있듯이, 단계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ODA 대비 GNI 비율 0.7%의 달성은, 현재 일본의 수치인 0.16%에서 보면 거리가 먼 숫자처럼 생각되지만, 일본의 80조엔 대의 국가예산 규모에서 보면 전혀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다. 문제는 그만큼의 돈을 지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보다는, 그만큼의 돈을 써서 어떠한 성과가 예상되는지의 효과와 정책상의 우선순위의 문제이다. 세계 주요국가가

GNI 비율 0.7% 달성을 목표로 ODA를 증액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이에 함께 보폭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외교상의 마이너스를 생각하면 정답은 명확할 것이다. 가령 일본이 2015년까지 ODA 대비 GNI 비율 0.7% 달성을 국내외에 발표했을 경우, 이를 높이 평가하고 환영하는 국제적 반향이 일어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이는 장기적으로 일본의 외교에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ODA 증액과 함께, 원조조건의 완화, 특히 선진국가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증여비율의 향상 및 100% 비구속(untied)화 실현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제 3 장 일본의 공적개발원조의 특징⁶⁾

일본의 ODA의 특징에 대하여, (1) 지역적 특징, (2) 분야적 특징, (3) 원조조건에의 특징, (4) 원조형태의 특징 등의 네 가지로 개관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일본의 ODA는, 제1기의 제2차 대전 후 배상기부터 시작되어 거의 일관되게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은 1992년의 「구 ODA 대강」, 2003년의 「신 ODA 대강」에서 아시아 중시가 관철되어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2006년의 실적을 보면, 아시아는 일본의 ODA 총액의 65.7%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양주(0.9%), 중앙아시아(0.6%), 중동(17.1%), 아프리카(11.1%), 중남미(4.1%), 유럽(0.6%)을 크게 앞서고 있다. 아시아는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관계가 있으며, 또 국가의 숫자나 인구도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실은 그만큼 부자연스럽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 일본으로부터 다액의 원조를 받고 있던 한국이나 대만, 싱가포르 등이 개발도상국의 영역에서 벗어나 원조대상국에서 졸업하고, 또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많은 원조를 받고 있던 국가들이 점차 경제성장을 가속화하여 개발도상국 중에서의 우등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일본이 ODA의 대상국으로의 아시아를 중시하는 것은 일본 ODA 정책의 지역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 横田洋三 「本調査の概要」 『主要先進国における海外援助の制度と動向に関する調査』, ODA研究会, 2008年3月, 9-12頁.

다만, 최근에 세계적인 경향으로서,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하여 난민이 증가하고 있고, 기근 등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빈곤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지역, 특히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일본은 과거 3차 아프리카 개발회의(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TICAD)를 주최하고, 2008년 5월에는 제4차 회의(TICAD IV)를 개최하게 되어, ODA에서의 아프리카 중시의 정책을 명확하게 내세우고 있다. 이 점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일본의 ODA의 비율이, 2006년에는 그 전의 5년간의 평균이었던 7.8%에서 11.1%로 비약적으로 증대했던 사실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최근에 들어서는 대양주, 중앙아시아, 중남미 등에 대한 ODA 금액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 최근 우려되는 경향으로서, 일본의 ODA 금액이 대폭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과거에는 일본이 제1위의 원조국이었던 아프리카의 사하라 이남의 국가(에티오피아, 가나, 케냐, 마다가스칼, 모잠비크, 탄자니아)에서, 일본은 1위의 지위를 다른 국가에게 양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출처: 日本外務省 http://www.mofa.go.jp/mofaj/gaiko/oda/shiryu/hakusyo/07_hakusho_pdf/pdfs/07_hakusho_001.pdf

2

일본의 ODA에 관해서는, 종래 거시 경제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대형개발 프로젝트(댐건설, 도로·철도건설, 철강이나 중화학공업 추진) 중시라는 비판을 많이 들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본은 2번에 걸친 ODA 대강의 방침에 따라, 상하수도, 관개정비, 교육·위생 등의 개발도상국의 시민생활에 밀착된 분야에도 힘을 쏟게 되어 상황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이 시작한 「남남(南南)협력」(개발도상국에 의한 다른 개발도상국으로의 지원은 일본이 원조하는 방식)이나 「일반시민·인간의 안전보장 무상자금」(현지 베이스에서 비정부조직(NGO)을 통하여 1건당 원칙적으로 최대 5,000만 엔(예외로 1억 엔)까지의 프로젝트에 무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은, 개발도상국의 주체성을 육성하고, 시민사회와의 제휴 하에 현지의 니즈(needs)에 적합한 원조를 실시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또, 신 ODA 대강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듯이, 거시 경제적 성장 중시에서, 인간의 안전보장의 관점을 도입한 ODA으로의 전환이 도모되고 있는 점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특히, 빈곤퇴치, 인권·민주주의의 촉진, 환경보전, 기아·난민·재해·감염증에 대한 대응, 테러방지나 법정비지원 등, 인간의 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의 제거를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원조에 힘을 쏟게 되었던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일본의 원조정책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특징으로서 원조에 대한 군사적 용도의 사용금지, 피원조국가의 군사예산이나 대량파괴무기의 개발·제조상황에 대한 유의(주의)가 있다. 이것은 일본의 평화국가의 기본방침으로서 엄격하게 준수해온 시책으로, 군사원조를 ODA의 주요한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 등과 비교할 때 일본 ODA의 특징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3

일본의 원조에 대해서는, 종래 증여비율(grant element)이 낮고, 증여에 비하여 엔화 차관이 많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은 기본적으로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다. 예를 들면, 2001년부터 2005년의 원조총액에 차지하는 증여(무상+기술협력)의 비율은 35%였지만, 2006년도의 수치는 25%로, 오히려 증여의 비율은 대폭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엔화 차관은 국제협력은행에 의한 대부가 중심이지만, 이것은 이자를 붙여 변제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정부의 예산에 반드시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금을 회전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에 대하여, 둘째로 증여는 매년 예산을 획득해야 하며, 최근과 같이 긴축재정 시에는 감액을 저지하는 것이 고작이며, 일반적으로는 감액도 각오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 현재 사정은 일본의 원조방침은 ODA 대강에도 나타나 있듯이 원조수용국의 「자조노력」이 기본으로, 채산을 베이스로 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이익이 상승하도록 계획되고 운영되는 것을 촉구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향으로, 일본도 신 ODA 대강에서 명언하고 있는 사회 인프라, 농업, 교육, 위생, 인권, 환경을 중시하는 원조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엔화 차관은 반드시 적절하다고 할 수 없고, 증여나 조건이 완화한 「대부(soft loan)」가 가미됨으로써, 유연하고 세밀한 원조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의 ODA는 이러한 방향을 목표로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4

일본의 ODA는, 역사적으로 제2차 대전의 배상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는 경위도 있어, 다국간 원조(multi; 국제기관에 대한 거출)보다 양국 간 원조(bi)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현재도 현저하며, 2006년 각국의 ODA 총액에서의 다국간 원조의 비율은 이탈리아 55.4%, 그리스 46.3%, 포르투갈 42.1%, 스페인 38.3%, 덴마크 35.6%, 핀란드 33.8%, 벨기에 33.4%, 스웨덴 32.9% 등 선진 원조국이 대략 3분의 1인 데 비하여, 일본은 20.8%로 5분의 1의 수준이다. 또, 영국(24.2%), 독일(26.1%), 프랑스(27.8%), 네덜란드(28.0%) 등의 원조국도 거의 4분의 1을 충족시키고 있다.

물론 미국의 경우에는 8.5%로 일본보다도 낮은 수준이지만, 일본이 이를 모델로 삼는 것은 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다국간 원조의 금액은 각 국제기관에서의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여 자발적으로 거출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원조금액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양국 간 원조가 많아지는 경향에 있기 때문에, 다국간 원조의 비율이 낮아지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ODA에 대하여 오늘날 자주 지적되는 사항 중에 「조건부(구속)」(tied: 원조자금에 따른 조달처를 일본기업으로 한정하는 것)의 원조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로 1970년까지 일본의 ODA는 원칙적으로 모두 「구속차관(tied loan)」이었다. 그 후 특히 엔화 차관의 비구속(untied)화가 진행되어, 1994년에는 98.3%로 선진국 중에서도 최고의 비구속률을 달성했다.

그러나 엔화 차관을 제외한 무상 및 기술협력 부분에는 구속(tied)이 남아 있기 때문에, 원조총액에 차지하는 비구속률은 오늘날에도 100%

는 아니다. 2005년의 실적에서 일본의 비구속률은 89.6%로, 100%인 영국과 아일랜드, 99.6%의 노르웨이, 99.1%의 룩셈부르크, 98.3%의 스웨덴, 97.4%의 스위스, 96.2%의 네덜란드, 95.7%의 벨기에, 95.1%의 핀란드, 94.7%의 프랑스, 93.0%의 독일 등에 뒤지고 있다.

제 4 장 일본의 공적개발원조의 역사적인 전개⁷⁾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의 지금까지의 흐름을 역사적으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 1 : 2 (1954-1963) - ODA -

일본 ODA의 시작은, 제2차 대전 후 부흥기의 후반에 해당되는 1954년에 서명되었던 일본-버마 배상협정에서 비롯된다. 이 시기는 아직도 일본이 패전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ODA를 실시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서명을 계기로, 전쟁배상을 인접 아시아 국가에 대해 실시하게 되었으며, 그 최초의 국가로서 미얀마(당시 버마)가 협정에 서명했던 것이다. 그 후, 필리핀, 남베트남(당시), 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협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근거로 하여 일본은 「배상」 혹은 이에 준하는 「무상원조」라는 형태로 무상자금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일본의 경제력은 아직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일례로 당시의 일본은 세계은행으로부터는 경제부흥을 위한 다액의 자금을 받아들여, 제강공장이나 고속도로, 도카이도(東海道) 신칸센 등을 건설하였다. 다만, 이 시기에, 일본은 1954년의 「콜롬보 계획(Colombo Plan)」에 참가하여, 가입국간의 협의와 협력을 통하여 개발을 촉진하는 활동을 개시했던 경험도 있고, 전후 부흥과 개발원조가 뒤섞여 배상이 그 연결 역할을 연출했던 시기로서, 일본의 ODA의 제1기로 규정할 수 있다.

7) 横田洋三 「本調査の概要」 『主要先進国における海外援助の制度と動向に関する調査』, ODA研究会, 2008年3月, 2-9頁.

그러한 의미에서 이 시기는, 외무성의 위탁으로 국제개발센터의 프로젝트 팀이 실시했던 조사보고서 「ODA 40년의 총괄(ODA40年の総括)」(1994년, 이하 간단히 「총괄」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은 「전후 배상기」라고 하고 있지만, 이것은 동시에 「일본 ODA의 맹아기」이기도 했다.

2 2 : (1964-1976)
- ODA -

제2기는, 도쿄 올림픽 개최, 도카이도 신칸센의 개통, 수도 고속도로 완성된 1964년부터 제1차 오일쇼크가 진정된 1976년까지의 12년간이다.

이 시기가 시작되는 1964년은, 동시에 일본이 「선진국의 클럽」이라고 말해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이 인정되어, 명실공히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했던 때이기도 하다. 이 시기는 국제적으로는 구 식민지가 계속하여 독립하여 UN가입을 하고 있었던 시기와 중첩되어, ODA의 필요성이 세계적으로 높아졌던 시기이기도 하다. 일본은 이러한 국제적인 요청에 따라 ODA 자금을 증액하고, 구체적으로는 1964년의 1억 1,600만 달러에서 1976년의 11억 100만 달러로, 약 10배의 신장을 보였다.

이 시기에 일본은 원조체제의 확립을 도모하고, 국제협력사업단(JICA: 현 국제협력기구)의 설립(1974년), 해외경제협력기금(OECF: 현 국제협력은행, 1961년 설립)의 체제정비를 실시하여, 정부주체의 ODA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아시아 지역에 개발자금을 제공하는 아시아 개발은행(ADB)의 설립(1966년)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것도 이 시기이다.

이 시기는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움직임이 있었다. 신흥 독립 국가들의 등장으로 조건이 완화된 개발자금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세계은행

의 소프트론(soft loan: credit)의 창구인 국제개발협회(IDA)나, 개발도상국의 기업에 정부보증 없이 직접 대출을 할 수 있는 국제금융공사(IFC)가 창설되었던 것도 이 시기이다(IFC는 1958년, IDA는 1960년에 각각 설립됨).

또한, 이시에는 무역 분야에서도 개발도상국의 요구가 강해져, 자유무역추진을 지향하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일변도가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무역상의 특별한 배려를 요구하는 UN무역개발회의(UNCTAD)가 1964년에 개최되어, 개발도상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것이 UN총회의 보조기관으로서 상설화되었다. UNCTAD에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에 이해를 보이는 최대 사무국장 프레비쉬(Prebisch)의 보고서(「프레비쉬 보고」, 1964년)가 제출되고, 또, 세계은행의 위촉아래에, 개발원조의 기본이념과 구체적 지침을 명확히 했던 「피어슨(Pearson)보고」(1969년)가 공표되어, 그 후 세계의 개발원조 활동의 바이블이 되었다.

이러한 ODA를 둘러싼 국제적인 동향에 대하여, 일본은 개발도상국의 입장에 이해를 보이면서, 원조액의 증대를 도모했다. 이 제2기는 일본경제의 고도성장기와 중복되어, 일본기업의 해외진출과 일본의 ODA의 양적인 확대가 어느 정도 상승관계를 보였다. 즉, 일본 ODA 제2기는 국제적인 요청과 일본의 내재적인 요구가 합치하여, ODA의 양적 확대가 도모되었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세계은행 등으로부터의 부흥원조자금의 수용과 병행하는 형태에서의 배상을 주요한 내용으로 삼는 대외원조라는 제1기의 원조형태를 극복하게 되었고, 일본이 순수한 개발원조 공여국으로서 자각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해외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를 「ODA 40년의 총괄」은 「경제협력 확대기」라고 하지만, 「일본의 ODA의 본격적인 시동기」라고 볼 수 있다.

3 3 : (1977-1988)
- ODA -

일본 ODA의 역사적인 전개에서의 제3기는 제1차 오일쇼크와 제2차 오일쇼크의 중간시기에 해당하는 1977년부터 냉전구조가 붕괴되기 시작한 1988년까지의 11년으로, 「ODA 40년 총괄」은 「계획적 확대기」라고 하고 있지만, 한편 이는 「일본의 ODA의 주체적 확대기」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후자의 주체적 확대기라는 호칭은, 이 시기에 일본이 개발원조에 주체적,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명확히 내세웠던 점에서 채택된 것이다.

1973년에 시작된 제1차 오일쇼크는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의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지만, 일본은 이러한 악조건에서 비교적 빨리 극복하여,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으로부터 원조액의 증대를 강력하게 요청받게 되었다. 또한 1976년에는 전후 배상이 종료되었으며, 1977년에는 국제경제협력회의 각료회의에서 경제협력 목표로서 「5개년간 배증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일본은 다음 해의 「3개년 간 배증계획」(ODA 제1차 중기목표)으로 목표의 달성시기를 1년간 단축했다. 이것은 바로 「총괄」이 언급하듯이 「지금까지 다른 선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대외적인 의사표시로, 일본의 개발도상국 원조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었다(5면)」.

이 시기는, 개발원조에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새로운 동향이 보이게 되었다. 즉, 1970년대는 1972년의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 개최나, 1973년에 시작된 제1차 오일쇼크에서 상징적으로 보여 지는 것처럼, 세계적인 환경(공해)문제나 자원고갈문제에 강한 관심이 집중되게 되어, 단순히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부담이 적은 개발자금을 대량으로 제공하면

좋다는 피어슨 보고서의 주장에 대하여, 환경보전이나 자원보호에 배려했던 원조라는 시점이 도입되게 되었다. 또, 아우구스토 피노체토 (Augusto Pinochet Ugarte) 정권 하의 칠레나, 마르코스(Ferdinand Edralin Marcos) 정권 하의 필리핀과 같은 군사정권하의 인권 억압국가에 대한 원조를 삼가도록 국제적 여론도 형성되었다.

이렇게, 개발 원조를 경제적인 측면뿐 만은 한정하지 않고, 환경, 자원, 인권 등의 관련 영역에 대해서도 배려를 하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이 시기부터 점차 싹트기 시작했다.

그러나 2차에 걸친 오일쇼크의 결과, 일본에 대해서는 여전히 ODA의 양적 확대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어, 1980년대 초에 발생했던 개발도상국의 누적 채무문제로, 그러한 동향은 한층 더 강해졌다.

제3기에 싹트던 개발원조시의 환경이나 인권에 대한 배려의 움직임은, 예를 들면 세계은행의 경우, 내부에 환경담당관을 임명(1972년)하는 것부터 시작되어, 환경국 설치(1987년)로 발전시키는 대응을 보였던 것에 비하여, 일본의 경우는 제3기 동안은 기존의 노선에 따라 대체로 양적 확대에 전념했다.

4 4 : (1988-2000)
- ODA -

일본 ODA의 제4기는 냉전이 종언을 맞이했던 1988년부터 밀레니엄 세계정상회의가 개최되었던 2000년까지의 12년간이다. 이 시기는 일본 ODA가 액수에서 미국을 제치고 제1위가 되어(1989년), 명실공히 원조대국이 되었던 시기였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동서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지역민족 분쟁이 다발하게 되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이른바 「원조 피곤」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여, 톱 도너(donor)로서의 일본의 역할이 한층 더 두드러졌던 시기이기도 하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어 「환경을 배려한 개발」을 제창하여 주목을 받은 「부룬트란트(Brundtland) 보고서」가 1987년에 공표되어, 이에 따라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로부터 20년째가 되는 해였던 1992년에는 리우데자네이로에서 UN 환경개발회의(지구정상회담)가 개최되어, 환경과 개발의 양립을 위한 원칙과 방침(리오 선언문 및 아젠다 21)이 채택되었다.

또, 이 시기에는 1993년의 빈 세계인권회의, 1995년의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담, 같은 해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여성회의 등을 통하여, 개발과 인권의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국가의 거시경제성장을 중시하는 기존의 개발원조 이념을 전환하여 인간중심의 개발이념인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을 UN 개발계획(UNDP)이 주장하고, 1990년 이후 매년, 인간개발지표를 실은 「인간개발보고서」를 발행하게 되었던 것도 이 시기이다.

이러한 개발정책에 관한 국제사회의 큰 변화에 대응하여, 일본도 원조이념을 명확히 하고, 원칙에 따른 원조의 계획·실시를 추진할 필요성을 느껴, 1992년 6월에 일본정부는 각의결정의 형태로 「원조(ODA) 대강」을 발표했다. 대강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본이념으로서 다음의 여러 사항을 명시한다.

- (가) 개발도상국에서의 기아와 빈곤의 현 상황은 인도적 견지에서 간과할 수 없다.
- (나) 평화와 번영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실현을 위해서는 자유, 인권, 민주주의가 확보되는 사회의 구축이 불가결하다.
- (다) 환경의 보전을 배려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추진이 전 인류적 과제이다.
- (라) 광범위한 인재양성, 여러 제도를 포함한 경제사회 기반 및 기초생활 분야의 정비, 그리고 「좋은 통치」의 확보가 목표이다.

그리고, 다음의 네 가지를 원칙으로 든다.

- (가) 환경과 개발을 양립시킨다.
- (나) 군사적 용도 및 국제적 분쟁조장에 대한 ODA 자금의 사용을 회피한다.
- (다) 개발도상국의 군사지출, 대량파괴무기·미사일의 개발·제조, 무기의 수출입 등의 동향에 충분히 주의를 한다.
- (라) 개발도상국에서의 민주화의 촉진, 시장지향형 경제도입의 노력 및 기본적인 인권 및 자유의 보장상황에 충분히 주의를 한다.

또 중점사항으로서 다음의 여러 사항을 지적한다.

- (가) 대상지역으로서는, 아시아 지역 특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 아프리카, 중근동, 중남미, 동유럽 및 대양주의 특히 후발 발전도상국(LLDC)을 중시.
- (나) 대상문제에 관해서는 지구규모문제, 기초생활분야, 인재양성 및 기술협력지원의 노력
- (다) 경제사회개발의 기초조건인 인프라정비지원 중시
- (라) 구조조정, 누적 채무지원에 노력

이러한 ODA 대강의 발표는, 지금까지 원칙이 없는 원조, 국가이익에 봉사하는 원조 등으로 비판되어 왔던 일본의 ODA의 바람직한 양상에 대하여 평가를 일변시킨 획기적인 사건으로서, 국내외의 원조관계자로부터 환영받았다. 특히, 환경, 인권, 민주화 등의 인류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군사적인 목적에 대한 원조를 회피하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되었다. 이러한 제4기를 「일본의 ODA의 충실기」라고 규정짓는 것에 이론은 없을 것이다.

5 5 : (2000-)

일본 ODA의 역사적 전개의 제5기는, 밀레니엄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밀레니엄 선언이 발표되었던 2000년부터 현재까지이다.

국제적으로는 밀레니엄 선언에 근거로 하여 UN이 2001년에 설정했던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 실현을 위하여, UN 관계기관이나 UN 가입국가가 힘을 합쳐 한층 더 효과적인 개발원조의 추진을 도모하는 노력이 가속화되게 되었다.

「MDGs」란, 구체적으로는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개발목표로, ① 1일 1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의 반감, ② 초등교육의 완전실시, ③ 젠더 평등의 실현, ④ 유아사망률의 삭감, ⑤ 임산부의 건강개선, ⑥ 에이즈, 말라리아 등의 감염증의 예방, ⑦ 지속가능한 환경의 보전, ⑧ 지구규모의 개발 파트너십의 구축, 등의 여덟 가지 항목을 들 수 있다.

또, 제5기의 큰 국제적인 사건은,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했던 이른바 「동시다발테러」가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을 중심으로 「테러 지원 국가」에 대한 경제제재가 적용되어, 공적개발원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테러방지를 위해서는 테러의 온상인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도 국제사회에서는 강해졌고, 테러의 위협에서 인간의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빈곤박멸에 진지하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점차 국제원조 커뮤니티에 정착되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에 대응하여 일본정부는, 일본수출입은행과 해외경제협력기금(OECF)을 통합하여 국제협력은행(JBIC)을 설립(1999년)하고, 2003년에는 국제협력사업단(JICA)을 독립행정법인에 개편하여 명칭을 국제협력기구(약칭 「JICA」는 바뀌지 않음)로 하는 등의 기구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채택 후 10년을 경과했던 ODA 대강을 재검토하

여, 2003년에『신 공적개발원조 대강(신 ODA 대강)』이 각의 결정되었다.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먼저, 목적으로서 다음의 여러 사항을 든다.

- (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함으로써 일본의 안전과 번영을 확보한다.
- (나)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세계에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빈부격차의 확대, 민족적 종교적 대립의 격화, 테러의 다발, 자유·인권·민주주의의 억압, 환경의 악화, 감염증의 확대, 남녀의 격차, 빈곤·기아·난민·자연재해의 위협, 등에 ODA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또, 기본방침으로서 다음의 여러 항목을 중시한다.

- (가) 개발도상국의 자조노력지원
- (나) 『인간의 안전보장』의 시점
- (다) 공평성의 확보
- (라) 일본의 경험과 지견의 활용
- (마) 국제사회에서의 협조와 제휴

그리고 중점과제로서 다음의 4가지를 지적한다.

- (가) 빈곤삭감
- (나) 지속적인 성장
- (다) 지구규모문제에 대한 노력
- (라) 평화의 구축

또, 중점지역으로서 아시아 여러 국가, 특히 아세안 등의 동아시아 지역의 중시, 남아시아의 특히 빈곤인구에 대한 배려, 중앙아시아의 특히 코카서스 지역의 민주화와 시장경제화에 대한 지원, 아프리카의

후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강화, 중동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과 평화의 정착계획의 실시, 중남미나 대양주의 특히 취약한 도서국가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다.

그리고, 원조실시 원칙으로서 다음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가) 환경과 개발의 양립

(나) 군사적 용도나 국제적 분쟁 조장에 대한 사용회피

(다) 테러나 대량파괴무기 확산의 방지, 개발도상국의 군사지출이나 대량 파괴 무기·미사일의 개발·제조, 무기의 수출입의 동향에 대한 주의

(라) 민주화 및 인권이나 시장경제도입의 노력 등에 대한 주의

이렇게, 국제적인 원조환경의 변화에 맞춰 일본 ODA 정책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지만, 일본의 원조금액은 피크였던 1997년 이후, 거품경제 붕괴 후인 경제정체와 긴축재정의 영향으로 점차 감소하여, 2007년에는 피크시의 1조 1,687억 엔에서 38% 감소했던 7,293억 엔까지 떨어졌다.

신 ODA 대강의 의욕과는 반대로, 원조액은 매년 감소되어, 예를 들면, 2008년도 ODA 예산액은 7,002억 엔으로 전년에 비하여 4% 감소되었다. 국제적으로는 밀레니엄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원조확대가 요구되고, 주요 선진국가가 ODA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향후에는 국민총소득(GNI)의 0.7% 달성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과거 최대의 ODA 거출국으로 현재도 세계 2위의 경제력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이, ODA 거출액의 순위를 점차 다른 선진 국가에 양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제 5 장 일본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최근 동향

2010년 2월, 오카다(岡田) 외무대신의 지시로, 외무성에서 ODA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한 검토를 개시하게 되었다. 이 작업은 ODA에 대한 국민의 공감의 충분성은 얻어지고 있지 않다는 인식 아래에서, ODA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 재검토를 실시하여, ODA를 보다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오카다 대신의 견해에 근거로 하여 시작된 것이다.

검토작업의 개시 이후, 외무성 내에 마련된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중심으로, 국제협력의 이념·기본방침, 원조의 효과적·효율적 실시, 다양한 관계자와의 연계, 국민의 이해·지지의 촉진, JICA라는 다섯 가지의 논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거듭해왔다. 또, 경제계나 NGO, 일본에 있는 국제기관의 대표자, 또 각계의 유식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하는, 올 해 6월에 발표한 「ODA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한 검토 최종보고(ODAのあり方に関する検討最終とりまと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정부개발원조(ODA)를 둘러싼 현황의 분석

ODA의 바람직한 방법에 관한 검토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먼저 지금까지의 ODA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 재차 ODA의 바람직한 모습을 재검토해야 하는지를 분석했다.

(1) 지금까지의 ODA 평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본의 외교이념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 온다」는 것이었

다. ODA는 이러한 일본의 외교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동아시아의 안정과 성장에서 볼 수 있듯이, 개발도상국·지역의 발전에 크게 공헌해왔다. 이 자체가 일본의 외교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지만, ODA의 대상지역이 확대됨과 동시에, 일본의 국제적 지위의 향상, 일본제품의 시장 확대, 대일감정의 개선 등, 일본 자신도 비익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 일본의 세세한 원조가 국제사회로부터 높이 평가되고 있다.

(2) ODA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대응의 필요성

그러나, ODA를 둘러싼 환경은 최근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1) 국제환경의 변화

국제적으로는 국경을 초월하여 사람, 물자, 돈, 정보가 대량으로 또 신속하게 이동하는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그 결과 일본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그 지리적 범위가 확대하고 있다. 이것은, 기후변동을 비롯한 환경문제나 감염증, 테러 등의 이른바 지구규모과제의 증대로 나타나, 일본의 ODA도 그 대상지역을 동아시아 중심에서 아프리카나 중동을 포함한 세계 전체로 확산되는 것이 필요하게 된 등, 국제사회의 새로운 과제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게 되었다.

다음으로, 경제면에서도 정치면에서도, 신흥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의 대두를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인 자원이나 시장의 획득경쟁이 격화됨과 동시에,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존재가 상대적으로 계속 저하하고 있다.

또, 개발도상국의 개발문제에 관해서는 이전은 선진국의 ODA에 의한 지원이 중심이었지만, 최근 신흥국의 도너나 국제기관, 그리고 NGO·민간재단·기업 등의 비공적 부문에 의한 지원·활동의 중요성

이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개발도상국에 유입되는 자금의 면에서도, 선진국의 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고, 개발문제 전체에서의 ODA의 역할도 상대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 아래에서, 일본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과 국민의 생활은 국제사회의 양상과 더욱더 분리할 수 없는 것이 되고 있으며, 일본의 평화와 번영을 유지해가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상으로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종래의 ODA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국제사회의 새로운 과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일본의 국제적인 존재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2) 국내환경의 변화

이에 대하여, 일본 국내의 환경은 ODA에 있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이라고는 할 수 있다. 경제·재정상황이 엄격한 가운데, ODA 예산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 ODA에 대한 국민의 공감도 저하하고 있다.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감소되는 한편, 「가능한 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증가하는 경향에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일본의 엄격한 경제·재정사정이 있지만, 이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본의 부흥·경제성장기에 일본이 외국이나 국제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을 받은 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늘어, 이른바 「은혜보답」으로서의 ODA라는 발상이 지지를 얻기 어려워진 점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동시에, 국민의 의식이 전체적으로 소극적인 지향이 되어, 해외에서의 사건이나 국제공헌 그 자치에 대한 관심과 지지도 저하하고 있다.

3) 앞으로의 ODA에 요구되는 사항

지금까지 언급했던 상황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ODA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① 보다 전략적·효과적인 원조의 실시
- ② 국민의 강력한 이해와 지지
- ③ 개발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자금의 확보

2. ODA를 재검토한 결과의 개요

이번 ODA에 관한 검토결과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① 일본의 국제협력 가운데, ODA를 「개발협력」의 중핵으로서 규정한다.
- ② 국제협력의 이념을 「열린 국익의 증진」으로 명확히 하고, 왜 일본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지를 국민에게 제시한다.
- ③ 이 이념 아래에서 실시하는 개발협력의 중점분야를 다음의 세 가지로 집약된다.
 - 빈곤삭감(MDGs달성에 대한 공헌)
 - 평화에 대한 투자
 -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지원
- ④ 한정된 자원(예산, 인원, 체제) 가운데, 개발협력의 진행방법을 연구한다.
 - 전략적·효과적인 원조를 실시하기 위한 노력
 - ⇒ 현장주의의 강화
 - ⇒ 평가의 개선
 - ⇒ 다양한 관계자와의 연계(민간기업, NGO, 다른 도너 등)
 -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의 발휘

- ⑤ 개발협력 인재를 육성한다.
- ⑥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 ‘가시화’와 참가를 촉진한다.
- ⑦ 정책기획입안기능(외무성)과 실시체제(JICA)를 강화한다.
- ⑧ 개발협력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기 위해, 다음의 노력을 실시한다.
 - 필요한 ODA의 확보
 - 민간자금· OOF⁸⁾와의 연계
 - 혁신적 자금조달

3. 「개발협력」의 개념과 그 핵심으로서의 ODA

개발도상국의 개발문제에 관계되는 관계자(actor)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의 흐름이 다양화되고 있는 오늘날,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은 ODA 이외의 공적자금(OOF)이나 비공적 부문(기업, NGO, 시민)에 의한 활동도 포함한 「개발협력」으로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고 또 필요하다.

그리고, ODA는 이 개발협력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규정하여, ODA와 OOF나 비공적 부문과의 제휴, 더 나아가서는 보다 넓은 「국제협력」이라는 구조 속에서의 ODA의 역할을 생각해 간다.

또, 국제협력, 개발협력, ODA 각각의 관계를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8) OOF: ODA이외의 정부자금. 구체적으로는 국제협력은행(JBIC)에 의한 출용자, 일본무역보험(NEXI)의 무역보험 등.



4. 개발협력의 이념

ODA를 그 중핵으로 삼는 일본의 개발협력의 이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열린 국익의 증진

- 세계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평화와 번영을 만든다 -

상기의 이념의 배경에 있는 기본적 견해는 다음과 같다.

- ① 일본의 평화와 풍족은, 세계의 평화와 번영 가운데 실현가능하다는 신념 아래, 일본은 계속하여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헌하고, 이에 따라 일본에 있어 보다 좋은 국제환경을 창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
- ② 개발도상국의 원조는,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국경의 울타리가 낮아진 오늘날, 결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자선활동」이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세계의 공동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이다.
- ③ 국제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여 이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ODA뿐만 아니라, 관민의 「사람」, 「지혜」, 「자금」, 「기

술」을 모두 결집했던 「All Japan」의 체제로 개발협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5. 개발협력의 세 가지 주요 사항

위의 4.의 이념 아래에서 행하는 개발협력의 중점분야로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든다.

(1) 빈곤삭감(밀레니엄 개발목표(MDGs) 달성에 대한 공헌)

같은 인간으로서의 공감을 가지고, 개발도상국의 사람들과 함께 인간의 안전보장의 실현을 도모한다. 당면, 2010년 MDGs UN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으로서의 구상과 어프로치를 제시한다. 또, MDGs의 달성을 위해 빈곤삭감으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성장, 보건, 교육에 중점적으로 노력한다.

(2) 평화에 대한 투자

평화와 안정은 MDGs 달성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분쟁을 예방하고, 재발을 막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긴급인도지원에서 치안의 확보, 부흥·성장체험, 일본의 지식·기술·제도를 세계와 공유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한다. 이것은 일본경제의 활성화로도 이어진다. 특히, 중진국·신흥국에 대한 협력에는 ODA와 함께 ODA 이외의 수단도 활용하고, 일본의 성장전략에서의 ODA의 활용도 염두에 두면서 다양한 액터 및 수단과의 연계를 도모한다. 그 중에서도 환경(기후변동을 포함), 인프라정비, 투자환경정비(법·제도정비를 포함)에 중점적으로 노력한다.

6. 전략적 · 효과적인 원조의 실시

(1) 원조의 전략성 강화

일본의 경제 · 재정상황이 엄격한 가운데, 과거와 같이 폭넓은 국가 및 분야를 대상으로 「넓고 얇게」 지원으로 효과를 거두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개발협력의 세 가지 주요 사항에 따라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원조를 실시해 가기 위해, 대상국마다 원조의 방향성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프로그램 어프로치를 강화한다.

1) 원조의 방향성의 명확화

① 원조의 「선택과 집중」

대상국 · 국제기관마다의 원조 · 거출금의 의의나 효과를 분석한 뒤, 원조방침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원조를 실시한다. 이를 위하여, 일본의 원조의 중점분야와의 관계, 대상국의 국가정비에 대한 자세, 대상국의 개발목표, 일본의 개발 약속(commitment), 일본과의 양국관 관계 등에 비추어, 전략적으로 판단한 뒤, 대상국마다의 원조의 방향성을 명확히 한다. 그리고 난 후, 원조를 실시하는 것의 정책적 유용성을 국가 · 지역 횡단적으로 평가하고, 대상국의 원조흡수 능력이나 원조 니즈를 바탕으로 하면서, 년도 당초에 책정하는 국제협력중점방침 아래, 원조를 실시한다(예: 국제교섭에 대한 자세를 바탕으로 특정분야에서의 원조를 강화한다, 지역의 중요성을 비교하여 중점적으로 투입한다 등).

② 국제협력기획입안본부의 적극적 활용

외교정책과 합치한 개발협력을 실시하기 위해, 국제협력기획입안본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특히, 「선택과 집중」에 의한 원조의 방침

을 책정할 때에는, 동본부를 활용하고, 정부 레벨 아래에서 논의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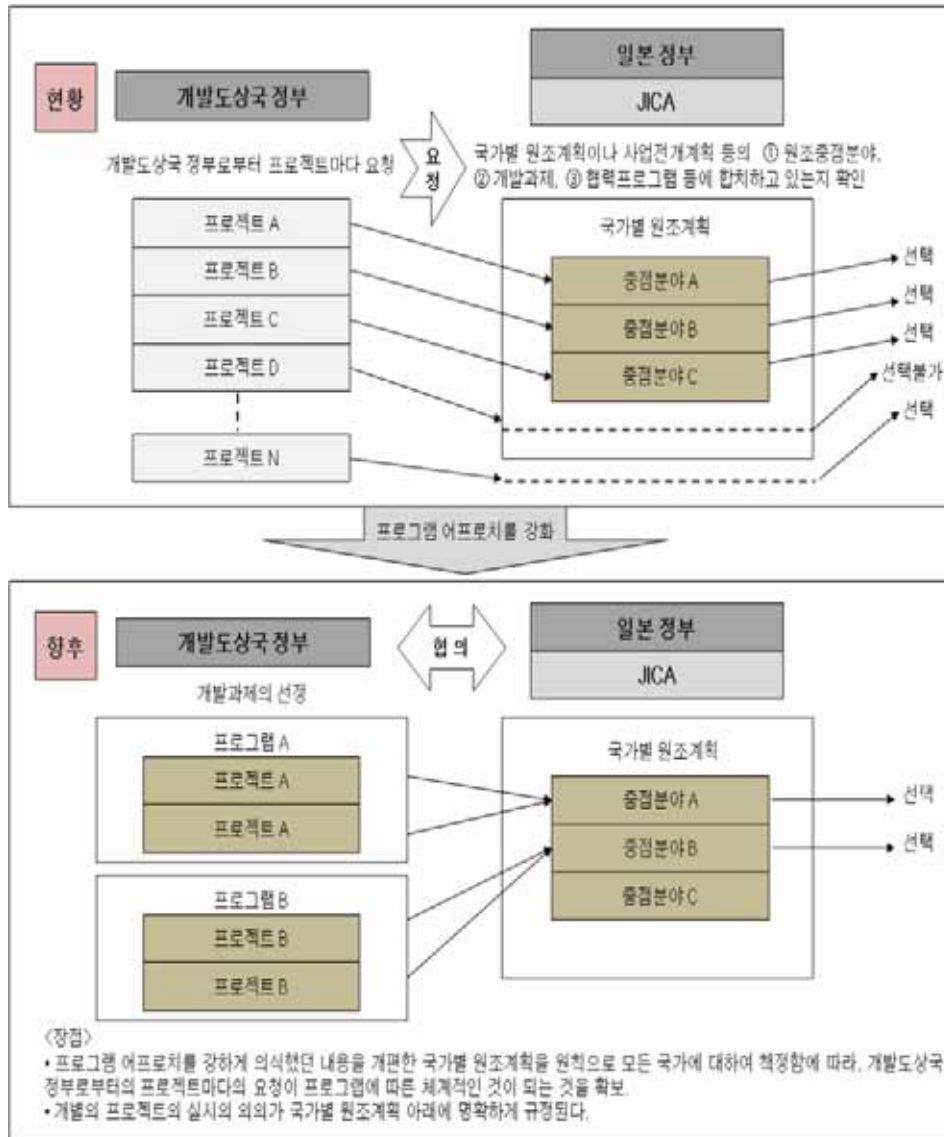
③ 국가별 원조계획의 제도 재검토

국가마다의 원조의 중점분야나 방침을 한층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국가별 원조계획을 간결하고 전략성이 높은 것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국가별 원조계획과 사업전개계획을 통합하고, 그 내용 및 책정 프로세스를 간결화·합리화한 뒤, 원칙적으로 모든 ODA 대상국에 대하여 책정한다.

2) 프로그램 어프로치의 강화

원칙적으로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매 프로젝트의 요청에 근거하여 개별의 원조실시를 검토하는 현재의 어프로치에서, 개발도상국과의 정책협약에 근거로 하여 개발과제 해결을 위한 개발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거기에서 구체적인 원조대상(프로젝트)을 도출해가는 프로그램 어프로치의 이행을 도모한다. 프로그램에 따라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형성함으로써 프로젝트간의 상승효과를 거두고, 전체적으로의 성과의 향상을 도모한다. 그때, 무상 자금협력, 유상 자금협력, 기술협력 등의 원조방법을 유기적으로 조합한다.

먼저는 올해(2010년) 중에 2~3개국 정도를 목표로 파일럿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시행적으로 착수한다. 또 프로그램 어프로치 강화를 위해, 원조대상국의 현지에서의 정책협약·원조협조의 기능, 모니터링, 개발니즈분석(JICA 분석 페이지의 도입)을 강화한다.



(2) 보다 효과적인 원조의 실현을 위한 노력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략성의 향상에 더불어, 원조를 실시하는 어프로치, 방법, 프로세스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원조량뿐만 아니라, 성과를 중시했던 원조

를 실시한다(성과중시에 대한 전환). 또, 현장의 니즈에 부응함과 동시에, 보다 효과적인 외교정책의 수행에 이바지하도록 원조방법을 개선한다. 동시에 신속하고 헛됨이 없고, 경쟁성이 있는 실시 프로세스를 확보한다.

1) 성과중시에 대한 전환

각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로 기대하는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안전 채택 시에 명시·공표함과 동시에, 안전실시의 종료시에는 종료보고를 공표하고, 또 3년 후를 목표로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성과의 달성상황을 공표한다(「가시화」). 이에 따라, 원조효과를 누구라도 알기 쉽게 지시함과 동시에, 성과를 중시했던 원조를 실시한다. 이를 위하여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쌍방에서, 단순히 원조투입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개발과제의 개선에 구체적인 성과를 얻어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구조(구체적인 성과지표)를 검토한다(예: 건설했던 병원의 수나 연수했던 의료종사자 수뿐만이 아니라, 조산부 입회하에서의 출산률의 개선을 모니터하고, 영유아 사망률이나 임산부 사망률의 감소에 얼마만큼 공헌했는지를 가능한 한 수치화하여 제시한다).

2) PDCA 사이클에서의 제3자의 관여

원조의 안전형성·실시·평가·개선이라는 PDCA 사이클에서, 제3자의 관여를 얻음으로써, 철저한 「가시화」와 맞물려, ODA의 설명책임(accountability)의 향상을 도모한다.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던 무상 자금협력 실시적정회의를 개조하고, ODA의 안전의 적정한 형성을 확보한다. 또, 평가단계에서도 제3자의 관여의 방법을 검토한다.

3) 기존의 원조방법의 개선

① 환경·기후변동대책 무상자금협력의 창설

환경·기후변동 분야에서 뛰어난 일본의 기술을 활용해야한다는 국내외의 강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일본의 기술활용을 조건으로 하여 환경·기후변동 분야의 지원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한 스킴을 내세워, 환경·기후변동문제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② 엔차관의 전략적 활용(엔차관 제도의 개혁)

⇒ 외화표시 차관의 검토

개발도상국의 외환 리스크 경감에 따라, 보다 매력있는 방법으로서 엔차관을 활용하는 관점에서, 외화표시 차관의 도입을 포함한 정책을 검토한다. 그 때, 엔화표시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JICA가 외환 리스크를 연계매매(hedge)하는 구조의 정비를 도모하면서, 외환 리스크 경감 니즈가 가장 높은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한다.

⇒ 중진국을 위한 엔차관의 대상분야의 확대

현행제도상, 아프리카를 제외한 중진국을 위한 엔차관의 대상분야는, 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어렵다고 간주되는 「환경(기후변동대상 엔차관을 포함)」, 「인재육성」, 「방재·재해대책」, 「격차시정」의 4 분야로 한정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중진국에 관해서는 아프리카에 대한 대책 및 현장 니즈에 비추어보아, 「광역인프라」 및 「농업」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른 지역의 중진국에 대해서도, 외교정책이나 니즈에 따라 검토한다.

⇒ 패키지·인프라 지원에 대한 노력

엔차관을 활용했던 인프라 지원안건 중에 기술협력 등을 넣어, 하나로 차입국가에 작용함으로써, 인프라 정비지원의 당초에서 해당 인프

라의 운영이나 이를 둘러싼 환경의 정비(제도, 인재육성 등)를 포함했던 패키지·인프라 지원에 힘쓴다.

⇒ ODA 졸업 이행국을 위한 엔차관의 도입

현행 제도상, 중진국을 넘어선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엔차관 공여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기술협력이 중심이다. 한편, 이러한 ODA 졸업 이행국⁹⁾에게도 계속하여 엔차관에 의한 지원 니즈가 있는 점에서, 보다 효과적인 원조를 실시하기 위하여, 또 이러한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계속하여 도모해가는 관점에서 ODA 졸업 이행국에 대한 엔차관 공여를 검토한다.

③ 커뮤니티 개발의 지원 강화

커뮤니티 개발 무상자금협력에서의 소프트면(예를 들면, 학교를 세운다면, 이에 더불어 교원의 확보나 연수 등의 인재육성 등)에서의 지원을 충실하게 하고, NGO의 참가를 촉진한다. 이에 따라, 기재·시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커뮤니티의 자립적인 발전을 지원한다.

④ 문화교류사업과의 관계

문화무상자금협력에 대하여, 개발협력의 이념 및 중점분야도 바탕으로 하여, 향후 바람직한 양상을 재검토한다. 또 국제교류기금 일본어 전문가 파견사업과 JICA에 의한 일본어 교육 보란티어 파견사업 등의 제후 강화에 노력한다.

9) 중진국을 넘어선 국가(세계의 용자 가이드라인(2008년)에서 1인당 국민총소득 6,726 달러 이상이고 또 DAC에서 ODA 대상국으로 간주되고 있는 국가).

4) 원조실시 프로세스의 개선

① 엔차관의 프로세스의 신속화

엔차관 프로세스의 지연은, 차입국 측이 절차(조달절차, 환경사회배려의 확보를 위한 절차 등)에 익숙치 않다는 것이 큰 요인의 하나로 되어 있다. 프로세스의 신속화를 위해, 차입국 정부의 능력향상 지원의 강화를 포함한 다음과 같은 새로운 노력을 실시하고, JICA가 안전형성(사전조사)에 관여하는 안전 가운데, 사전조사 개시에서 공사개시까지 7년 이상 걸리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의 반감을 목표로 한다.

⇒ 환경사회배려에 대한 JICA 연수 코스·참가자 수의 확대를 도모하는 등으로, 차입국 실시기관 관계자에 대한 계발강화를 하여, 환경사회배려의 착실한 실시를 지원한다.

⇒ STEP(본국 기술활용)안전에 대하여, 협력 준비조사(feasibility 조사)를 실시하는 컨설턴트의 계약에 상세설계·입찰도서작성 업무를 옵션으로 포함함으로써, 컨설턴트 조달에 필요로 하는 시간을 단축한다.

⇒ 지금까지 2개국으로 실시되어 왔던 JICA와 차입국 실시기관, 일본 및 차입국 정부 관계자가 참가하는 현지 모니터링 회의를, 향후 11개국으로 확대하여(엔차관 실시중 안전의 8할을 커버), 문제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안전을 조기에 발견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 조기단계에서 안전실시에 관계되는 관심표명을 실시하여, 신속한 안전형성·공여검토·실시를 촉진한다.

② 불필요한 것의 배제와 경쟁성의 향상(기업의 사업참가 촉진을 포함)

⇒ ODA에 관한 유사사업의 중복을 배제한다((재)국제협력추진협회(APIC)에 위탁했던 국제협력 프라자 사업의 폐지 등). 그리고 나서, 정

말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의 경쟁성을 최대한 높인 뒤 실시하도록 끊임없는 개선을 도모한다(계약감사위원회에 의한 JICA계약의 정기적 점검을 통한 일반경쟁 입찰의 확대 등).

⇒ ODA의 개발효과를 확실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입찰이 순조롭지 못하게 되는 소형안건을 피하고, 안건규모를 적정화한다. 또,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적인 경비를 시행적으로 도입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기업의 참가촉진을 도모하고 계약의 경쟁성을 높인다.

⇒ 개별안건마다 사양·설비의 합리화나 구조의 재검토 등에 따른 코스트 삭감 노력(2008년도는 2.9% (13.1억엔)의 코스트 삭감을 달성)을 계속하여, 불필요한 것을 배제한다. 본년도는 9%의 코스트 삭감을 목표로 한다.

③ 사업의 적정한 실시를 위한 노력 강화

⇒ 새로운 JICA 환경사회배려 가이드라인(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착실하게 실시해 간다.

⇒ 「ODA의 부정부패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검토회」¹⁰⁾의 제언(2009년 9월 공표. 상대 정부에 대한 기술지원의 강화, 기업에 대한 기업을 준수(compliance) 강화의 노력, 기업에 대한 조치규정의 개정 등)을 실시하고, 실시상황을 본년도 가을을 목표로 공표한다.

(3) 현장주의의 강화

현지 정세를 바탕으로 한 개발니즈 분석이나 실태파악에 근거로 하여 효과적인 원조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80의 현지 ODA 태스크포스를 설치하여, 대사관이 중심이 되어 현지의 JICA 사무소를 비

10) ODA 사업을 둘러싼 PCI사의 부정사건을 바탕으로, 비슷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검토를 실시하기 위하여, 2001년 6월에 설치된 외부 유식자로 구성된 검토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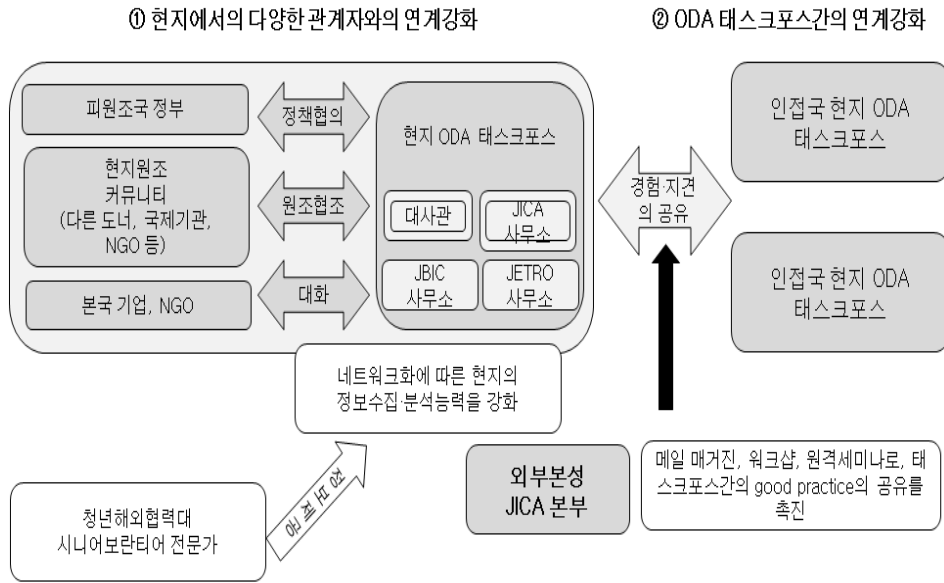
못하여, JETRO, JIBC 각 사무소 등과 하나가되어 개발 니즈의 파악, 현지 원조 커뮤니티와의 제휴, 현지 일본기업·NGO 등과의 연계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으로, 활동의 레벨은 차이가 보이는 등, 각각의 태스크포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견·경험·성공사례의 공유가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관계자의 정보·지견을 최대한 활용하여 질이 높은 정보의 수집·분석을 실시하고 또 기타 태스크포스의 지견·경험이 공유되는 구조를 만듦으로써 현장주의를 강화한다.

⇒ 현재 9개국에 배치되어 있는 경제협력조사원을 확충하는 등, 보란티어·전문가 등이 현장에서 가지는 정보·지견의 현지 ODA 태스크포스와의 공유를 강화하고, 현지 ODA 태스크포스의 정보수습·분석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되는 구조를 만든다.

⇒ 현지 ODA 태스크포스와 현지 일본기업이나 NGO와의 워크숍의 개최빈도를 높여, 대화·정보수습(기업의 CSR 활동 및 NGO의 사업과의 연계 아이디어를 포함한다)을 강화한다(네트워크화의 추진).

⇒ 지역 또는 인접국가의 복수의 현지 ODA 태스크포스에 의한 정보공유의 장을 설치하여, 지역별·과제별로 ODA 태스크포스간의 정보·지견을 공유한다. 이러한 횡단적인 연계강화에 의해 성공사례나 지견을 적절하게 공유 및 활용한다.

⇒ 중점국가에서는 인재와 자원의 중점적인 배분을 추진한다.



(4) 평가의 개선

개발도상국에서 실시하는 개발협력에는 예측할 수 없는 트러블이 항상 생긴다. 그러한 가운데, 불필요한 것이 없고 효과가 높은 원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례에서 교훈을 배워, 비슷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장래의 안전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또, 성공사례를 보급시키기 위해서는, 그 성공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ODA의 평가에 관한 체제를 강화하고, 과거의 교훈을 향후의 원조에 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 평가결과의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방법을 연구하고 알기 쉬운 평가를 실시한다.

1) ODA평가체제의 강화: 평가부문의 독립성 강화와 외부인재의 등용

ODA 평가부문의 체제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질을 높인다. 구체적으로는, 외부성의 ODA 평가부문의 책임자에게 지견과 경험을 가진 외부인재(유식자 등)를 초대하는 것과 동부문의 ODA 정

책부문으로부터의 분리(구체적으로는 외무성의 국제협력국에서 대신 관방(大臣官房)으로의 이관)을 추진한다. 또, 일본의 ODA에 관한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하여, 「ODA 의견함(가칭)」을 마련하여 NGO나 컨설턴트 등, 외부나 현장으로부터의 의견·제언이 외무성·JICA에게 전달되기 쉽도록 노력한다.

2) 과거의 성공사례·실패사례에서 착실하게 교훈을 배우기 위한 구조

평가를 통하여, 실패사례·성공사례 양쪽에서 교훈을 도출하여, 교훈을 장래에 살리기 위한 피드백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성공사례를 넓혀, 헛됨이 없는 원조의 실시를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평가를 실시하는 때에, 정책레벨의 평가에 대해서는 원조계획의 신규 책정이나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 안건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던 지금까지의 방법을 개정하여, 일본의 외교·개발정책의 중점방침에 따라 선정하고, 프로젝트 레벨의 평가에서는 사후단계의 평가에 더불어, 가능한 한 유익한 교훈을 도출할 수 있는 안건(다른 프로젝트에도 활용할 수 있는 성공사례나 실패사례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세한 평가를, 대상을 선별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그리고 난 후,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외무성·JICA의 관계자 모두가 그것을 공유·축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의 안건형성·선정단계에 대한 피드백을 철저히 한다. 구체적으로는, 정책 레벨에서 평가대상을 선정할 시에 가능한 한 많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요구한다(평가대상 선정회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데이터베이스화(교훈의 공유를 포함한다)하고, 외무성·JICA의 모든 관계자가 과거의 평가의 결과를 즉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형성·선정할 시에는 반드시 해당 대상국의 안건이나 (다른 국가에서의 것이라고 해도) 유사한 안건에 관한 지금까지의 평가결과가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체제를 정비한다.

3) 평가의 「가시화」에 따른 정보개시

ODA평가의 결과에 대해서는 외무성이나 JICA의 담당자가 공유할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정부기관, NGO, 관계기업, 연구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넓게 정보를 개시하고, 논의의 재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평가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는 가능한 한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간결한 표현으로 기재함과 동시에 사진이나 도표를 활용하여 「알기 쉽도록」 철저히 한다. 또 평가결과를 긴 문서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의 단계표시로 단적으로 제시하는 레이팅(rating)의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평가보고서의 내용은 외무성·JICA의 홈페이지에서 모두 공개한다(평가의 「가시화」의 추진). 또 안전 레벨에서는 사후평가보고서의 내용을 간결화하고, 알기 쉬운 것으로 한다.

(5) 다양한 관계자와의 연계

국민의 「사람」, 「지혜」, 「자금」, 「기술」을 모두 결집했던 「All Japan」의 체제로 개발협력에 노력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민간기업과 NGO를 비롯한 관계자와의 한층 더 발전된 제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관계자와의 대화를 강화하고, 보다 좋은 개발협력으로 활용한다. 또, 실시면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하여, 일본의 뛰어난 기술·시스템의 활용이나, NGO의 능력강화와 개발능력에 대한 국민 참가의 촉진을 도모한다.

1) 일본의 관계자와의 대화의 확대

① 개발협력포럼(가칭)의 창설

경제계, NGO, 유식자 등의 모든 관계자가 참가하는 열린 대화의 시스템을 새롭게 창설한다. 도쿄뿐만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개최한다(당

면은 도쿄·지방에서 년 1~2회씩의 개최를 목표로 하면서, 그때마다 개발협력의 과제 등에 따라 유연하게 개최한다).

② 경제계와의 대화의 활성화

관민제휴의 한층 더 진행된 추진을 위하여, 경제계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견교환을 활성화한다. 외무성 정무레벨의 참가 아래에서의 대화의 기회를 확보함과 동시에, 관계부처도 포함한 시스템 아래에서의 대화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NGO와의 대화의 강화

개발협력에 대하여, 현장의 지견을 가진 NGO의 의견을 참고로 하기 위하여 외무대신 아래에 NGO 자문그룹(advisory group)을 설치한다(제1회 실시 완료). NGO·외무성 정기협의회(전체회의, ODA 정책협의회, 연계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특정한 테마를 논의하는 분과회를 필요에 따라 설치함과 동시에, 외무성 정무 레벨이 대화에 참가하는 기회를 확보한다. 또, 지방의 NGO가 자주적으로 개최하는 포럼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외무성과의 대화의 장으로서 활용한다.

④ 개발도상국 현지에서의 대화의 확대

현지 ODA 태스크포스의 워크샵의 범위를 확대하고, NGO나 기업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실시한다(매 현지에 모이는 워크샵 개최도 검토한다).

⑤ 연구기관의 활용·연계

JICA 연구소가 중핵이 되어 개발협력에 관계하는 일본 및 해외의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제휴하여, 최신의 국제적 원조조류, 개발니즈 등을 파악하여 원조정책의 입안 및 원조실시단계에서의 개선에 활용한다.

2) 민간기업 등과의 연계: 일본의 기술·시스템의 활용

① 성장전략을 위한 ODA의 활용: 민간기업, OOF와의 연계강화

일본의 성장전략의 실현을 위해서 ODA를 적절하게 활용해 간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실시한다.

⇒ JICA의 해외금융기능¹¹⁾의 조기실현을 위해, 과거의 실패사례·성공사례를 충분히 검증하고, JICA에서의 집행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계부처간에 검토를 가속화한다.

⇒ 개발효과가 높은 BOP(Base of Pyramid) 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다양한 원조방법의 정비를 검토한다.

⇒ 민간제안형의 원조방법을 한층 더 적극적으로 도입한다(예: 민간기업으로부터의 제안에 근거로 하는 PPP 인프라 안전형성을 위한 협력준비조사의 실시나 민간제안형의 무상자금협력의 도입 등).

⇒ 경제계로부터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방기업·중소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이 참가하기 쉬운 원조방법의 양상에 대하여 상기 해외투자유자의 활용도 포함하여 검토한다.

② 민(民)·민(民) 매칭의 지원

민간기업의 CSR 활동이나 BOP 비즈니스와 NGO의 제휴를 촉진하기 위해, 국민제휴의 일반시민·인간의 안전보장 무상 자금협력을 활용하여, 민간기업과 연계하는 NGO에 의한 일반시민·인간의 안전보장 무상 자금협력 안전용의 우선시스템을 설정한다. 또, 그러한 제휴를 촉진하는 다른 원조방법의 정비를 검토한다.

11) 민간섹터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개발촉진을 위해, 개발도상국에서 민간기업 등이 실시하는 개발사업을 출자, 용자로 지원하는 것.

③ 지방·중소기업의 ODA 사업에 대한 참가 촉진

뛰어난 기술을 가진 지방기업·중소기업의 ODA 사업에 대한 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외무성·JICA에 의한 지방기업·중소기업을 위한 ODA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3) NGO와의 연계강화

① 외무성·JICA와 NGO와의 인적왕래의 촉진

NGO에서 경험(특히 개발도상국의 현장에서의 경험)을 쌓은 인재를 외무성·JICA에서 채용하여, 그 지견을 ODA 정책의 기획입안과 실시에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구체적으로는 외무성·JICA에서는 중도채용이나 임기가 있는 직원의 모집에 있어 이 점에 유의한다. NGO에서 외무성·JICA로의 인재의 유입뿐만 아니라, 그 반대 방향의 인재의 유입에 대해서도 실현할 수 없을지, 그 방안을 검토한다. 또, NGO에 관하여 지견을 가진 외부인재를 비상근 직원 등의 형태로 외무성·JICA에 초빙함으로써, 상근 직원으로서가 아니라도 그 지견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한다. 이러한 방책으로, NGO 등 외부의 관점을 일본의 개발협력 정책의 기획입안과 실시의 양측에 반영시켜, 관계자와의 연계를 심화한다.

② NGO의 독자재정기반 강화지원

⇒ 개발협력에서의 「새로운 공공」의 담당자인 NGO에 대하여 민간으로부터의 자금의 흐름이 확대되도록 기반정비를 지원한다. 구체적 시책에 대해서는 NGO와도 충분히 의견교환을 한 후, 기획·실시한다(자금조달을 위한 고문(advisor)에 의한 지도나 웹사이트 등을 활용했던 NGO 사업의 「가시화」 등).

⇒ 일본에서의 기부 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NPO 세제에 관한 「새로운 공공」원탁회의가 정리한 NPO 세제 개정안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세제조사사회에서의 논의를 주시하면서, 국제협력 NGO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제휴한다.

⇒ NGO로부터 요망이 모이는 관민의 합동자금에 의한 개발도상국의 시민사회지원을 위한 기금설립의 아이디어에 대하여, NGO와 의견 교환을 하면서 검토한다.

③ NGO에 대한 지원의 규모·내용의 근본적인 확충

NGO의 여러 활동 및 기반강화를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외무성·JICA의 기존의 협력 스킴에 대해서도 예산규모·지원내용을 확충한다(2010년도부터 운용개시)

⇒ 일본 NGO 연계 무상자금협력의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충한다(29억엔→50억엔). NGO의 자기부담요건의 철저화, 일반관리비의 도입(일부사업) 등의 지원대상 지원의 확충, 복수년 사업의 도입(일부), 평화구축사업의 지원대상 분야에 대한 추가를 실시한다.

⇒ JICA 일반시만 기술협력의 지원기간, 상한액을 재검토한다(3년간, 5천만엔→5년간, 1억엔). 채택(내정)사업의 조사·평가를 확충한다.

⇒ 일본의 NGO에 의한 아프가니스탄 지원과 연계강화(Japan Platform 가입 NGO의 활동지원으로서, 초년도 15억엔 규모의 자금협력).

④ NGO와 연계한 원조의 방법을 새롭게 창설

현지 프로젝트에서의 PDCA 사이클(안건형성, 실시, 평가, 개선) 전체를 통하여, NGO와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는 새로운 원조방법의 창설을 검토한다.

4) All Japan의 노력

관민이 한가 된 All Japan의 노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부처나 JICA 이외의 정부 등 관계기관(국제교류기금, JBIC, JETRO 등)이 실시하는 활동과의 상승효과를 촉진하는 노력이나, 개발도상국의 현지에서 대사관을 거점으로 했던 이러한 정부 등 관계기관이나 일본기업, NGO 등과의 제휴를 추진한다.

7.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의 발휘

(1) 지구규모과제에 대한 노력

국제사회와 일본의 공동이익의 실현을 위하여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지구규모 과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관여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논의를 리드하여 구상을 제시한다.

1) 지구규모과제의 해결을 위한 이념·어프로치의 제시: 인간의 안전보장

일본은, 지구규모의 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인간의 안전보장¹²⁾의 견해를 1990년대부터 선구자로서 주창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해왔다. 계속하여 인간의 안전보장에 대하여 국제적인 논의를 심화하여 보급을 도모한다.

2) 지구규모과제에 대한 적극적 관여

환경, 테러, 감염증 등의 지구규모과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예를 들면, 기후변동대책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동대책의 추

12) 인간의 안전보장 = 사람들이 공포와 결핍에서 해방되어 존엄있는 생명을 다할 수 있는 사회·국가의 실현을 위해 인간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① 그 보호와 능력강화, ② 상호 관련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대처, ③ 다양한 관계자와의 연계를 중시하는 견해.

진을 지원함과 동시에, 모든 주요국에 의한 공평하고 실효성이 있는 국제시스템의 구축과 의욕적인 목표의 합의를 목표로 하는 일본의 교섭에 이바지하도록, 단기적 지원을 적극적·기동적으로 활용해 간다.

3) MDGs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공헌과 논의의 리드

본년 개최되는 MDGs UN 정상회담을 위해, MDGs 가운데 특히 진보가 늦어지고 있는 보건, 교육분야에서의 신정책을 제시한다. 또, MDGs 달성을 위해, 개발도상국, 도너국가, 국제기관, NGO 등이 하나가 된 대응 및 성과를 지속시키기 위한 개발도상국의 자조능력 향상을 기초로 했던 어프로치를 제시한다.

(2) 국제사회의 파트너와의 연계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어, 일본이 주도하는 원조정책·어프로치를 확대하여 일본의 존재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기관, 신흥 도너 등 국제사회의 파트너와의 제휴를 추진한다.

1) 국제기관과의 연계

① 멀티(multi)·바이(bi)의 연계강화

국제사회(UN, 국제개발금융기관 등)와 연계하면서, 국제적인 개발과제나 원조협조의 구조와 보다 정합적인 양국간 원조를 강화함과 동시에, 일본이 주도하는 원조정책이나 원조방법의 국제사회에서의 주류화를 목표로 한다. 또, 종래의 국제기관 경유의 원조와 양국간 원조의 연계(멀티·바이 연계)를 강화하고, 특히 보건, 교육의 두 분야에서 연계를 추진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기관에 대한 필요한 거출금을 확보한다.

② 국제기관과의 연계의 전략성 강화

국제기관의 퍼포먼스를 평가하고, 강약을 주면서 국제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 국제기관과의 대화를 한층 더 촉진한다.

2) 신흥 도너국가, 지역과의 연계

① 신흥 도너국가와의 연계

전통적인 선진국 도너와 국제기관이 협조하여 OECD/DAC 등에서 규정된 일정한 룰(ODA의 증여비율(grant element)나 비구속화(untied)원칙 등)에 따라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한편, 신흥 도너국가가 그러한 룰과 관계없이 전통 도너국가와 동일한 대상국에 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전체적인 원조효과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대상국의 개발정책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DAC에서는 비 DAC 도너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비공식 그룹을 설치하고, 대화를 강화하는 등으로, 국제 룰을 보편적인 것으로 하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는 등, 세계은행에서도 신흥 도너국가들과의 대화나 원조협조를 위한 노력을 통하여 요청해오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앞으로도 다른 도너나 국제기관과 연계하면서 신흥 도너국가에 대한 국제 룰 준수를 계속 요청함과 동시에, 양국간 혹은 지역 내 협력의 시스템도 활용하면서 신흥 도너국가와의 사이에서 원조경험에 대한 정보교환을 포함한 대화를 실시해 간다. 또, 지금까지의 아시아 여러 국가 등에 대한 ODA에 의한 지원으로 축적되었던 지견·경험·인맥을 활용하여, 신흥 도너국가와 협력하여 3각 협력을 추진한다.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의 오직문제에 지견을 가진 싱가포르와, 아시아 여러 국가 등의 오직문제 대책을 연구하고, 필요에 따라서 3각 협력을 실시한다.

② 지역네트워크형의 연계

지역을 하나로 파악하여, 한층 더 원조 효과의 발휘를 도모하는 어프로치로서, 관계국이 공동된 과제에 대하여 함께 노력하기 위해, 관계자간에 네트워크의 형성을 도모하는 「네트워크형」의 협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에 대하여 동남아시아에서 일본 ODA의 경험을 통한 축적을 활용하여 정책연구나 지적 네트워크 형성을 검토한다.

8. 개발인재의 육성

일본이 뛰어난 개발협력을 실시해가기 위해서는 뛰어난 개발인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국가의 입장에서 우수한 인재의 양성·확보를 해야 하기 위해 노력하고, 개발인재의 저변은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개발협력에서 일본의 존재감을 제시하고 질이 높은 원조를 행하기 위해서는 한층 더 개발인재의 저변의 확대와, 우수한 인재의 육성·활용이 필요하다.

(1) 육성프로그램의 내실화에 의한 개발인재의 저변 확대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내실화시켜감으로써, 개발의 현장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완수할 수 있는 인재에서 일반시민 레벨의 인재까지 폭넓게 육성하여, 개발인재의 저변을 넓힌다.

① 연수 프로그램의 확충

국제기관 취직내정자나 국제기관 취직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을 확충한다(예산은 외무성에 계상하고, 연수실시기관은 일반경쟁입찰(종합평가 낙찰방식)로 선정). 연수종료 후에는 JPO 파견

제도13)를 넓게 유지하는 등으로, 국제기관이 개발분야에서 추진하는 인재의 발굴을 실시하여, 국제기관에 취직한 뒤에는 대사관을 통하여 정보제공을 하는 등, 커리어 업(career up)을 지원한다.

② 개발의 현장에서 지도적 입장에 설 수 있는 인재의 육성

지금까지 실시해온 국제개발(IDS) 석사과정 프로그램의 실시기관·프로그램·대상자를 재검토하고, 국제기관, NGO, 전문가 등, 개발협력의 현장에서 활약하는 인재에 대하여, 보다 고도로 실천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도너의 정리역할이 되는 등, 현지에서 지도적인 입장에 설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

③ NGO에 의한 인재육성에 대한 지원

NGO가 개발협력에 종사하는 인재의 육성을 실시할 수 있도록, NGO가 채용하는 인턴의 비용(연수지도경비 등)을 외무성이 부담하는 「NGO 인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20개의 NGO에 대하여, 각 1명의 인턴을 10개월 간 받아들여 육성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④ 현장·일반 시민레벨의 인재의 저변 확대

청년해외협력대 OB·OG에게, 경제협력전문원이나 일반시민·인간의 안전보장 무상 위촉원으로서 개발협력에 지속적으로 관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다음의 개발협력 커리어 스텝(career step)으로 연결하여 현장·일반 시민레벨의 인재의 저변을 확대한다.

13) JPO 파견제도: 장래적으로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직의 국제공무원을 지망하는 청년 일본인을 대상으로, 일본정부의 경비부담으로 일정기간(원칙 2년간) 각 국제기관에서 직원으로 근무시켜, 국제기관에서의 정규직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기관의 일본인 직원을 증강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2) 개발협력의 제일선에서 활약하는 인재의 육성

개발협력의 현장에서 일본이 보다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커리어 형성의 지원을 포함하여, 제일선에서 활약하는 인재를 육성한다.

① 외무성·JICA에서의 개발분야의 우수한 전문가의 육성·배치

외무성·JICA에서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여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다음의 대응을 추진한다.

⇒ 개발협력에 관심이 있는 직원을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육성할 수 있도록, 전문관 제도를 이용하여 「경제협력전문관」으로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해당 직원의 커리어 패스(career path)를 명확히 한다.

⇒ 개발협력에 관심을 가진 직원에게는 I종·전문직원 입성 후의 재외연수에서, 개발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도록 장려한다.

⇒ 재외공관의 경제협력의 담당관 중에 반드시 어학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 비추어보아, 그러한 포지션에는 가능한 한 어학력·전문성을 겸비한 직원을 배치한다.

⇒ 재외공관의 개발협력분야의 지원 스텝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제협력조정원·일반시민 위촉원을 확충한다.

⇒ JICA에서는, 청년단계에서 전문분야를 포함한 커리어의 방향성을 의식시킴과 동시에, 다양한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현장에서 전개할 기회를 늘림으로써, 직원의 전문성을 보다 한층 더 향상시켜 활용하는 커리어 개발을 촉진한다.

② 개발 컨설턴트 등의 육성촉진

우량조건의 형성·실시를 위해 필요한 개발 컨설턴트로서 일하는 청년 인재의 육성·등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새로운 인재공급원이 되

는 기업이나 조직(연수기관, 대학, NGO 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노력을 실시한다.

⇒ JICA의 컨설턴트 사전등록제도의 폐지 등, 발주제도를 재검토한다.

⇒ 발주공시시, 요원배치에 대하여 JICA측 지정을 유연화하는 등, 청년의 등용촉진을 위해 경쟁조건을 재검토한다.

⇒ 각 성이 실시하는 컨설턴트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무성이 요청한다.

③ 커리어 형성지원

JPO 제도 등을 통하여, 청년 커리어 형성을 지원한다.

⇒ NPO 제도에 의해, 국제기관 근무를 지망하는 청년을 국제기관에 파견하여 정규직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

⇒ JICA의 국제협력 커리어 종합정보 사이트「PARTNER」를 통하여, 국제기관·기업(개발컨설턴트기업 등)·NGO 등의 구인정보나, 연수·세미나 개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청년 인재의 커리어 형성을 지원한다.

9. 국민의 이해와 지지의 촉진

현재, 일본의 경제·재정상황이 엄격해지는 가운데, 개발협력의 의의에 대하여 국민사이에 충분한 공감대 얻어져 있지 않고, ODA를 증가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지지도 얻어져 있지 않다. 개발협력의 실시에 반드시 필요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하여, 개발협력의 개선에 더불어, 그 의의와 실태를 국민에 전하기 위하여, 국제기관이나 NGO와도 연계하면서 효율적인 정보의 발신과 국민참가의 촉진에 노력한다.

(1) 국민참가와 공감의 확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개발협력의 현장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ODA의 실정에 접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참가를 촉진하여 공감을 높인다. 또 보다 폭넓은 층의 사람들이 개발협력을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지방으로의 발신을 강화한다.

1) 국민참가의 촉진

⇒ 개발협력포럼이나 JICA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프로젝트」¹⁴⁾에 대한 국민각층의 참가를 통하여 개발협력에 관한 각층간의 대화를 촉진하여 이해를 촉진한다.

⇒ 대학의 세미나에 의한 ODA 사이트 시찰의 지원(외무성·JICA에 의한 사이트 소개, 정보제공 등), 교사나 지방자치체 관계자 등의 현지시찰로의 파견이나 JICA 보란티어 사업으로의 참가촉진 등을 통하여,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이 개발협력의 현장을 체험·시찰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2008년도까지 실시했던 ODA 민간 모니터사업의 비용대비 효과를 보다 높였던 참가형 사업을 시작한다. 또 시민주체의 개발협력·국제이해활동(개발교육을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 NGO 등과의 공동개최에 의한 「글로벌 페스타 JAPAN」(장소: 히야야공원(日比谷公園))과 지방에서의 개발협력관련 이벤트를 공동개최하여 상호 중계하는 등 하여 전국적인 관심을 환기한다.

14) 「なんとかしなきゃ!プロジェクト」: 개발협력을 실시하는 단체·기관이 파트너가 되어 개발도상국의 실상이나 개발협력의 의의·필요성을 계발하여 널리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이해·지지·참획으로 이어지는 홍보사업이다. 외부의 개발협력관계의 웹사이트와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저명인의 코멘트를 인터넷 TV 등에서 소개하고, 지역별 협력단체 뉴스에 의한 이벤트 소개, 유저 참가형 툴(Twitter)에서 참가자의 메시지를 가시화, 지구광장의 이벤트와의 제휴 등을 통하여, 개발협력을 무관심층에도 어필함과 동시에, 모금·자선 등으로의 적극적 참가 등을 촉구한다.

2) 지방이나 폭넓은 층에 대한 발신

⇒ 전국의 JICA 국제센터가 중심이 되어, NGO 등과 협력하면서 지방의 이해·지지촉진의 노력을 강화한다(예: 개발협력포럼의 지방개최, 일반시민의 기술협력이나 연수사업 등으로 일본에 온 개발도상국 관계자와 지방시민과의 교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지방에서의 개발협력관련 이벤트에 대한 지역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지역 저명인을 파견 등).

⇒ 외무성의 ODA 홍보프로그램을 개발협력 프로모션 방송「지구 VOCE」로 전면 쇄신한다. 국민이 개발문제를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가까운 시선·화제에 맞춘 테마를 거론하는 등 연구함과 동시에, 지방에서 방영하는 등, 무료잡지 등과 제휴하여 보다 폭넓은 층에 어프로치한다(올해 4월부터 방영중).

(2) 철저한 「가시화」 (투명성의 향상)

성과중시로의 전환에 의한 원조의 효과의 명시, 모든 ODA 자금협력 프로젝트의 현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가시화하는 웹사이트(HP)의 설립, 알기 쉬운 평가보고서의 작성 등을 통하여 정보개시를 강화한다. 그 때, 성공사례든 실패사례든 관계없이 정보를 개시한다. 이렇게 개발협력의 투명성을 높이고 또 목적이나 실태를 가능한 한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ODA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킨다.

(3) ODA의 현장을 전하는 홍보의 효율화

개발협력의 중요성이나 정책적인 의의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를 요구하기 위한 노력은 정무레벨을 비롯한 외무성에서 실시하지만, 개발협력의 현상이나 구체적인 사업을 전하는 ODA 홍보는 원칙적으로 JICA에 집약된다. 이로써, 홍보의 효율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JICA가

국민의 정보 액세스의 허브가 되어 이용자에게 있어서의 편리성 및 알기 쉽도록 향상시킨다. 또, JICA의 지방에서의 거점 등을 활용하여, 전국 규모로 국민의 관심환기를 도모한다(또, 개발도상국 현지에서는 프로젝트의 홍보는 JICA 사무소가 중심이 되고, 정책 홍보면에서는 대사관이 전면에 나서서 실시한다).

JICA에서는 ODA 안건의 형성·실시시, 국민에 대한 정보개시를 항상 업무 흐름속에 규정됨과 동시에, JICA 국제센터 등을 활용한 국민의 현장체험을 한층 더 촉진한다.

10. 기획입안기능과 실시체제(JICA)의 강화

상기의 노력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외무성은 정책의 기획·입안에 집중하고, JICA는 실시에 책임을 진다는 역할분담을 철저히 한다. 이를 위해서도, JICA는 원조실시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살리고, 원조의 현장에서의 개발니즈·실태의 파악·분석이나 원조실시의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분석·구상력의 강화, 실시체제의 정비,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JICA에 대한 쇄신에 힘쓴다.

(1) 철저한 외무성(정책)과 JICA(실시)의 역할분담

외무성은 정책기획입안기능을 강화하고, JICA는 원조실시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서 외무성은 2009년도의 기구개혁에 의한 국가별 기능의 확충을 활용하여 국가마다의 원조전략을 강화하고, JICA는 실시능력(전문성과 기동력)·책임·조직관리 등을 강화한다. 동시에, 외무성과 JICA의 업무에서 중복되는 것, 조정코스트를 포함하여 간결화 할 수 있는 것, 외무성에서 JICA로 이관할 수 있는 것을 선출하여 전체의 업무를 합리화한다. 이로써, 각각의 역할을 보다 좋게 완수하여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힘쓴다.

(2) JICA의 개선

원조실시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업구상력을 강화하고, 보다 질 높은 원조를 실시한다. 또, 안전형성·실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동력있는 실시체제를 정비한다. 동시에, 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조직으로의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1) 사업구상력의 강화

⇒ 주요한 원조대상국(JICA 사무소의 소재국을 중심으로 50개국 정도)에 대하여, JICA의 국가별 개발전략·니즈분석(JICA Analytical Work)을 실시한다. 그 때, 원조대상국의 개발정책뿐만 아니라, 전문가, 보란티어 등을 통하여 얻은 현장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한다.

⇒ 일본의 리소스와 개발도상국의 니즈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국제사회에 발신한다(JICA 연구소도 활용). (아프리카를 위한 쌀 증산지원, 패키지 인프라 지원, 기후변동대책지원, BOP 비즈니스 연계촉진 등)

⇒ 향후 5년간 정도의 후보안건을 포함한 프로그램(개발과제별)의 구상을, 원조대상국이나 다른 도너와도 협의하면서 만들어 일본의 구각별 원조계획에 활용한다.

2) 안전형성·실시능력향상을 위해 기동력있는 실시체제를 정비

⇒ 정부간에 합의된 프로그램의 구조 내에서, JICA는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한다(대외설명책임도 가진다).

⇒ 새로운 원조실시방법을 연구·검토한다(재정지원형 원조, 광역협력이나 지역국제기관을 위한 협력 등에 관하여, 메뉴를 정부에 제언).

⇒ PDCA 사이클을 철저히 한다(프로그램 단위의 사업실시에 적절한 효과·성과지표의 설정, 과거의 교훈 등을 계획입안에 반영하는 시스템의 강화 등).

⇒ 현지실시체제의 정비를 추진하여 청년직원에게 풍부한 현장체험을 쌓게 하는 등 직원의 재외전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한 수치 목표를 설정한다.

⇒ 평화구축의 현장 등 불안정한 지역에서의 안전관리의 정비·강화에 힘쓴다.

3)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강인으로 열린 JICA로의 쇄신

① 철저한 코스트 삭감

⇒ 국내시설(본부, 이치가야(市ヶ谷), 히로오(広尾), 오사카 센터)에 대해서는 사업 분류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전·매각의 준비를 추진한다.

⇒ JICA가 발주하는 사업의 계약을 「임의계약 등 재검토 계획」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등, 경쟁성이 높은 방식으로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계약감사위원회에 의한 엄격한 점검을 받음으로써 보다 더 많은 코스트 삭감을 도모한다.

⇒ 연수원 수용, 여비, 위탁업무의 재검토에 의한 코스트 삭감(2010년도의 삭감목표액 약40억엔)을 철저히 한다.

⇒ 재외근무수당, 전문가수당의 기준(공무원 준거)을 재차 책정한다.

② 거버넌스(governance)의 강화와 투명성의 향상

⇒ 국제협력사업의 최전선에 선 전문가, 보란티어, NGO, 컨설턴트를 비롯한 민간기업 등에서, JICA 사업에 대한 개선 제안을 접수하는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사무절차의 간소화·합리화 등의 개선으로 연결시킨다.

⇒ JICA 조직 내에서의 부단한 업무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기능(법령준수(Compliance)위원회, 사업심사·평가, 사후감사, 조달감시 등)을 강화한다.

⇒ 조직의 경영기능강화의 관점에서, 임원포스트의 구성·인수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수개월 내에 결론을 내어 정부와 협의한다. 결론은 3년 이내(2013년 여름까지)의 이행기간을 거쳐 실시한다.

⇒ 능력과 공헌을 보다 중시하는 인사제도를 도입하여 간부 포스트가 젊어지도록 추진하여 활력 넘치는 조직정비를 목표로 한다.

③ 다양한 관계자의 「결절점」으로서의 역할의 강화

⇒ 개발협력을 다양한 관계자와의 한층 더 연계하여 실시하기 위하여, JICA는 원조대상국이나 다른 도너·국제기관, NGO, 민간기업 등, 모든 관계자를 잇는 「연결점=결절점」으로서의 역할을 완수한다(도너 회의에서의 개발정책논의의 리드, 일반시민 기술협력의 확충 등 NGO 지원강화, 해외투융자의 재구축이나 CSR/BOP 비즈니스 촉진 등의 관민제휴를 강화).

⇒ 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촉진하기 위해, JICA의 국내외의 자산(특히 국내 각지에 소재하는 JICA 국내거점, 귀국보란티어, 기술연수원 등)을 풀로 활용하여 ODA 홍보, 교류·회의를 위한 장소의 제공, 심포지엄이나 연수의 실시 등에 힘을 쏟는다.

11. 개발자금의 동원

국제사회의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여, 일본이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번 ODA의 재검토 내용을 착실하게 실시하여 보다 전략적·

효과적인 원조를 실시함과 동시에, 국민의 강력한 이해와 지지를 얻어 개발협력의 밑천(=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때, ODA의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더불어 방대하고 다양한 개발 니즈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타 자금의 동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1) ODA의 확충을 위한 노력

일본은 세계화된 오늘날의 세계에서, 주요국과 보조를 맞추어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의 추구에 힘써야 하고, 개발협력의 핵심인 ODA를 충분히 실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재정상황이 엄격한 가운데에서도, 아프가니스탄 지원이나 아프리카 지원을 비롯한 공약을 완수함과 동시에, 장래를 위해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ODA의 감소경향을 막고 ODA의 확충에 힘쓴다. 그 전제로서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코스트 삭감 노력을 추진한다.

또, 최근 ODA가 감소경향에 있는 가운데, 당초 예산뿐만 아니라 보정예산에 의한 ODA도 더불어 사업량을 확보해왔다. 보정예산은 그때 그때의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필요성이나 그 수준이 합리적·확실하게 예상할 수 있는 ODA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당초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민간자금·OOF와의 연계

개발도상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무역이나 투자 등의 민간활동의 활성화가 ODA와 함께 중요하다. 개발도상국의 하드·소프트의 인프라정비, 무역·투자에 관한 여러 제도의 정비나 인재육성, 거버넌스의 향상 등, 일본기업의 개발도상국에서의 활동에도 이바지하는 환경정비를 실시한다. 또, JICA의 해외투융자기능을 조기에 재구축함과 동시에, 관계부처와도 연계하면서, OOF나 민간자금과의 연계를 도모한다.

(3) 혁신적 자금조달

① 국제개발연대세금에 대한 노력

개발을 위한 추가적 재원으로서, 국제개발연대세금을 국내외의 관심을 환기시켜 논의를 심화하면서 중기적으로 촉진한다.

② 자발적 공헌에 의한 자금조달

⇒ 개발에 관련된 모금이나 기부의 제도에 대하여, 국제개발연대세금과 더불어 자금조달수단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이미 실시되고 있는 노력(재해발생시의 국제기관·NGO를 통한 모금 등)을 JICA의 웹사이트(HP) 등에서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등, 정보유통을 촉진하여 국민에 의한 자발적인 공헌을 촉진한다.

③ 기타 혁신적 자금조달 매카니즘도 검토

국제적으로 논의·실시되어 있는 세제이외의 공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검토한다.

12. 정부개발원조 대강(ODA 대강)의 개정

이번 재검토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념·기본방침을 반영하기 위해, ODA 대강의 개정을 위해 정부 내에서 협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이에 더불어, 정부개발원조에 관한 중기정책은, 그 규정을 포함하여 재검토를 한다. 국가별 원조계획은 이러한 상위정책을 반영함과 동시에, 간결하고 전략성이 높은 것으로 재편하여 책정 대상국을 확대한다. 분야별 개발정책은 양국간·다국간의 원조정책에서의 실효적인 전략적 방침으로 한다.

제 6 장 일본의 법정비지원제도

본 장에서는, JICA와 일본 법무성이 실시하는 법제도정비지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실시와 일본의 ODA 스킴에 의한 지적지원·협력의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본정부가 정부개발원조의 한 방법으로서 실시하고 있는 「법제도정비지원」에 대하여 개관하기로 한다.

국민의 정치참가, 효율적인 행정, 투자환경의 정비 등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법제도정비는 경제사회개발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또 개발도국의 좋은 통치(good governance)의 확립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법제도정비지원이 국제기관 및 양국간 원조기관에 의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도 JICA의 중요정책의 핵심 지원협력의 일환으로서, 1996년도부터 「베트남 중요정책 핵심지원: 법정비」 사업을 실시하는 등, 정부개발원조(ODA)대강, ODA중기정책 등에 근거로 하여, (1) 자유·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관의 공유에 의한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법의 지배의 정착, (2)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환경정비 및 글로벌한 룰의 준수의 확보, (3) 일본의 경험·제도의 공유, 일본과의 경제제휴 강화 등의 관점에서, 기본법 및 경제법의 분야에서 적극적인 법제도정비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 이는 기술협력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얼굴이 보이는 원조의 일익을 담당할 것이 기대되며, 지적지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1

「법정비지원」은 1990년대 초반부터 체제이행국의 제도구축과 개발도상국의 거버넌스 강화의 문맥에서, 주요한 도너의 중점 지원영역이 되었으며, 예를 들면, 세계은행의 포괄적인 개발 프레임워크(Comprehensive

Development Framework: CDF) 구상(1998년 공표)이 입법·사법개혁을 구조개혁과제의 네 가지 핵심사항의 하나로 들어 주목받았다.¹⁵⁾

일본의 법정비지원은, 법무성의 법무종합연구소 내에, 법정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2001년 4월에 국제협력부가 설치되었다. 국제협력부가 관여하는 법정비지원활동의 대부분은 ODA의 일환으로서,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JICA)」의 기술협력 시스템에서 실시되는 지원 프로젝트에 협력하는 형태이다. 그 대상국은, 베트남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¹⁶⁾

1. 법정비지원의 정의

「법정비지원」이란, 사회의 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하여, 법의 지배를 침투시켜, 좋은 통치(good governance)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개발도상국이 법제도 및 사법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실시하는 여러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다.¹⁷⁾

이렇듯, 「법정비지원」의 개념은 다의적이다. 그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 떠오르기 쉽지만, 법률이 제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법률의 적용을 담보하는 사법제도의 정비가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법령 및 사법제도를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는 법조실무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제협력부에서는 기본법의 정비, 사법제도의 정비, 법조양성 등의 인재육성의 세 가지를 포함한 내용을 법정비지원 활동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법정비지원」을 법령안 작성에 관한 지원 외, 법

15) 金子由芳 『法整備支援における政策判断に資する立案・評価手法の検討』 国際協力総合研究所、2006年8月、1頁.

16) 稲葉一生 『法整備支援事業の今』 『Jurist』 有斐閣、2008年6月15日(No.1358)、2頁.

17) 鳥居香代 『JICAの法整備支援』 JCIA公共政策部.

령의 운용을 위한 제도·체제 정비 및 이러한 것에 종사하는 법률전문가의 인재육성에 관한 지원을 넓게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¹⁸⁾

2. 정부의 정책에서의 법정비지원의 위치¹⁹⁾

법정비지원 활동은, 정부의 정책 중에서는 ODA 정책의 한 가지로 규정된다. 즉, ODA 대강(2003년 8월 각의결정)에서 법정비지원의 중요성이 명시되어, ODA 중기정책(2005년 2월 각의결정)에서도 법정비지원을 추진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 사법제도개혁심의회 최종의견에 따른 정부의 사법제도개혁추진계획(2004년 3월 각의결정)에서도, 국제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법정비지원의 추진」이라는 항목을 내세워 개발도상국에 대한 법정비지원을 계속하여 추진하는 것이 결정되어 있다.

또, 자유민주당 정무조사회·사법제도조사회의 제안인 「세계에 자랑스러운 일본법제도정비지원의 전략 비전(世界に誇る、わが国法制度整備支援の戦略ビジョン)(2007년 6월)」이 내각에 제출되는 등의 움직임도 있어, 내각의 「해외경제협력회의」는, 제13차 회의(2008년 1월 30일 개최)에서 법정비지원이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중요한 해외경제협력의 한 가지로, 향후 전략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등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법정비지원은 정부의 정책상도 높은 우선순위가 부여되어 있는 상황이다.

18) 稲葉一生「法整備支援事業の今」『Jurist』 有斐閣、2008年6月15日(No.1358)、2頁.

19) 稲葉一生「法整備支援事業の今」『Jurist』 有斐閣、2008年6月15日(No.1358)、2-3頁.

2 JICA가

20)

일본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법정비지원은, 개인, 일본변호사연합회 등의 직능단체나 NGO, 대학교, 정부기관, 국제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양국간 프로젝트로서 실시되는 것의 대부분은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JICA)가 국제약속에 근거로 하여 실시하는 기술협력, 즉 공적개발원조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법정비지원은 1990년대 후반에 지적 지원의 한 분야로서, 체제 이행국에 대한 시장경제 이행지원으로 시작되어 점차 법의 지배의 확립이라는 목표가 의식됨과 동시에, 지원내용·대상지역이 다양화하고 있다. 또, 법정비지원의 지원방법에는 공동형의 접근이나, 공적기관에 의한 조직적 지원 등 일본의 기술협력의 특징이라고 여겨지는 점들이 많이 나타나 있다.

1. JICA의 법정비지원의 시작과 확대

(1) 법정비지원의 시작

1990년대에 들어서자, 경제의 급속한 글로벌화에 대한 대응, 또 민주화와 시장경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제·사회체도의 정비를 실시하는 등의 새로운 개발과제가 발생했다. 또, 원조의 비효율이나 실패의 원인으로서는 피원조 국가의 나쁜 거버넌스²¹⁾가 지적되고, 개

20) 香川孝三・金子由芳, 『法整備支援論 : 制度構築の国際協力入門』, ミネルヴァ書房, 2007年, 37-46頁.

21)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념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정치체제의 양태」, 「국가에서의 경제적·사회적 자원의 관리에서 행사되는 권력의 양상」, 「정책을 계획·책정·시행하기 위한 정부의 운영능력」의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JICA의 조사 및 연구에서는 「어떤 국가의 안정·발전

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좋은 통치의 추진이 불가결하다는 인식이 국제적으로 원조국가 사이에서 확산되었다. 이러한 국제정세를 반영하여, 1992년에 일본정부는 「공적개발원조대강」에서 인재양성이나 제도정비 등의 지적지원을 통하여 좋은 통치 촉진하고, 건전한 경제개발을 실현한다는 기본이념을 내세웠다.

그러한 가운데, 일본정부는 1994년에 도이모이 정책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전환하여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베트남 정부와의 정책협의에서, 지적지원, 특히 시장경제화 지원을 베트남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의 중점 5분야²²⁾의 한 가지로 삼기로 합의했다.

JICA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1994년에는 베트남 사법성으로부터의 요청을 받아, 민법기초에 대한 조언 등을 실시하는 단기 전문가를 베트남에 파견하고, 사법성 관계자의 일본연수를 개시했다. JICA에서는 이때부터 법제도정비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되었으며, 후에 법제도정비에 관한 지원을 가리켜 「법정비지원」이라는 호칭이 정착되었다.²³⁾

1996년 12월에는 「중요정책 중추지원」 계획안의 일환으로서, 베트남의 법제도를 개선·강화하고,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베트남

의 실현을 위하여, 그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상태에서 동원하고, 배분 및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기구제도, 정부·시민사회·민간부문 간의 협동관계나 의사결정의 양상 등, 제도전체의 구축이나 운영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JICA社会開発部, 2004, 3頁).

22) 일본정부는 1994년 10월에 경제협력종합조사단을 파견하여, 베트남 정부와의 사이에서 ① 인재양성·제도만들기(특히 시장경제화지원), ② 전력·운수 등의 인프라 정비, ③ 농업·농촌개발, ④ 교육, 보건의료, ⑤ 환경 등의 5가지 항목을 일본의 베트남에 대한 원조중점분야로서 합의했다. 2000년에 책정되었던 국가별 원조계획에서는, 이러한 5가지 분야를 중점분야로 베트남 원조에 힘쓸 것이 확인되었다. 그 후, 2004년 4월 28일의 국가별 원조계획개정으로, 현재의 중점분야는 ① 성장촉진, ② 생활·사회면에서의 개선, ③ 제도정비의 3가지 분야로 되었다.

외무성 HP: <http://www.mofa.go.jp/mofaj/gaiko/oda/index/kunibetsu/enjyo.html> 참조.

23) 1994년 이전에서의 JICA의 법제도에 관한 지원은 한정되어 있지만, 연수원 수용사업으로서, UN 아시아극동범죄방지연수소와 연계하여 아시아 국가의 형사재판관, 검찰관, 경찰관 등에 대한 형사사법연수를 실시해왔던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중요정책 중추지원: 법정비」 프로젝트를 개시했다(1996~1999년. 1999년부터 단계2, 2003년부터 단계3으로 계속되었다).

1996년에 시작되었던 프로젝트(단계1)에서는 베트남 사법성에 대하여 전문가의 파견, 연수원 수용으로 시장경제화에 관련되는 개별 입법 작업에 대하여 폭넓게 조언 등을 실시했다.

1999년 12월에 시작되었던 단계2에서는, 베트남 사법성에 더불어 새롭게 최고인민재판소 및 최고인민검찰원을 대상으로 하여, 베트남 측의 다양한 니즈에 응하면서 시장경제에 적합한 민상사 분야의 법체계 정비에 중점을 두어 지원이 실시되었다. 단계1에 계속하여 개별 입법 작업에 대한 조언에 더불어, 베트남 민법의 개정 초안을 베트남과 일본 작업위원회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민법개정 공동연구’를 중심에 둔 민상사법 분야의 체계적인 입법지원, 법조양성학교로의 지원이나 일본으로의 유학생 수용 등으로 이루어진 인재육성, 의 세 가지를 협력의 기둥으로 지원이 실시되었다.

2003년 7월부터 시작되었던 단계3에서는 단계2의 세 가지의 기둥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목표를 명확히 하여 두 가지의 서브 프로젝트 (A: 민법을 중심으로 한 민상사 분야 입법지원, B: 법조강화 지원)를 형성하여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2007년 3월 종료).

(2) 법정비지원의 확대

시장경제에 대한 이행경제의 일환으로서 베트남에서 시작되었던 법정비지원은, 동아시아 국가(중국, 몽골), 인도차이나 국가(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에서, 시장경제에 적합한 법제도의 정비를 주요한 협력내용으로 확대했다. 다만, 법정비지원의 목적은 반드시 시장경제화의 촉진만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국가에서의 법정비지원에서는 시장경제화의 촉진과 함께, 기본법 정비나 인재양성을 통한 법의 지배의 확립도 목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예를 들면, 캄보디아에서는 1991년의 내전 종결 이후, 「법의 지배」 확립을 위한 법제도 및 사법개혁을 국가의 가장 중요과제로 규정되어 왔다. 그러나 민법, 민사소송법 등의 기본법을 비롯한 법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또 정부직원 및 사법관계자의 인재가 부족하여 기술 수준도 낮고, 자력으로 법령·제도의 정비를 실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JICA는 1999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 민법·민사소송법 등의 기초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법제도 정비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그 후, 2003년 4월부터, 민법·민사소송법의 입법화 촉진을 지원하는 단계2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또, 캄보디아에서는 법조인재의 절대적인 인재부족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2004년부터 왕립재판관·검찰관 양성학교에 대하여 전문가로 파견하여, 2005년 11월부터 「재판관·검찰관 양성학교 민사교육개선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또, 캄보디아 왕립 변호사회·변호사 양성학교에 대해서는, 일본변호사연합회의 협력을 얻어 변호사 양성학교의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²⁴⁾

또, 라오스는 캄보디아와 마찬가지로, 법의 지배에 근거로 하는 시장경제화를 위하여 법제도정비를 추진하고 있지만, 1980년대 중반까지 법학교육이 정지되었던 적도 있어, 법조인재의 부족이나 관계 기관의 능력부족이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캄보디아와 달리, 기본적인 법령 자체는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오스에 대한 법정비지원은 기초지원이 아니라, 민법·기업법 교과서나 판결기안 매뉴얼 등의 실무 매뉴얼의 작성지원 및 이러한 것들을 통한 인재육성지원이라는 형태를 취했다(「라오스 법제도정비 프로젝트」 2003년 5월~2007년 5월).

또, 시장경제 이행국 이외의 국가,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주민이 접근하기 쉽고, 신뢰할 수 있는 화해조정제도의 정비를 지원하는

24) JICA 소규모개발 파트너 사업 「변호사회 사법지원 프로젝트」(2001-2002년), JICA 개발 파트너 사업 「변호사회 사법지원 프로젝트」(2002-2005년).

것을 통하여 분쟁이 조기에 공정하게 해결되는 제도만들기, 라는 법의 지배의 확립에 불가결한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지원도 시작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 민상사법 분야 이외에서는 필리핀에서의 보호사(保護司) 제도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일본연수(2006년 6월~7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판사를 대상으로, 형사사법을 중심으로 한 사법 분야의 기초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한, 요르단에서의 제3국 연수(2003~2006년도), 아프가니스탄의 헌법기초를 담당하는 헌법위원회에 대하여, 일본헌법의 이념이나 견해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본의 헌법학자의 파견(2003년 5월) 등이 실시되고 있다.

이렇게, 당초 시장경제화의 촉진을 이루고, 민상사법을 주요한 대상 분야로서 베트남에서 개시되었던 법정비지원은, 법의 지배의 확립이라는 목표도 의식되게 됨과 동시에, 지원내용 및 대상지역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2. 일본의 기술협력의 특징과 법정비지원

법정비지원은 공적개발원조의 한 형태인 기술협력²⁵⁾으로서 실시되고 있지만, 법정비지원에는 일본형의 기술협력의 장점으로 여겨지는 특징이 많이 드러나 있다.

일본의 기술협력의 특징으로서, 다른 원조기관이 실시하는 기술협력과 비교하여 자주 지적되는 점으로서, ① 피원조 국가의 자주성

25) 기술협력이란,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 발전의 담당자가 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일본의 기술이나 기능, 지식을 개발도상국에 이전하거나, 혹은 그 국가의 실정에 알맞은 적절한 기술 등의 개발이나 개량을 지원함과 동시에, 기술수준의 향상, 제도나 조직의 확립이나 정비 등에 기여하는 원조의 형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경제사회인프라의 정비 등을 목적으로 한 무상 자금협력, 유상 자금협력(엔화 차관)과 대비된다. 기술협력의 협력수단에는, 전문가의 파견, 연수원의 수용, 기재의 공여 및 개발조사가 있지만, 현재에는 개발과제의 해결을 위해서 원조 리소스의 투입을 최적화하고,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실시하기 위해서, 협력수단을 편성하여 하나의 프로젝트로서 일정기간 내에 실시하는 것이 주류이다.

(ownership)을 존중하고, 공동으로 합의를 형성하면서 프로젝트의 계획, 실시가 행해지는 것, ② 피원조 국가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기반 위에, 카운터파트 기관이 주체적으로 지식을 획득하고, 제도를 변혁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 ③ 피원조 국가의 카운터파트 기관에 대응하는 일본 국내의 정부기관이 전문가의 파견, 연수원의 수용 등에서 지원의 주체가 됨으로써, 비슷한 기능을 가진 일본의 조직으로부터 타당한 노하우나 기술을 체계적, 기능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1) 자주성(ownership)의 존중

일본 기술협력의 특징의 한 가지로서 들 수 있는 것은, 일본도 과거 피원조 국가였던 경험에서, 피원조 국가의 입장에 서서 피원조 국가의 자주성을 존중한 프로젝트의 계획, 실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다. 또, 이것은 일본사회의 의사결정의 특징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프로젝트의 계획, 실시에 있어서는 상대국 관계기관과의 조정을 중시하고, 관계자와의 합의형성을 도모하면서 의사결정을 실시한다. 이로써, 상대국 관계자가 결정된 프로젝트가 자신들의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수행에 있어 강한 커미트먼트(commitment)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법정비지원에서는, 일반적인 기술협력 이상으로, 자조노력 지원으로서 원조국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2003년에 개정되었던 「ODA 대강」에서는 법제도의 정비를 포함한 지적 지원은, 좋은 통치에 근거로 하는 개발도상국의 자조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이며, 개발도상국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그 개발전략을 중시하기 위하여, 좋은 통치 촉진을 위한 지원이 제도의 강요가 되지 않도록 개발도상국의 주도권(initiative)을 존중한다는 점의 중요성에 유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베트남에서의 법정비지원에서는 단계1 및 단계2에서, 베트남 측 카운터파트 기관의 의사를 존중하고, 베트남 측과 년도마다 협의를 실시하여, 다음 년도의 활동내용(세미나, 연수의 테마 등)을 결정한다는 방법이 취해졌다. 이러한 방법은, 3년의 기간 전체에서 활동을 계획·관리하는데 있어서 용이한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법정비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베트남 측의 신뢰를 획득하고, 지원의 성과가 베트남 국내의 법률·제도의 정비에서 중시·활용되는 것으로 이어졌다.

(2) 피원조 국가에 의한 주체적인 지식의 획득

또, 일본에는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유럽과 미국의 지식을 수입하여 흡수하고 내부화해온 풍부한 경험이 있다. 이 때문에, 자국의 상황에 따라 외래의 지식을 자국의 개발에 살린다는 견해는 기술협력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넓게 공유되고 있으며, 단순히 지식의 이식이나 모델의 강요가 아닌, 피원조 국가에 이미 있는 지식이나 제도의 기반에 유의한 협력이 실시되고 있다.

법정비지원에서는 예를 들면, 베트남의 민법개정공동연구나 캄보디아의 민법·민사소송법 초안공동기초에서, 단순히 일본의 혹은 유럽이나 미국의 민사법을 모델로 하여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 자신들의 유럽과 미국법 수용의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의 사회의 실정에 입각한 초안이 작성되도록, 일본의 전문가와 베트남·캄보디아 측의 법안기초 관계자와의 공동작업 체제가 취해지고 있다.

(3) 공적기관에 의한 조직간 협력

마지막으로, 일본의 기술협력은 원조 리소스의 조달에 관하여 중앙관청, 국립연구기관 등, 공적기관의 협력에 크게 의존해왔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의 공적기관은, 비슷한 기능을 가진 상대국의 공적기관을 조직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상대국의 공적기관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필

요한 폭넓은 노하우를 하나의 패키지로 하여 종합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큰 장점이다.

법정비지원에서는 예를 들면, 베트남의 법정비지원 단계2 및 단계3에서, 일본의 법무성 및 최고재판소로부터 검찰관, 판사가 장기 전문가로서 현지에 파견되어, 각각 조직적인 백업을 얻어 활동했던 것은, 카운터파트 기관인 베트남 사법성,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원의 입장에서, 해당 기관에 필요한 지식·노하우를 장기 전문가의 활동에서 직접·간접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 매우 유효했다고 생각된다.

또, 캄보디아에서는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캄보디아변호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캄보디아변호사회의 조직으로서의 능력향상이 도모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3. 향후의 법정비지원의 전망

법정비지원은 현재, 지원내용이 다양화되고 있지만, 수용내용을 크게 나누면, 법규정의 정비(룰의 정비), 운용·집행기관의 정비(조직이나 집행제도의 정비), 법조인재의 육성(인재의 정비), legal empowerment(시민의 법률·사법제도에 대한 접근 향상)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베트남 및 캄보디아에 대한 법정비지원에서는 당초, 법률의 정비(기본법의 기초지원)에 중점을 둔 협력이 이루어져, 기본법의 정비가 진행됨에 따라 법조인재양성에 활동의 대상을 확대해왔다. 베트남에서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차기 프로젝트에서, 법률의 적정한 운용과 집행을 위한 사법관계 기관의 정비에 중점이 옮겨질 전망이다.

한편, 라오스에 대해서는 지원개시의 시점에서 이미 일정 정도의 법률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여, 당초부터 판결기안 매뉴얼 작성 등의 운용면·집행과정의 개선이나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했던 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legal empowerment에 대해서는, 몽골에서의 법

률부조센터에 대한 지원이나, 캄보디아 변호사 양성학교에서 리걸 클리닉에 대한 지원 등의 사례가 있지만, 아직 프로젝트의 중요한 목적으로 규정되어 실시된 경우는 없다.

이 네 가지 분야의 지원에 관해서는 각각이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일률적으로 어느 분야에 대한 협력이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대상국의 법체계 정비의 진전도, 법조인재의 양질의 정도, 일본의 법제도와와의 근사성 및 친화성 등에 따라,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고 또 어떻게 네 가지의 분야를 편성하여 법정비지원을 실시하는지가 유효한가, 라는 관점에서 향후의 법정비지원의 계획 및 입안을 검토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 법규정의 정비에 비하면, 다른 세 가지 분야의 협력에서의 협력방법의 확립은 뒤떨어지고 있다. JICA는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에서의 인재육성이나 조직의 조직향상에 협력해 온 지견의 축적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살린 법기구의 정비, 법 주체의 육성 등에서의 유효한 협력방법의 확립이 기대된다.

3

1. 법무종합연구소의 국제협력²⁶⁾

법무종합연구소는 ODA 가운데,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JICA)가 소관하고 있는 기술협력의 일환으로서, 1996년부터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민상사법 분야를 중심으로 법정비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법무종합연구소는 재단법인 국제민상사법센터(재단)과의 공동사업으로, 한국과의 사이에서 1999년부터 민사법무행정에 관한 실무상의 여러 문제에 대

26) 香川孝三・金子由芳, 『法整備支援論 : 制度構築の国際協力入門』, ミネルヴァ書房, 2007年, 74頁。

하여 양국의 실무가에 의한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중국과는 1996년부터 재단이 중심이 되고 법무종합연구소가 협력하여, 민상사법에 관한 최신의 각종 법률문제에 관한 의견·정보교환을 실시하는 일중(日中)민사상사법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법무종합연구소의 국제협력은, 형사사법에 관한 국제연수협력에서 시작되었다. 1961년에 UN과 일본정부 사이에서 체결되었던 협정(1961년 조약 제4호)에 근거로 하여, UN 아시아 극동범죄방지연구소가 일본에 설치되어, 법무종합연구소 국제연합연수협력부가 운영하게 되었다. 법무종합연구소는 이러한 경험과 실적을 살려, 1996년부터 민상사법 분야에서의 법정비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당초는 법무종합연구소 총무기획부가 담당하고 있었지만, 사업량의 증대됨에 따라 2001년에 국제협력부가 설치되어 이러한 업무에 전임하고 있다.

2. 법무종합연구소에 의한 법정비지원의 과제

(1) 법정비지원의 이념과 목적

법정비지원을 무엇을 위해 실시하는가, 그 이념과 목적은 관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따라 다양하다. 법무종합연구소는 법무성의「소장사무에 관계되는 국제협력」(법무성설치법 제4조 제37호)으로서의 입장에서, 법정비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성의 임무는 법질서의 유지와 국민의 권리옹호(동법 제3호)로, 법무성이 법정비지원을 실시하는 목적은 대상국이 법의 지배를 기조로 하는 민주적인 주치국가를 확립하는 것에 공헌하는 바에 있다.²⁷⁾

법무종합연구소 내의 국제협력부에서는 지금까지 대상국에서 권한을 가진 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지배되는 「사람의 지배」에서 탈피하여, 어떠한 권력도 법에 따라야 한다는 「법의 지배」가 확립되는 것을 목

27) 香川孝三・金子由芳, 『法整備支援論 : 制度構築の国際協力入門』, ミネルヴァ書房, 2007年, 79頁.

적으로 하여 법정비지원에 힘써왔다. 법의 지배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법적인 예측가능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법률에 근거로 하여 행정이 운영되고, 분쟁이 되었던 경우는 법률에 따라 재판이 실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가 바로 「좋은 통치(good governance)」이다.

법의 지배가 확립되고,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법제도가 완비됨으로써, 그 국가의 정치·사회·경제가 안정됨과 동시에,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외국과의 원활한 거래나 외국으로부터의 투자, 기업진출 등을 촉진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활발하게 만들고, 지역의 안정·발전을 가져오고 더 나아가서는 일본의 안전과 번영으로도 이어지는 것이다.

특히, 민법이나 민사소송법 등의 기본법의 정비, 인재육성을 포함한 사법제도의 정비는 사회발전의 기초 인프라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다른 ODA 관계부처 등이 노력하고 있는 각종 지원의 기초·기반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²⁸⁾

(2) 법정비지원의 방법

구체적인 법정비지원 활동은, 각 지원 프로젝트마다 JICA의 기술협력의 기법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및 라오스에 대한 활동은 JICA의 프로젝트방식 기술협력의 한 형태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한 것은 ① 국내지원조직의 설치, ② 일본 연수의 실시, ③ 단기 전문가 파견(현지 세미나 등의 실시), ④ 장기 전문가 파견이다.

일본은, 메이지시대에 서유럽의 법체계를 배웠고, 제2차 대전 후에는 미국법을 받아들이면서, 독자적인 법체계를 구축하여 발전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지원 방법의 특징 중 한 가지는, ①의 국내 지원 조직에 의한 지원체제를 들 수 있다. 다른 선진국가의 지원은 대

28) 稲葉一生「法整備支援事業の今」『Jurist』 有斐閣、2008年6月15日(No.1358)、3頁.

형 로펌이 수탁하여, 소인수의 법률가에 의해 실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명칭은 연구회, 작업부회, 자문그룹(advisory group) 등으로 다양하지만, 해당 분야가 전문분야의 학자들, 법조 3자나 법무성의 직원 등을 멤버로 하는 지원조직이 설치되어, 이른바 All Japan 체제로 지원에 임하고 있는 것이 큰 특색이다. 지금까지 지원을 실시할 때, 지원대상국의 주체성·자주성을 존중하고, 중장기적 관점에 서서 자국의 법제도를 강요하지 않고, 상대국의 담당자와 연수 등의 장을 통하여 신뢰관계를 구축하면서 담당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상대국의 니즈를 충분히 바탕으로 한 지원을 실시해왔다. 특히, 민법이나 민사소송법 등의 기본법은, 그 나라의 생활이나 문화 및 습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일본의 법제를 강요해도 상대국의 실정에 맞지 않으면, 결국 뿌리를 내릴 수는 없다. 시간은 걸리지만, 상대국 담당자와의 공동작업 방식을 취함으로써, 상대국 담당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립발전으로 이어지기도 된다.

②의 일본 연수는, 지원대상국의 담당자를 일본으로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국제협력부는 연수의 기획·실시를 담당하고 있으며, 충실한 내용이 되도록 노력한다.

③의 단기 전문가 파견은 1년 미만의 기간,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여 세미나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국제협력부도 교관을 강사로서 파견하거나, 세미나의 기획에 협력하고 있다.

④의 장기 전문가 파견은, 1년 이상의 기간,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여 상대국 기간 등에 상주시켜 그 지원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국제협력부의 교관을 장기 전문가로서 파견하고 있다.²⁹⁾ 사법성, 검찰청, 재판소 등의 협력 상대방 기관과 항상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매뉴얼이나 교재의 완성 등, 프로젝트에서 예정되어 있는 최종성과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수시로 상대국

29) 稲葉一生 「法整備支援事業の今」 『Jurist』 有斐閣, 2008年6月15日(No.1358)、3-4頁.

관계자와 워크숍을 개최하여 작업의 촉진을 도모하는 등, 프로젝트 운용의 주요한 부분으로서의 역할을 완수하고 있다.³⁰⁾

(3) 법무종합연구소에 의한 법정비지원의 특질-법률실무가에 의한 법정비지원³¹⁾

법무종합연구소 국제협력부의 교관은, 검사, 판사 및 법무성 민사국 직원 중에서 인사이동의 일환으로 배속되어, 2~4년 정도 근무한 뒤 본래의 직장으로 돌아온다. 교관은 배속 시점에서는 지원대상국의 언어에는 능통하지 못하고, 대상국의 법제도나 법률에 관한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통례이지만, 배속 후는 매일의 업무를 통하여, 자신들의 기지나 노력으로 대상국의 법제도와 업무에 필요한 외국어를 습득하고 있다. 지금까지 다행히도 소질과 의욕에 넘치는 교관이 배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로에서 출발한다는 어려움을 극복하여 단기간에 각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어 그 노력은 칭찬할 만하다. 그러나 인사이동의 제도, 경험자의 이임에 따른 국제협력부의 전략저하와, 후임자의 개인적 노력에 의한 극복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부서 전체에 있어서 큰 손실이다.

한편, 국제협력부에 의한 법제도정비의 장점은, 사법연수생으로서 법조 양성교육을 받은 경험과, 법조 등으로서의 직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실무가에 의한 지원으로, 법무종합연구소가 법정비지원에 관여하는 것의 의의는 이러한 점에 있다. 그래서 법무종합연구소에 의한 국제협력은 법조양성기관에서의 법률실무교육의 지원이나, 재판관에 의한 판결기안 실무의 개선 등,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분야의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30) 香川孝三・金子由芳, 『法整備支援論 : 制度構築の国際協力入門』, ミネルヴァ書房, 2007年, 75頁.

31) 香川孝三・金子由芳, 『法整備支援論 : 制度構築の国際協力入門』, ミネルヴァ書房, 2007年, 79-80頁.

(4) 법정비지원과 국익³²⁾

ODA의 제도 중에서 기술협력은 무상 자금협력과 더불어 무상원조인 「양국 간 증여」의 하나로 규정되고 있다. 무상원조인 이상, 원조 상대국이나 관계자로부터 대가 등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이 실시하고 있는 원조활동은, 현장에서는 어디까지나 상대국의 입장에 서서 상대국과 함께 생각하고 공헌하는 것을 본래의 취지로 하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지원」이어야 하며, 일본의 법정비지원이 대상국에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원조의 자세에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일본이 특정국가에 대하여 무상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그것은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는 이상, 어떠한 의미로 일본 및 국민의 이익, 즉 국익으로 이어져야 한다. 문제는, 그러한 국익을 어떻게 보는가이다. 법정비支원은 사회제도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호흡이 긴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국익도 긴 시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대상국에서 법의 지배에 입각한 좋은 통치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짐으로써, 해당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도모됨과 동시에, 대상국과 일본 간의 우호관계가 강화되는 것을 통하여, 일본의 안전보장과 국제적인 지위의 향상이 실현되는 것이, 일본이 국제협력을 실시하는 이유이며, 일본의 국익이라고 생각된다. 지원대상국의 선정 시에는, 이러한 관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2) 香川孝三・金子由芳, 『法整備支援論 : 制度構築の国際協力入門』, ミネルヴァ書房, 2007年, 80頁.

(5) 법정비지원의 실시체제 및 책임체제³³⁾

법정비지원은 주로 JICA의 기술협력의 제도를 이용하여 실시되어지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에 대신하는 현실적인 수단은 찾아내기 어렵고, 앞으로도 이 방법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과연 법정비지원의 방법으로서 정말로 이상적이고 적합한 수단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첫째로, 프로젝트방식 기술협력에서의 JICA와 법무종합연구소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검토한다.

ODA는 외무성 국제협력국이 소관하고, ODA 가운데의 기술협력에 관한 실시기관으로서 JICA가 설치되어 있다. ODA는 넓은 의미에서의 외교의 일환이지만, 외무성의 ODA에 대한 관계 방식은, 이른바 지역국 등이 소관하는 통상의 외교활동과는 다르고, JICA에 대한 감독행정이라고 해도 좋다. 외무성은 기술협력의 기본방침을 책정하는 외, 개개의 기술협력안건의 선택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안건의 형성에서 실시에 이르는 실질적인 작업은 JICA의 주도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개개의 안건에서의 구체적인 지원활동에는 외무성은 관여하지 않고, JICA의 책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³⁴⁾

법정비지원은 프로젝트방식 기술협력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 제도는 JICA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기관은 JICA로부터 의뢰를 받아 활동을 한다. 예를 들면, 베트남, 캄보디아의 법령기초

33) 香川孝三・金子由芳, 『法整備支援論 : 制度構築の国際協力入門』, ミネルヴァ書房, 2007年, 81-84頁.

34) 각 기술협력 프로젝트마다, 현지 차원에서 원활한 협력의 실시를 추진하기 위한 협의의 장으로서, 일본과 지원대상국의 양측 관계기관에 의한 조인트 코디네이션 위원회(Joint Coordination Committee)가 설치되었던 적이 있어, 거기에는 JICA 현지 사무소 외, 일본의 재외공관도 참가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이것은 JICA의 기술 협력에 대한 재외공관에 의한 측면지원임과 동시에, 외부성의 JICA에 대한 감독행정의 일환으로, 기술협력 그 자체는 JICA가 그 권한과 책임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지원을 위한 법률학자 등에 의한 공동연구회 및 부회는 JICA가 조직하고, 위원도 JICA가 위촉한다. 장기 전문가나 현지 세미나 강사 등을 위한 단기 전문가도 JICA가 위촉하여 파견한다. 일본연수는 JICA가 재단에 실시를 위탁하여, 국제협력부가 재단에 전면적으로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법무종합연구소 쪽에서 보면, 법무종합연구소는 일본연수에 대해서는 조직으로서 수탁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장기 및 단기 전문가 파견과, 공동연구회 및 부회에 대한 위원 파견은, 형식적으로는 개개의 교관을 인재파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어느 경우에서도 법무종합연구소는 JICA에서 의뢰를 받아 이에 협력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계획안 하에서, 프로젝트 운영의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완수하는 것은 JICA를 제외하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JICA는 개발원조기관으로서 토목건설, 농업, 보건위생, 교육, 산업, 경제, 금융, 세계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협력을 착수하고 있으며, 법정비지원은 지원 분야 가운데 한 가지에 불과하다. 법정비지원은 전문기술성이 매우 높지만, JICA는 사법제도나 법률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경험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JICA가 법정비지원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사령탑 기능을 완수하는 것은 짐이 무거운 것처럼 생각된다. 즉, JICA는 최근에 법정비지원을 포함한 법률·사법문제에 관한 어드바이저로서, 변호사를 상근의 국제협력 전문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둘째로, 법정비지원과 국가의 운영책임의 문제에 대하여 검토한다.

법정기초지원에 관련하여, 법정비지원은 본래 국가의 책임에서 실시되어야 하는 국가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로서의 운영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있다. 즉, ODA로서의 기술협력은 국가의 사업으로, 국가에 운영의 책임이 있지만, 국가로부터 JICA에 업무가 위임되어, 거기서 또 법률학자에 의한 국내지원위원회나 법정기초를 위한 공동연구회 또는 부회에 업무가 넘겨져, 그에 따라 국가의 책임

이 점차 희석되고 있다. 그 결과, 본래는 국가에 대한 자문기관에 불과한 학자에 의한 국내지원위원회, 공동연구회나 부회가 지원활동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게 되지 않는가, 라는 비판이다.

법정비지원은, 한 국가의 통치의 근간에 관계되는 기본법제나 사법제도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하여, 주권국가에 대하여 입법의 권고, 기타 정책제언을 실시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책임에서 국가에서 국가에 대하여 실시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주장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ODA의 기술협력 제도가 그러한 역할에 적합한 메커니즘인지의 여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프로젝트방식 기술협력으로 실시되고 있는 법정비지원은 제도의 시스템 자체로서, 정부의 외곽단체, 즉 외무성 소관의 독립행정법인인 JICA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정부에 의한 활동이라는 말하기 어렵다.

또, 상대국에 대한 지원내용이나 제언내용을 결정할 때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보아도, JICA 베이스의 기술협력으로 실시되는 법정비지원에서는, 예를 들면 국제회의의 정부대표 단원에게 부여되는 대처방침이나 훈령³⁵⁾과 같은 형태로 정부견해를 정리하여 제시하는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지원이나 제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 견해로서 이해되었던 것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³⁶⁾ 그러한 의미에서 말하

35) 국제회의에 출석하는 정부대표단원에 대해서는, 외무성(외무대신)으로부터 대처방침이나 훈령이 제시된다. 예를 들면, 결의안이나 조약안의 심의를 실시하는 경우, 각 조항의 문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수정제안 등, 어느 대응의 취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대표단으로부터 외무성에 대하여 청훈(문안 제안의 취지와 배경, 각국의 대응 등을 설명하고, 일본으로서의 대응안을 제시하여 훈령을 청구하는 것)을 행하여, 훈령을 받은 후, 이에 따라 대처해야한다. 외무성은 대처방침이나 청훈안의 내용이 다른 관청의 소관사항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관계관청과의 사이에서 합의를 실시하여, 정부전체로서의 합의를 형성한 뒤 대처방침이나 훈령을 내린다. 그러나 JICA 베이스의 법정비지원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정부 견해를 형성하기 위한 메카니즘은 존재하지 않는다.

36) 일례를 들면, 베트남 민사소송법 기초지원 과정에서, 일본 측으로부터 베트남측(법안기초권한을 가지는 최고인민재판소)에 대하여, 베트남 민사소송법 공동연구회

면, JICA 베이스의 기술협력은, 제도의 시스템으로서 ODA의 일환이기 때문에, 확실히 국가(정부)로서의 노력이지만, 구체적인 활동 자체는 정부 차원의 활동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전문가 차원의 활동이라고 생각해야하는 것처럼 여겨진다.³⁷⁾

이렇게 살펴보면, 법정비지원을 JICA의 기술협력의 제도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이상, 엄밀한 의미에서 국가(정부)로서의 책임을 문제시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³⁸⁾

셋째로, 양국의 동업기관 사이의 신뢰관계에 대하여 검토한다.

법무종합연구소가 실시하는 법정비지원에서는, 대상국의 카운터파트 기관은 사법성, 검찰청, 법원, 법조양성기관 등의 사법관계 기관이다. 일본이 평소 지원업무를 통하여 카운터파트 기관과 접촉하는 가운데 실감하는 것은, 이러한 기관은 각각의 소관사항에 관하여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중앙관청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에서, 일본에서 비슷한 입장에 있는 대응기관, 즉 일본의 법무성, 검찰청 또는 법원 등과 사이에서의 상호교류와, 이러한 기관에 의한 지원을 바라고 있다는 점이다. 즉, 카운터파트 기관이 일본의 법무종합연구소에 의한 지원활동에 협력하는 것도, 일본 정부의 ODA에 의한 기술협력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동업기관 상호간의 신뢰감과 연대감, 즉 법무성에 속

의 전문가위원회에 의한 토의와 합의에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 절차에서의 당사자주의의 도입, 감독심제도의 폐지, 검찰관에 의한 민사소송의 제기권한의 폐지 등의 의견을 말했다. 이러한 의견의 내용자체는 합리성 및 타당성이 높다고 생각되지만, 그 의견은 일본의 정부견해로서 공인되었던 것이라고는 하기 어렵다.

37) 개개 프로젝트에서, 대상국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의 지원을 실시하고, 어떠한 의견·제언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법령의 기초지원 등을 담당하는 공동연구회 또는 부회의 의원, 현지에서 상대국 관계자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장기 전문가, 법무종합연구소 국제협력부 교관 등, 지원활동에 관계되는 각 전문가(학식경험자)의 견해와, 이러한 전문가 상호간의 협의에 위임되어 있다.

38) 만약 법정비지원을, 국가(정부)가 내용에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국가로부터 국가에 대한 정책제언으로 행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일미(日美)구조협약과 같이, 일본과 상대국과의 사이에서의 외교적 대화로서 실시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법무종합연구소가 조직으로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지원을 신뢰하여 받아들이고 있다는 면이 어느 정도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법정비지원은, 현실적으로는 앞으로도 ODA의 기술협력의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 실시체제나 실시방법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서는, 이상과 같은 다면적인 요소를 고려한 뒤, 더욱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6) 도너 간 협조의 필요성

민상사법에 관한 법정비지원의 분야에서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가나 국제기관(donor)이, 각각 독자적인 입장에서 많은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정한 국가에 대한 복수의 도너에 의한 지원이 중복되거나 저축되는 경우도 있다. 대상국의 입장에서 일관성 있는 효율적인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도너 사이에서의 협의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형사사법의 분야에서는 세계 각국이 공통된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협조적인 노력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인식되어 실천되고 있다. 마약범죄의 심각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1988년에 UN 마약신조약이 채택되어 마약범죄의 수익에 대한 돈세탁(money laundering)의 범죄화나, 도망범죄인의 인도 및 국제수사공조 등의 강화 등이 의무화되었다. 그 후, 국제조직범죄나 오직부패의 분야에서도 UN조약의 채택을 통하여, 비슷한 국제적 대응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UN 범죄방지형사사법위원회나, 위의 각 조약의 체약국 회의 등이, UN 가입국간에서의 정책협회의 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법정비지원의 분야에서는 이러한 협조적인 대응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원조대상국

의 현지 베이스에서, 도너국이나 도너 기관이 때때로 회의를 개최하여 정보교환을 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실정이다. 향후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보다 본격적이고 항상적인 정보교환이나 정책협의의 장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이치를 탐색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다.

4

39)

1. 대상국 · 대상지역

법무성 법무종합연구소가 기존부터 노력해왔던 지원사업의 대상국은 모두 아시아지역이다.

ODA 대강에서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일본의 안전과 번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시아는 중점지역이다」라고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아시아는 ODA의 중점지역이다. 일본도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시아 여러 국가와는 역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관계가 깊으며 공통된 문화적 기반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계에 있는 아시아 여러 국가를 지원하는 것은, 이러한 여러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일본의 안전과 번영에 기여하게 된다고 생각된다.

2. 베트남

(1) 종래의 경위

일본의 법정비지원 가운데 베트남에 대한 것이 가장 역사가 깊고, 법무성이 협력을 실시했던 것은 1994년이다. 그 후, 1996년, JICA의 법정비지원 프로젝트로서 실시되고 나서부터 2007년 3월 동 프로젝트의 단락이 일단 마무리 될 때까지 동안, ① 민사기본법령의 기초 · 개

39) 稲葉一生 「法整備支援事業の今」 『Jurist』 有斐閣, 2008年6月15日(No.1358)、3頁, 4-8頁.

정, ② 국가사법학원에서의 법조양성, ③ 판결서의 표준화, ④ 베트남 국가대학 법학부 하노이교에서의 일본법 교육 등의 실시가 실시되어 왔다. 이러한 지원의 결과, 2004년에 민사소송법과 파산법이, 2005년에는 개정 민법이, 각각 베트남의 국회에서 가결 성립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 법조 3자에 의한 현지 지원 활동

베트남에 대한 일본의 법정비지원은 베트남의 사법성,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원 등, 사법제도의 핵심기관을 상대로 하고, 당초는 변호사의 장기 전문가의 파견뿐만이었지만, 2000년 이후, 현직의 재판관, 검찰관, 변호사라는 법조 3자가 JICA의 장기 전문가로서 파견되어 상주하고, 일상적, 기동적으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베트남 측 사법관계기관과 두터운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의 한 가지로 들 수 있다. 검찰관 출신의 장기 전문가에 대해서는 국제협력부 설치 후인 2003년부터는 국제협력부 교관을 파견하고 있다.

(3) 현재의 상황과 과제

이러한 경위로, 2007년 4월부터는, 종전 프로젝트의 계속이 아니라, 4년 계획의 신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각각 5대째가 되는 법조 3자의 장기 전문가가 파견되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서는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의 개정이나 행정소송법, 국가배상법, 민사판결집행법 등의 중요한 법률의 기초지원도 예정되어 있지만, 실무개선을 위한 지원에 보다 한층 더 중점이 놓여지게 되었다. 즉, 법의 운용체제 및 법조 등의 능력개선을 위한 지원으로서, 베트남 측이 지정하는 파일럿 지구(박닌성이 지정되었다)에서, 주로 사법기관(재판관, 검찰관, 변호사)을 대상으로 하여, 재판실무의 개선과 실무능력의 향상을 위한 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다른 지방에서도 사법기관

외 사법보조기관(호적, 부동산등기, 공증, 집행에 관계되는 직원)도 대상으로 하여, 그러한 능력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실시하는 것이 예정되어 폭넓은 지원이 계획되어 있다. 파일럿 지구에서는 장기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여 베트남 측 워킹그룹(Working Group)과 함께, 현행의 재판 절차·재판소에서의 재판활동의 모니터링이나 현행 실무의 검증과 문제점을 찾아내어 문제점의 원인분석과 개선책의 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중앙기관에 환원한 후, 기존의 지원에서 작성했던 실무 매뉴얼의 개정이나 새로운 매뉴얼의 작성, 판례나 기타 법률정보의 지방으로의 전달 및 지방으로부터의 문의에 관한 응답방법의 개선 등에 반영시키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

중전의 프로젝트에서는 재판관으로서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좌장을 중심으로, 국내지원 조직인 연구회 멤버들에게, 판결서 개선 등을 위해서 많은 협력을 받았다. 신규 프로젝트에서는 앞에서 서술했던 것처럼, 중전에 비하여 실무개선의 지원에 중점이 놓여지게 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 실무자인 현지의 장기 전문가를 충분히 서포트하기 위해서도 앞으로 더욱더 경험이 풍부한 실무가의 협력이 필요하게 된다. 또, 여전히 중요한 법률의 개정이나 신규 입법 지원도 예정되어, 앞으로 프로젝트의 진행에 따라 새로운 국내 지원조직·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나 실무가, 관계기관 등의 협력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3. 캄보디아

(1) 종래의 경위

1) 민법 및 민사소송법 기초지원

일본 측의 국내지원 조직인 민법작업부회 및 민사소송법 작업부회가 많은 노력을 들여, 캄보디아 측과 여러 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듭하

면서 완성시킨 민법 초안 및 민사소송법 초안은 2003년 3월까지 캄보디아 측에게 인도되었고, 그 후, 캄보디아 국내의 정치정세에 의해 약간 시간을 필요로 했지만, 민사소송법에 대해서는 2006년 7월, 법률로서 성립· 공포되어 2007년 7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한편, 민법은 적용개시일은 미정이지만, 2007년 12월에 법률로서 성립되었다. 원안을 일본이 작성한다는 방식으로, 민법 및 민사소송법이라는 민사 분야의 기본법이 법률로 정비되었던 것은, 일본의 법정비지원에서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 재판관·검찰관 양성지원

재판관·검찰관을 양성하는 왕립재판관·검찰관 양성학교(이하 「양성학교」라고 한다)가 2003년 11월에 교육을 시작했지만, 양성학교의 체제는 취약했다. 그래서 국제협력부에서는 JICA와의 협력 아래에서, 정식적인 지원 프로젝트를 형성하기 전에, 조사·준비적인 지원활동을 실시하면서, 양성학교의 체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먼저, 2004년 1월부터 국제협력부 교관을 반년 간 파견하여 조사를 한 후, 양성학교 관계자를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했다. 또, 교관을 단기 전문가로 5개월 정도 파견하는 것을 반복하여, 1기생 커리큘럼의 재검토나 교재의 작성 지원 작업 등을 추진하여 프로젝트화를 위한 준비활동을 실시하고, 1기생에 대한 모의재판을 실시하거나 민사 제1심 절차 매뉴얼 작성지원 등을 실시하면서, 양성학교 측과 협의를 추진하여 2005년 11월, 드디어 정식으로 JICA의 지원 프로젝트를 하기에 이르렀다. 정식적인 프로젝트화에 따라, 2006년 2월부터 교재작성이나 교관양성 등의 지원을 위해, 국제협력부 교관을 비롯하여 장기 전문가로서 양성학교에 파견했다.

(2) 현재의 상황과 과제

1) 기초지원

2008년 4월부터의 4년 계획 프로젝트에서는, 민법 관련의 호적, 등기, 공탁 등의 부속법령의 기초·정비, 민법, 민사소송법의 적절한 운용을 위한 지원 등이 예정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일본 측이 원안을 기초해 왔지만, 앞으로는 캄보디아 측에 기초의 주도권을 옮기게 되었다. 그러나 민법의 부속법령은, 등기나 공탁 등의 업무를 어느 기관이 취급하게 하는가, 그 설비나 기재는 어떻게 하는가 등 캄보디아의 제도설계나 인프라 정비와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을 것, 일본의 지원 대상 기관인 사법성 이외의 기관이 소관하고 있는 제도와 조정의 필요할 것, 정비해야 하는 법령이 많은 가운데, 캄보디아 측의 워킹그룹의 주요한 멤버는 사법성 또는 재판소에서의 요직을 맡고 있으며 그 본래 업무가 매우 바쁜 등, 과제는 많아 일본 측의 지원에 기대되는 부분은 여전히 크다. 그러한 가운데, 캄보디아 사법성 내에 새롭게 워킹그룹의 멤버가 될 수 있는 젊은 세력에 의한 서브 워킹그룹이 결정되었던 것은 캄보디아 측이 입법을 담당하는 인재양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난 것으로, 자립발전성의 관점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요소이다.

한편, 일본 측의 장기 전문가에게 기대되는 활동내용도 다기에 걸쳐 있으며 양적으로도 과중한 상황에 있지만, 새롭게 업무조정 전문의 장기 전문가가 1명 파견될 예정으로, 과중한 부담이 경감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2) 재판관·검찰관 양성지원

2008년 4월부터의 4년 계획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국제협력부에서 2대째의 장기 전문가를 파견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재판관·

검찰관 양성지원에 JICA 프로젝트의 형성과정부터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실무가의 양성지원은, 바로 실무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야 하는 활동으로, 앞으로도 사법연수소 교관을 비롯한 국내 지원 위원 등의 조언을 얻으며 교재작성지원, 커리큘럼 개선지원, 교관양성 지원 등, 적극적으로 양성학교에 대한 지원에 힘써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재판관·검찰관의 신규양성 교육에 특화된 지원이었지만, 2008년 4월 이후 지원내용을 캄보디아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양성학교 측의 강한 요청이 있어, 재판관의 계속 교육도 지원 내용에 포함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현지에서의 지원체제로는 계속 교육지원에 대한 대응은 매우 한정된 것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프로젝트의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교섭과정에서는 서기관 양성학교, 집행관 양성학교에 대한 지원도 요청되고 있었다. 일본이 지원했던 민법 및 민사소송법이 적절하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재판관 뿐만 아니라, 서기관 및 집행관의 양성도 중요하다는 것은 확실하며, 앞으로 일본 측 지원체제의 내실화·강화가 기대된다.

4. 라오스

1999년부터 사법관계자의 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일본연수·현지 세미나를 시작하여 법무종합연구소 교관을 JICA 단기 전문가로서 현상조사 등에 파견하는 등을 실시한 결과, 2003년부터 법정비지원 프로젝트가 실시되어, 국제협력부로부터는 전문관을 JICA 장기 전문가로 파견하는 외에, ① 민법과 상법의 교과서 작성지원, ② 민사 제1심 재판의 판결서 매뉴얼 및 검찰관 매뉴얼의 작성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연수와 현지 세미나를 실시했다.

2007년 5월, 이 프로젝트는 종료되고, 현재 다음의 프로젝트까지의 「브릿지 기간」으로서, JICA 라오스 사무소에서 위의 각종 성과물의

보급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향후, 인적체제를 포함하여 신규 프로젝트의 실시여부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5.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국가 중기개발계획(2004년~2009년)에서의 세 가지 기둥 중 한 가지에 「민주적이고 공정한 인도네시아의 창조」가 거론되고 있으며, 그 아래에 「사법기관·법집행 기관의 능력향상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다. 그 활동의 한 가지로서 「미제사건의 해결 촉진화」를 들 수 있으며, 미제사건의 삭감이 급선무로 여겨지고 있다(인도네시아에서는 최고재판소에서는 미제사건이 많아 화해 및 조정절차는 매우 저조했다).

국제협력부에서는, 인도네시아에 대하여 200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사분쟁해결 제도의 운영에 관한 비교연구」를 테마로 하여 ① 화해·조정실무의 개선, ② 소규모 분쟁에서의 간이한 재판절차의 도입, ③ 상소제한의 도입에 중점을 두었던 일본연수를 계속적으로 실시해온 바, 2006년의 연수 성과로서, 인도네시아에서의 화해·조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案)이 연수원들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JICA 프로젝트로서 2007년 3월부터 2년간의 예정으로, 화해·조정제도 정비를 위한 최고재판소규칙 개정 등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국내 지원조직으로서 전 재판관으로 이 분야에 상세한 교수 등으로 구성된 자문그룹이 결성됨과 동시에, 변호사의 장기 전문가가 현지에 파견되었다. 국제협력부는 이러한 그룹멤버의 교수들과 장기 전문가와 제휴하여, 일본연수, 현지 세미나를 비롯하여 프로젝트의 운영전반에 협력하고 있다.

6.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구소련에서 독립한 후, 시장경제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국유기업의 민영화 등에 따라, 도산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구소련연방시대, 국영기업 체제가 취해지고 있었으며, 기업의 도산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산법이 제정되어도 그 제도가 좀처럼 주지되지 않고, 또 도산법에 관한 문헌 등도 없었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과 실무가 다르거나, 실무의 취급도 가지각색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법무종합연구소에서는 JICA와 협력하여 우즈베키스탄에 대하여 시장경제화 촉진을 위한 연수 등의 활동을 실시해온 바, 도산사건을 소관하는 우즈베키스탄 최고경제재판소로부터의 요청에 부응하여, 2004년부터 우즈베키스탄 도산법 주석서의 작성지원에 협력해 왔다(JICA 프로젝트로서 합의문서가 교환되었던 것은 2005년 11월이지만, 사실상 2004년 10월부터 지원을 시작하고 있다). 그 성과로서 2007년 3월에 도산법 주석서(러시아어), 같은 해 9월에 우즈베키스탄어판 및 일본어판, 2008년 3월에 영어판이 각각 간행되었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히 주석서 발간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고, 일본 측의 국내지원조직으로서 일본의 도산법의 전문가에 의한 우즈베키스탄 도산법 주석서 작성지원 위원회가 설치되어, 우즈베키스탄 측 워킹그룹이 집필했던 원안에 대하여 일본 측이 코멘트나 수정안을 제시하여, 보다 좋은 내용이 되도록 협의를 거듭해온 것이다.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영어 외 러시아어도 능통한 변호사의 장기 전문가가 현지에 파견되고, 국제협력부로서도 이러한 전문가와 밀접한 제휴를 맺으며 프로젝트의 운영에 협력해왔다. 이러한 경위를 거쳐, 우즈베키스탄에서 최초의 도산법 주석서가 발간된 의의는 크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2007년 9월에 종료되었지만,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보면, 중앙아시아 국가에는 여전히 법령이 미비하거나 운용이 통일되어 있지 못하는 등의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는 국가도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러한 국가들은 우라늄 등의 천연광물자원의 공급 국가로서 재화에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일본의 정치적·경제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일본에서 중앙아시아 국가에서의 법제도·실무에 대한 정보가 더욱 더 중요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바이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지원경험을 바탕으로, 2008년도부터는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국가 회사법제 등을 테마로 하는 「중앙아시아 비교법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이다.

7. 중 국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로부터 일본에 대하여 중국의 민사소송법 및 중재법의 전면 개정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어, 「중국민사소송법·중재법 개선 프로젝트」가 2007년 11월부터 3년 계획으로 시작되었다.

협력내용으로서는 위의 법제공작위원회 민법실의 기초담당자 등에 대하여, 일본의 법 개정의 경위나 그 배경에 있는 실무의 실정 등에 관한 지견 등,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중국의 실정을 바탕으로 한 개선점을 제언해가는 것 등이 예정되어 있다. 국내지원조직으로서 일본의 민사소송법 등의 연구자와 법조실무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회가 설치됨과 동시에, 2007년 11월에 제1회 일본연수, 2008년 3월에는 현지 세미나가 각각 실시되었고, 같은 해 5월에는 제2회 일본연수가 예정되어 있다. 또, 같은 해 4월부터는 중국으로의 유학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장기 전문가가 파견되었다.

민사분쟁 해결을 위한 중요한 법적기반인 민사소송법 등의 개정은, 일본을 포함하여 중국과 교류가 있는 많은 국가에게 있어 의의가 있

는 것으로, 법무성의 입장에서 이 이러한 프로젝트에 전면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있다.

5

40)

법정비지원 사업은 대상국의 사법제도의 근관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가나 국제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동종의 지원과 적절한 제휴 및 조정을 도모하면서, 대상국 전체의 법체계에 정합성이 있으며 또 해당국의 실정에 적합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일본의 입장에서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실정을 보면, 대상국으로부터의 개별 요청을 그때마다 개별로 검토하고, 개개의 관계부처 등에 따라 가지각색으로 실시되고 있는 인상이 강하고, 그러한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져 왔는가,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또, 본래 업무에 매우 바쁜 연구자 등의 일부를 보란티어라고도 할 수 있는 만큼의 헌신적인 협력에 의존해왔던 부분도 크다고 생각된다.

법정비지원 사업에서, 법무성, 그 중에서도 국제협력부가 완수해야 하는 역할이 중대한 점은 명확하다. 그러나 법무성만으로 완수할 수 있는 지원에는 저절로 한계가 있으며, 일본 국내의 제휴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휴에는 크게 나누어 두 종류가 있어, 첫째가 국내 법률가간의 제휴이고, 둘째가 관계부처 등의 제휴이다.

법정비지원에서 현지에서의 지원활동에 임하는 전문가로서, 법률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재차 말할 필요도 없다. 또, 국내의 서포트 체제로서, 법조 3자와 학계가 이른바 All Japan으로서의 지원조직을 정비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법정비지원에 관여하는지의 여부는 법률가 개인의 의사에 따르는바가 크고, 앞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법정비지원 활동에 대한 관

40) 稲葉一生「法整備支援事業の今」『Jurist』 有斐閣, 2008年6月15日(No.1358), 8頁。

심과 의욕을 가지는 법률가가 늘어날 것이 기대되지만, 그러한 법률가가 늘어나듯이, 법률가의 인센티브를 높일 노력이나 연구가 필요하다.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법률가뿐만이 아니라, 지원대상국의 현지어와 일본어의 법률용어에 정통한 통역·번역가의 양성과 확보이다. 법정비지원은 말이라는 도구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 기술지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매우 한정된 사람들에게 통역이나 번역 업무를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원의 인적 체제를 포함하여, 관계부처가 제휴하고, 정부 전체가 법정비지원에 대한 대응전력이나 기본계획의 책정이 내각을 중심으로 진행되려고 하고 있다. 앞에서 서술했던 해외경제협력회의에 관계부처 등의 국장급 멤버로 구성된 연락회의가 설치되었고, 또 관계부처의 과장급 멤버로 구성된 워킹그룹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향후 법정비지원에 관한 니즈 조사를 재차 실시하고, 중점 국가, 지역, 지원 분야, 인재확보 등에 관한 정부의 기본계획을 책정하는 것이 예정되고 있다.

지금까지 법정비지원에 종사해온 경험과 지견을 살리면서, 정부전체로서의 노력에 전면적으로 협력해나가야 한다. 향후 그러한 정부전체의 시스템에서 법정비지원이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여기에는 많은 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제 7 장 결론 -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1

ODA는 개발도상국의 안정과 발전에 대한 공헌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완수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제평화에 의거하여, 자원·식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에 있어서, 국민의 생활을 지키고 또 일본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국제적 환경을 구축하는 등, 국민의 이익 증진에 공헌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국제협력을 실시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무이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패전 후, 10년에 걸쳐 부흥을 이루어내어 전후배상과 콜롬보 플랜의 참가를 통하여 인근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정부개발원조(ODA)를 개시했다. 그 후 10년을 경과하여 세계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 UN이나 세계은행 등의 멀티 개발원조기관에 대한 협력이나 양국간 정부개발원조를 매년 증액하여 1989년에는 세계 제1위의 원조국이 되었었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했던 신흥 독립 국가들은 부족한 자금이나 기술을 UN이나 선진국에게 요청했고, 그 중에서도 일본에 대한 기대가 증대되었었다. 일본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원조액을 늘림과 동시에, 원조의 질을 향상시켜 1990년대 이후 현저하게 되었던 환경, 인권, 안전보장 등의 공공적 가치에 배려한 원조의 실시를 추진해오고 있다.

그런데, 1990년대의 경제 불황과 긴축재정의 영향으로, 일본의 ODA 금액은 1997년을 피크로 1998년 이후 급하강하여 현재도 계속 감소경향에 있다. 금액의 감소를 원조효율의 개선이나 제도개혁을 통하여 보완하고, 세계의 개발원조 커뮤니티 가운데에서의 일본의 지도적인 입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 글로벌한 시대적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며

원활히 원조가 이루어지도록 ODA 대강 및 중기정책 등의 ODA 관련 정책의 개정하고 있다. 또 JBIC의 해외경제협력업무와, 외무성의 무상 자금협력업무가 JICA에 계승되어 실시기관이 일원화되어, 원조의 방법을 더욱 유기적으로 제휴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원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은 메이지(明治)시대 이후의 근대화 과정에서, 대륙법을 중심으로 유럽의 근대법을 수용하였고, 제2차 대전 후 민주화의 과정을 겪으며 미국법의 영향을 받아 독자적인 법제도를 확립하여 발전시켜 오늘날의 사회적, 경제적인 발전의 기반을 쌓아왔다. 이러한 일본의 경험의 활용이, 경제발전을 위해 법제의 근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여러 국가에 참고 및 도움을 주기 위하여, 특히 문화적으로 친화성을 가진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일본의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ODA의 한 형태로서 법제도정비지원에 대한 국제적인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올해 2010년 6월에는, 국내외 환경의 변화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ODA 정책의 바람직한 양상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여, 「열린 국익의 증진 - 세계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평화와 번영을 만든다」는 명확한 이념을 내세워,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를 중시하는 자세를 취하며, 빈곤삭감, 평화에 대한 투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지원 등의 중점분야를 압축하여 노력하기로 하고 있다. 또, 일본의 「사람」, 「지혜」, 「자금」, 「기술」을 집결한 개발협력을 위해, 관계자와의 대화의 확대, 민간기업과의 연계, NGO와의 제휴를 강화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원조를 위해, 원조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프로그램 어프로치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국제사회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하여, 다자간 및 양자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 개발인재의 육성을 위해, 개발인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연수 프로그램

등의 확충과 NGO에 의한 인재육성에 대한 지원 등을 활발히 하고, 정책의 기획입안기능과 실시체제(JICA)의 강화를 위해, 외무성(정책)과 JICA(실시)의 역할분담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 정보개시를 강화하여 폭넓은 국민의 개발협력에 대한 참가를 촉진하며, ODA의 확충을 위해, 민간 자금 및 OOF와의 제휴 등을 통해 개발자금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재검토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념 및 기본방침을 반영하기 위하여, 향후 ODA 대강의 개정을 위하여 일본 정부내 협의가 곧 시작될 것임을 알 수 있다.

2

우리나라는 ODA수혜국을 졸업하고 어느덧 ODA지원국으로 성장하였다. 우리나라는 과거 역사적 관계 때문에 특히 일본으로부터 ODA 지원을 받은 탓에, 우리나라의 ODA체제가 일본과 매우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하 일본의 ODA법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일본의 경우, 종전의 ODA 관련 업무는 「무상자금 협력업무」는 「외무성」이 담당하고, 「기술 협력」은 「JICA」가 담당하는 대신 「유상자금 협력(엔화 차관) 업무」 「JBIC(국제협력은행)」가 담당하는 「2원화 체제」로 운영해 왔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무상자금 협력업무」는 「재정부」소관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기술 협력」 및 「유상자금 협력(차관)업무」는 「KOICA」의 소관으로 되어 「2원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ODA 업무가 2원화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 소관 부처 간에 상호유기적인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결점을 보완하고자 ODA업무 소관기관을 일원화하였다. 다시 말해서 JBIC의 해외

경제협력업무와 외무성의 무상 자금협력업무(외교정책상 외무성이 직접 실시하는 것은 제외)가 JICA에 흡수되어 2008. 10. 1.에 「신 JICA」가 탄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2원화 체제가 소관부서 간의 원만한 의사소통과 업무협조에 혹시 허들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면밀히 검토한 다음, 만일 그러한 요소가 있다면 일본과 같이 ODA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을 일원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우리나라는 ODA 후발주자인 탓에 일본의 ODA지원 대상국이 상당수 중첩된다. 다시 말해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선발주자인 일본과 경쟁을 해야 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ODA수혜국에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ODA지원활동과는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일본은 동남아시아에서 ODA지원활동의 일환으로서 법정비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나, 우리나라에서는 ODA의 사정거리가 아직 법정비지원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의 경우 아직도 현대적인 법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거나, 법은 정비되어 있더라도 원만하게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국가에 대한 법정비지원은 유형의 물질적인 지원이 상으로 효과적인 때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넷째, 일본의 ODA지원활동의 특징을 보면, 수혜국에 대해 일본적 시스템이나 법제도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권장하는 것을 지양하고, 가능한 한 수혜국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수혜국에 대해 자기 나라의 법제도 등을 일방적으로 이식하려 하거나 권장하는 유럽의 국가들과는 매우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관습 및 법제도가 다른 나라에 대해

ODA지원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일본과 같은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

- 鮎京正訓, 「法整備支援活動による法整備の国際発信」『法律のひろば』
2006年8月(Vol.59 No.8)、37-43頁.
- 鮎京正訓, 「大学による法整備支援—人材育成と比較法学の課題」『法律
時報』 日本評論社、2010年1月(Vol.82 No.1)、17-21頁.
- 鮎京正訓, 「名古屋大学と法整備支援事業・研究」『Jurist』 有斐閣、2008
年6月15日(No.1358)、17-25頁.
- 磯井美葉, 「弁護士会に対する支援の意義と課題—モンゴル弁護士会支
援の経験から」『法律時報』 日本評論社、2010年1月(Vol.82 No.1)、
46-49頁.
- 伊藤文規, 「法整備支援の現場から—ベトナムにおける法・司法制度改
革支援プロジェクトについて—」『研修』 2009年7月(No.73
3)、53-60頁.
- 稲葉一生, 「法整備支援に学ぶ—外から見直した日本の法制度—法整備
支援の今後の課題」『研修』 2007年7月(No.709)、81-86頁.
- 稲葉一生, 「法整備支援の軌跡と今後の課題」『法の支配』 日本法律家協
会、2007年10月(No.147)、84-92頁.
- 稲葉一生, 「法整備支援事業の今」『Jurist』 有斐閣、2008年6月15日(No.135
8)、2-8頁
- 上原敏夫・竹下守夫・大村雅彦・三木浩一・松下淳一・矢吹公敏・田
中嘉寿子, 「[座談会]法整備支援の現状と課題」『Jurist』 有斐閣、
2003年4月15日(No.1243)、64-86頁.

참고문헌

- 上原敏夫, 「カンボジア民事訴訟法典の成立」『Jurist』有斐閣、2008年6月15日(No.1358)、26-33頁.
- 上柳敏郎, 「法整備支援の制約条件とその克服—特集あと書きにかえて」『法律時報』日本評論社、2010年1月(Vol.82 No.1)、54-57頁.
- 岡村泰孝, 「(財)国際民商事センターの法整備支援活動」『法律のひろば』2001年10月(Vol.54 No.10)、38-43頁.
- 尾崎道明, 「法整備支援の新たな展開—国際協力部の親切」『法律のひろば』2001年10月(Vol.54 No.10)、4-11頁.
- 尾崎道明, 「法務総合研究所国際協力部における民商事法を中心とした法整備支援活動について」『法の支配』日本法律家協会、2002年7月(No.126)、5-16頁.
- 大谷美紀子, 「国際司法支援活動における国際法曹団体との協同」『法律時報』日本評論社、2010年1月(Vol.82 No.1)、50-53頁.
- 落美都里, 「我が国の法整備支援の現状と問題点—法分野からの平和構築—」『レファレンス』国立国際図書館調査及び立法考査局、2007年3月号、99-109頁.
- 香川孝三, 「在ベトナム日本大使館公使として触れたベトナムの法と社会(3)—法整備支援事業—」『法学教室』2006年12月(No.315)、6-7頁.
- 金子由芳, 「法整備支援における政策判断に資する立案・評価手法の検討」国際協力総合研究所、2006年8月.
- 神木篤, 「法曹養成支援の課題—カンボジア」『法律時報』日本評論社、2010年1月(Vol.82 No.1)、34-37頁.
- 川嶋四郎, 「日本における法整備支援の課題と展望について」『法政研

- 究』九州大学大学院法学研究院、2007年3月(Vol.74 No.4)、685-714頁.
- 亀卦川健一、「法務省法務総合研究所国際協力部の行う法整備支援について」『慶応法学』2009年3月(No.13)、239-261頁.
- 桑原尚子、「法整備支援における「法の移植(legal transplants)」をめぐる議論の序論的考察—理論と実践の架橋をめざして—」『国際開発研究フォーラム』、2007年3月(No.34)、171-184頁.
- 佐々木雄太、「大学における国際協力の一例としてのアジア法整備支援」『法律のひろば』2001年10月(Vol.54 No.10)、32-37頁.
- 佐藤安信、「法の支配」のジレンマ—カンボジアの法整備支援の課題と展望』『法律時報』日本評論社、2010年1月(Vol.82 No.1)、11-16頁.
- 佐藤直史、「法整備支援実施機関の近年の取組みと法律家(法整備支援専門家)の役割」『法律時報』日本評論社、2010年1月(Vol.82 No.1)、26-29頁.
- 柴田紀子、「法整備支援に学ぶ—外から見直した日本の法制度—プノンペンから」『研修』2007年3月(No.705)、87-92頁.
- 柴田紀子、「カンボジア裁判官・検察官養成支援」『Jurist』有斐閣、2008年6月15日(No.1358)、34-41頁.
- 関根澄子、「法整備支援の現場から—カンボジア・ベトナムにおける裁判実務の改善に向けて—」『慶応法学』2007年10月(No.8)、305-314頁.
- 竹内努、「最高裁と法整備支援」『法律のひろば』2001年10月(Vol.54 No.10)、25-31頁.
- 田中嘉寿子、「法整備支援に学ぶ—外から見直した日本の法制度—イン

참고문헌

- ドネシア和解・調停制度強化支援プロジェクトの開始」『研修』2007年6月(No.708)、75-82頁.
- 鳥居香代,『JICAの法整備支援』JICA公共政策部.
- 中井憲治,「カンボジアの法整備支援のことなど」『研修』2006年10月(No.70)、23-34頁.
- 平石努,「ADR支援の意義と課題—インドネシア」『法律時報』日本評論社、2010年1月(Vol.82 No.1)、42-45頁.
- 本間佳子,「法律起草後の課題—カンボジア」『法律時報』日本評論社、2010年1月(Vol.82 No.1)、30-33頁.
- 松尾弘,「法整備支援における民法典整備の意義と課題」『慶応法学』、2006年1月(No. 4)、31-62頁.
- 松尾弘,「法と開発」(Law and Development)への法科大学院の取組み」『慶応法学』 2006年5月(No.5)、329-350頁.
- 松尾弘,「良い統治」は法整備支援の目標たりうるか?—その内在的ジレンマを解く鍵のあり方」『法律時報』 日本評論社、2010年1月(Vol.82 No.1)、4-10頁.
- 松嶋希会,「移行経済国に対する支援—ウズベキスタン・中央アジア諸国」『法律時報』 日本評論社、2010年1月(Vol.82 No.1)、38-41頁.
- 丸山毅,「法務省法務総合研究所による法整備支援への取組み」『慶応法学』2006年5月(No.5)、351-363頁.
- 三ヶ月章,「アジア諸国の法整備に対する支援と協力—法学者による若干の感想と展望」『法律のひろば』2001年10月(Vol.54 No.10)、44-52頁.
- 三澤あずみ,「カンボジアにおける法整備支援の概要」『慶応法学』2006年5月(No.5)、365-372頁.

- 宮崎朋紀, 「法整備支援の現場から—カンボジアにおける法曹養成、ベトナムにおける裁判実務改善について—」『慶応法学』2009年3月(No.13)、263-274頁.
- 森島昭夫, 「法整備支援の理念とその課題」『法律のひろば』2001年10月(Vol.54 No.10)、12-17頁.
- 安田佳子, 「法令の外国語の必要性—法整備支援の体験から」『Jurist』有斐閣、2005年2月15日(No.1284)、20-25頁.
- 山下輝年, 「法整備支援がもたらすもの」『法律時報』日本評論社、2010年1月(Vol.82 No.1)、22-25頁.
- 矢吹公敏, 「国際司法支援と弁護士」『自由と正義』1999年10月号(Vol.50 No.10)、44-55頁.
- 矢吹公敏, 「日弁連における法整備支援」『法律のひろば』2001年10月(Vol.54 No.10)、18-24頁.
- 矢吹公敏, 「日弁連における法整備支援」『慶応法学』2006年5月(No.5)、373-385頁.
- 矢吹公敏, 「日本弁護士連合会と国際司法支援活動」『Jurist』有斐閣、2008年6月15日(No.1358)、9-16頁.
- 横田洋三, 『主要先進国における海外援助の制度と動向に関する調査』、ODA研究会、2008年3月.
- Nyo Nyo Thinn, 「The legal System in Myanmar and the Foreign Legal Assistance」『慶応法学』2006年5月(No.5)、387-403頁.

< >

安田信之, 『第三世界開発法学入門』アジア経済研究所、1992年3月.

참고문헌

- 安田信之, 『開発法学 : アジア・ポスト開発国家の法システム』名古屋大学出版会、2005年2月.
- 香川孝三・金子由芳, 『法整備支援論 : 制度構築の国際協力入門』ミネルヴァ書房、2007年4月.
- 国際協力機構企画・評価部評価監理室, 編『プロジェクト評価の実践的手法 : 考え方と使い方 JICA事業評価ガイドライン改訂版』国際協力出版会、2004年3月.
- 松尾弘, 『良い統治と法の支配 : 開発法学の挑戦』日本評論社、2009年8月.
- 三ヶ月章, 『司法評論. 3(法整備協力支援)』有斐閣、2005年7月.
- 法務総合研究所, 『法整備支援をめぐる国際情勢と開発法学』法務省法務総合研究所国際協力部、2009年3月.

(별표 1)

2009년도 법제도정비지원 실시계획

중 국

분 야	내 용	스케줄	상대기관	실시 · 관계기간
중국민사 소송법 · 중재법	기술협력프로 젝트(개정민 사소송법의 운용지원)	2007-2010년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법제 공작위원회	JICA, 법무성, 학식경험자, 대법원, 일본변호사 연합회
경제법 · 기업법	기술협력 프로젝트 (회사법, 독점금지법의 운용지원, 시장유통관련 법의 기초)	2004-2009	국무원법제변 공실, 상무부	JICA, 공정거래 위원회, 학식경험자, 일본변호사 연합회
정보통신	세미나 개최 등(통신법제정 지원(전기통신 분야의 경쟁정책관계))	2009년도~	공업 · 정보화부	총무성
세관행정 의 개선	수용연수 (세관절차의 적정 · 신속화 를 위한 인재육성 지원)	2009년도~	해관총서	재무성

(별표 1)

분 야	내 용	스케줄	상대기관	실시·관계기간
세 무	기술협력 프로젝트 (국제과세제도, 납세자 서비스 등)	2008-2011년도	국가세무총국	JICA, 국제청
	수용연수 (15명 정도, 지방재정정책)	2009-2011년도	재정부	JICA
지적재산	수용연수 (30명 정도)	2005년-2010년	과학기술부	JICA, 경제산업성, 특허청, (재)비교법센터
에너지 절약	수용연수 (30명 정도)	2009년도	절능관찰중심 등 에너지절약법 집행기관	경제산업성, (재)에너지 절약센터
건 축	기술협력프로 젝트(내진건 축인재육성)	2009-2012년 (예정)	주택·도시농 촌건설부	JICA, 국토교통성
환 경	기술협력프로 젝트(순환형 경제추진)	2008-2009년도	환경보호부, 일중우호환경 보전센터	JICA
	기술협력프로 젝트(주택 에너지절약 기술향상)	2007-2009년도	주택·도시농 촌건설부 주택산업화 촉진센터	JICA, 국토교통성

몽 골

분 야	내 용	스케줄	상대기관	실시 · 관계기간
조 정	기술협력프로 젝트(조정제도 의 구축)	2009년도-미정	대법원	JICA
금 융	기술협력프로 젝트(기업지배 구조(coporate governance) 가이드라인의 정비 및 철저한 주지	2007-2009년도	몽골은행	JICA
세 무	수용연수	2008년-2010년도	재무성, 국세청	JICA, 국제청
관민제휴	연구회 개최, 현지조사(인프 라 정비)	2007년도~	자연환경 · 관 광성 · 도로 · 운수 · 건설 · 도시계획성 등	국토교통성

캄보디아

분 야	내 용	스케줄	상대기관	실시 · 관계기간
법제도 정비	기술협력프로 젝트(민법 · 민 사소송법의 기초, 입법화지원, 부속법령의	2008-2011년도	사법성, 왕립재판관 · 검찰관 양성학교	JICA, 법무성, 학식경험자, 대법원, 일본변호사연 합회

(별표 1)

분 야	내 용	스케줄	상대기관	실시 · 관계기간
	기초·입법화 지원 등)			
재판관· 검찰관양 성학교 민사교육	기술협력프로 젝트(재판관· 검찰관 양성학교에서 의 민사교육지원)	2008-2011년도	왕립사법학원	JICA, 법무성, 학시경험자, 대법원, 일본변호사연 합회
변호사회 지원	기술협력프로 젝트(변호사 양성학교의 운영능력향상 등)	2007-2009년도	캄보디아국 변호사회, 캄보디아변호 사 양성학교	JICA, 일본변호사회 연합회
정보통신	세미나 개최 등(전기통신법 운용지원(전기 통신분야의 경쟁정책 관계))	2009년도~	우편· 전기통신성	총무성
세관행정 의 개선	수용연수 (세관절차의 적정·신속화 를 위한 인재육성지원)	2009년도	관세소비세국	재무성
세 무	기술협력 프로젝트(세무 조사능력향상)	2007-2010년도	조세총국	JICA, 국세청

인도네시아

분 야	내 용	스케줄	상대기관	실시·관계기간
화해·조정	수용연수(화해·조정 ·관련된 재판관 인재육성)	2009년도	대법원	JICA, 법무성
증 권	기술협력프로젝트(자본시장 규제·감독행 정의 개선)	2006-2009년도	재무성	JICA, 도쿄증권 거래소
경 쟁	기술협력프로젝트(경쟁법 개정에 대한 지원)	2009년도~	사업경쟁감시 위원회	JICA, 공정거래 위원회
정보통신	전문가 파견(전기통신 행정)	2008-2010년도	통신정보성	JICA, 총무성
세관행정의 개선	수용연수(세관 절차의적정· 신속화를 위한 인재육성 지원)	2009년도	세관소비세 총국	재무성
세 무	기술협력프로젝트(세무행정 근대화)	2006-2009년도	국세총국	JICA, 국세청
	수용연수(1명/ 년, 세무행정)	2007-2009년도	세무총국	JICA

(별표 1)

분 야	내 용	스케줄	상대기관	실시· 관계기간
	및 재무·회계)			
노 동	정책 어드바이저 (노동법 개정 등에 대한 지원)	2009-2011년도	노동이주성	JICA, 후생노동성
지적 재산권	기술협력 프로젝트(공업 소유권 행정)	2007-2009년도	법무인권성	JICA, 특허청

라오스

분 야	내 용	스케줄	상대기관	실시· 관계기간
세관행정 의 개선	수용연수 (세관절차의 적정·신속화 를 위한 인재육성지원)	2009년도	관세국	재무성
건 축	세미나 개최 등(건축기준 등의 정비에 관계되는 지원)	2009년도	공공사업· 운수성	국토교통성

베트남

분 야	내 용	스케줄	상대기관	실시 · 관계기간
전반	유상자금협력 (빈곤삭감지원 차관을 통한 각종 법규정 정비지원)	2008-2009년도	국가은행, 관계부처	JICA
법 · 사법 제도 개혁	기술협력프로 젝트(지방사법 기관 및 법조의 재판실무의 능력개선지원, 중앙사법기관 및 통일변호사회 향상지원 등)	2007-2010년도	사법성, 최고인민 재판소, 최고인민 검찰원	JICA, 법무성, 학식경험자, 대법원, 일본변호사 연합회
금융	기술협력프로 젝트(중앙은행 기능의 강화)	2008-2011년도	국가은행	JICA, 일본은행
	기술협력 프로젝트 (투자 · 대부업 무의 강화)	2008-2011년도	개발은행	JICA
경쟁법	기술협력프로 젝트(경쟁법시 행 지원)	2008-2011년도	상공성 경쟁관리국	JICA, 공정거래 위원회
세관행정 의 개선	수용연수 (세관절차의 적정 · 신속화)	2009년도	재정성	재무성

(별표 1)

분 야	내 용	스케줄	상대기관	실시· 관계기간
	를 위한 인재육성 지원)			
세무	기술협력 프로젝트 (세무행정개혁 지원)	2008-2010년도	조세총국	JICA, 국제청
에너지 절약	수용연수	2009년도	상공성, 상공성 지방국 외	경제산업성, (재)에너지 절약센터
	해외개발계획 조사(마스터플 랜 작성)	2008-2009년도	상공성	JICA
	전문가 파견 (에너지 절약 정책지원)	2009-2010년도	상공성	JICA
품질확보	전문가 파견, 세미나 개최 등(공공조달)	2008년도~	건설성, 교통성	국토교통성
인프라 품질확보 · 안전확보	전문가 파견, 수용연수 등	2009년도~	건설성, 교통성	JICA, 국토교통성
인프라 정비·관 리·운용	전문가 파견, 세미나 개최 등	2007년도~	교통성	JICA, 국토교통성
관민제휴	연구회, 세미나 개최, 현지조사	2007년도~	교통성	국토교통성

분 야	내 용	스케줄	상대기관	실시· 관계기간
	등(인프라 정비)			

우즈베키스탄

분 야	내 용	스케줄	상대기관	실시· 관계기관
세 무	기술협력 프로젝트	2008-2010년도	국가세무 위원회	JICA, 국세청

말레이시아

분 야	내 용	스케줄	상대기관	실시· 관계기간
세관행정 의 개선	수용연수 (세관절차의 적정·신속화 를 위한 인재육성지원)	2009년도	관세청	재무성
세 무	기술협력프로 젝트(세무인재 능력향상)	2007-2010년도	내국세입청	JICA, 국세청

필리핀

분 야	내 용	스케줄	상대기관	실시· 관계기간
경 쟁	기술협력프로 젝트(포괄적 국가경쟁정책)	2009-2012년도	무역산업성	JICA, 공정거래 위원회

(별표 1)

분 야	내 용	스케줄	상대기관	실시· 관계기간
	을 위한 능력향상)			
정보통신	전문가 파견(전기통신 행정)	2007-2009년도	운수통신성	JICA, 총무성
세관행정 의 개선	수용연수 (세관절차의 적정·신속화 를 위한 인재육성 지원)	2009년도	관세국	재무성
세 무	기술협력 프로젝트 (내국세입국 인재육성개발)	2008-2010년도	내국세입국	JICA, 국세청

태 국

분 야	내 용	스케줄	상대기관	실시· 관계기간
정보통신	전문가파견 (ICT 정책개발계획 어드바이저)	2009-2011년도	정보통신 기술성	JICA, 총무성
세관행정 의 개선	수용연수 (세관절차의 적정·신속화 를 위한 인재육성 지원)	2009년도	관세국	재무성

분 야	내 용	스케줄	상대기관	실시 · 관계기간
세 무	기술협력프로 젝트(세무 컨플라이언스 향상)	2007-2010년도	세입국	JICA, 국제청

네 팔

분 야	내 용	스케줄	상대기관	실시 · 관계기간
헌법제정 지원	수용연수·세 미나(헌법제정 프로세스 등)	2009-2011년도	제헌의회	JICA, 학식경험자
민법·민 법관련법 지원	수용연수(민법 및 관련법)	2009-2011년도	사법성	JICA, 학식경험자

이 란

분 야	내 용	스케줄	상대기관	실시 · 관계기간
법제도 정비	수용연수(재판 관, 사법성의 인재육성)	2009-2011년도	사법성	JICA, 나고야대학교

(별표 2)

(별표 2)

2009년도 법제도정비지원 실시계획

(복수국가에 걸친 계획)

내 용	국 가	상대기관	스케줄	개 요	실시· 관계기관
법령외국어 번역 추진	-	-		일본법령의 번역정비, 공개	법무성
범죄방지 (형사사법)	(미 정)	경찰, 검찰, 재판 등의 형사사법 기관 또는 소관 중앙관청	2005-2009 년도	연수원 수용	JICA, 법무성, UN아시아 극동 범죄방지 연수소
범죄방지 (상급 세미나)	(미 정)	형사사법 기관	2005-2009 년도	연수원 수용	JICA, 법무성, UN아시아 극동 범죄방지 연수소
범죄방지 (교정보호)	(미 정)	경찰, 검찰, 재판 등의 형사사법기 관 또는 소관 중앙관청	2005-2009 년도	연수원 수용	JICA, 법무성, UN아시아 극동 범죄방지 연수소
독직방지 형사법 지원	(미 정)	법무, 내무성, 반독직기관	2008-2010 년도	연수원 수용	JICA, 법무성, UN아시아

내 용	국 가	상대기관	스케줄	개 요	실시· 관계기관
		등 행정기관을 포함한 형사사법에 서의 독직대책관 여 기관			극동 범죄방비 연수소
중앙아시 아지역 형사사법 연수	(미 정)	검찰청, 경찰, 내무성, 법원, 대통령부, 법무성 등	2007-2009 년도	연수원 수용	JICA, 법무성, UN아시아 극동 범죄 연수소
경쟁법· 정책연수	(미정)	경쟁당국 등	2009-2011 년도	연수원 수용	JICA, 공정거래 위원회
정보통신	아시아 태평양 국가	정보통신 주관청 등	1992년도~	연수원 수용 (10여건, 경쟁정책에 관한 연수 등)	총무성, 아시아태 평양 전기통신 공동체
	아시아 태평양 국가	정보통신주 관청 등	2006년도	연수원 수용(1건, 브로드밴드 보급을 위한 환경정비 지원)	총무성, 아시아태 평양 전기통신 공동체

(별표 2)

내 용	국 가	상대기관	스케줄	개 요	실시· 관계기관
	아시아 태평양 국가	정보통신주 관청 등	2001년도~	정보통신정 책에 대한 공동연구	총무성, 아시아태 평양 전기통신 공동체
	개발 도상국	정보통신주 관청 등	매 년	연수원 수용(전기 통신사업법 의 소개)	총무성
비교연구	중앙 아시아 국가	법원/기업, 담보, 채권자·주 주의 보호 또는 도산감독의 국가기관	2008-2010 년도	중앙아시아 국가에서의 기업법제의 비교연구	JICA, 법무성
세 무	도상국	세무당국 등	2009년도	연수원 수용	국세청
	도상국	세무당국 등	2009년도	연수원 수용	JICA, 국세청
방 역	아시아 국가	국제수역사 무국	2008-2012 년도	전문가파견 , 연수원 수용	농림 수산성
투자환경 법 정비	(미 정)	직접투자관 계기관	2008-2011 년도	연수원 수용	JICA, (재)비교법 연구센터
국제지적 재산권	(미 정)	지적재산정 책의 책정·집행 기관	2005-2009 년도	연수원 수용	JICA, (재)비교법 연구 센터

내 용	국 가	상대기관	스케줄	개 요	실시· 관계기관
APEC 지적 재산권	(미 정)	APEC지역 내의 지적재산청 및 관계관청	2001-2009 년도	연수원 수용	JICA, 경제 산업성, (사)발명 협회
보험, 증권, 은행감독	(미 정)	각 금융감독 당국	2009년도	연수원 수용	금융청
자동차 기준인증	(미 정)	중앙정부 등	2009년도	1958년협정 에 대한 가입지원, 가입 후의 국내법령정 비지원	국토 산업성
환 경	아시아 국가	(미 정)	2009-2013 년도	조사, 기술지원 (일본모델 환경대책기 술 등의 국제전개)	환경성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 아, 한국, 라오스, 미얀마, 말레 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환경담당국	2009-2013 년도	수자원 환경관리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 지원	환경성

(별표 2)

내 용	국 가	상대기관	스케줄	개 요	실시· 관계기관
법조양성	우즈 베키스탄	타시켄트 국립 법과대학교	2006-2011 년도	체제이해국 에서의 법조양성	문부 과학성, 나고야 대학교
	몽 골	몽골국립 대학교			
	베트남	하노이 법과대학			
	캄보디아	왕립법경 대학			
	베트남	사법성, 국가와 법연구소	2006-2010 년도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 대한 법정비지원 전략연구	문부 과학성, 나고야 대학교
	캄보디아	사법성, 왕립법경 대학			
	인도 네시아	가자마다 대학교			
	베트남	하노이 법과대학	2007-2009 년도	공동연구	문부 과학성, 고베 대학교
	인도 네시아	람퐁주립 대학교			
	태 국	타마사트 대학교, 출랄롱코른 대학교			
	라오스	국립대학경 제경영학부			
	중 국	북경대학, 중국정법 대학			

내 용	국 가	상대기관	스케줄	개 요	실시· 관계기관
	베트남	하노이 법과대학	2008-2010 년도	법제도지원 의 평가방법의 탐구, 현지관계처 와의 관례연구회	문부 과학성, 고베 대학교
	인도 네시아	람풍주립 대학교			
	캄보디아	파냐사스트 라대학교			
	라오스	국립대학 경제 경영학부			
	중 국	중국정법 대학교			
	인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 아, 중국, 베트남, 라오스	ILO, 행정기관, 연구기관, 노사단체, NPO, NGO	2008-2010 년도	노동법제 정비지원 조사	문부 과학성, 아오야마 카쿠인 대학교
장기연수	베트남, 라오스, 중국, 기타 미정	법률분야 연구자	-	연수원 수용	JICA, 큐슈 대학교, 나고야 대학교, 기타 미정
인재육성 지원 무상	우즈 베키스탄,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몽골, 라오스,	법률분야 연구자를 포함한 행정관	-	유학생 지원	JICA, 요코하마 국립 대학교, 큐슈 대학교, 고베

(별표 2)

내 용	국 가	상대기관	스케줄	개 요	실시· 관계기관
	중국, 기타 미정				대학교, 나고야 대학교, 기타 미정
	우즈 베키스탄,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몽골, 라오스, 중국, 기타 미정	법률분야연 구자를 포함한 행정관	-	유학생 지원	JICA, 요코하마 국립 대학교, 큐슈 대학교, 고베 대학교, 나고야 대학교, 기타 미정